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5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개요¹⁾

- '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조 1,049억 5,0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1조 4,900억 4,800만원) 보다 △4.6%, △2조 3,850억 9,8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47조 4,143억 9,300만원은 당초 본예산(45조 7,405억 1,700만원), 간주처리분(1,586억 7,600만원), 추경 증액 조정분(1조 5,151억 9,900만원)을 합한 것이며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가 있음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1조 6,905억 5,600만원)을 합한 '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51조 4,900억 4,800만원)보다 △4.6%, △2조 3,850억 9,800만원 감소한 49조 1,049억 5,0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0조 7,585억 5,400만원)보다 △3.0%, △1조 5,056억 6,800만원 감소한 49조 2,528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조 7,815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4,713억 6,8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47조 4,604억 5,500만원)보다 △1.4%, △6,789억 7,900만원 감소한 46조 7,814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조 5,653억 9,300만원과 특별회계 13조 2,160억 8,3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3조 2,980억 9,800만원) 보다 △25.1%, △8,266억 8,900만원 감소한 2조 4,714억 9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가)	세 출 결 산 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 부 내 역
2024	총 계	49,104,950	49,252,886	46,781,476	2,471,409	명 시 이 월 ^{주1)} 278,189
			(100.3%)	(95.3%)	(5.0%)	사 고 이 월 574,513
		<2024최종>				건 설 개 량 이 월 ^{주1)} 24,804
		47,414,393				계 속 비 이 월 -
		<2023→2024이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106,878
		1,690,556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1,487,022
2024	일 반 회 계	34,502,585	34,781,517	33,565,393	1,216,123	명 시 이 월 ^{주1)} 44,231
			(100.8%)	(97.3%)	(3.5%)	사 고 이 월 145,139
		<2024최종>				계 속 비 이 월 -
		34,246,379				보조금실 제반납금 9,723
		<2023→2024이월>				채 무 상 환 -
		256,205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929,028
2024	특 별 회 계	14,602,365	14,471,368	13,216,083	1,255,285	명 시 이 월 ^{주1)} 233,957
			(99.1%)	(90.5%)	(8.6%)	사 고 이 월 429,374
		<2024최종>				건 설 개 량 이 월 ^{주1)} 24,804
		13,168,012				계 속 비 이 월 -
		<2023→2024이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9,155
		1,434,350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557,994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Ⅲ.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34조 7,815억 1,700만원)와 특별회계(14조 4,713억 6,800만원)를 합한 49조 2,528억 8,6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0조 7,585억 5,400만원)보다 △3.0%, △1조 5,056억 6,8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 수 납 액
합	계	49,104,950	50,634,481	49,252,886	139,988	1,241,606
	일 반 회 계	34,502,585	36,006,838	34,781,517	136,158	1,089,162
	특 별 회 계 주1)	14,602,365	14,627,642	14,471,368	3,830	152,443

※ 주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50조 6,344억 8,100만원)중 1조 2,416억 600만원이 미수납되고, 1,399억 8,800만원이 정리보류되어 49조 2,528억 8,6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 직전회계연도보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0.2%포인트 증가하고, 미수납액도 1조 2,416억 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4	50,634,481	49,252,886	139,988	1,241,606	97.3	2.5
2023	52,245,294	50,758,554	293,169	1,193,571	97.2	2.3
2022	56,822,399	55,571,682	114,645	1,136,071	97.8	2.0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시세 세입관련

- '24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23조 8,627억 9,900만원)보다 3.9%, 9,409억 2,400만원 증가한 24조 8,037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5조 9,003억 9,300만원)대비 95.8%가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실제징수율도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3〉 시세 세입결산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환 금 액
2024	24,235,274	25,900,393	24,803,724	95.8	1,964,783
2023	24,112,184	25,000,501	23,862,799	95.4	1,634,773
2022	23,095,574	27,089,200	26,163,797	96.6	1,121,818

- 시세 세입예산액(24조 2,352억 7,400만원)과 세입결산액(24조 8,037억 2,400만원)을 비교하면, 당초보다 2.3%, 5,684억 5,000만원이 초과수납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이 표면화되는 지표일 수밖에 없어 세입 예·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시세 세입예산·세입결산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2 0 2 4	24,235,274	24,803,724	568,450	2.3
2 0 2 3	24,112,184	23,862,799	△249,385	△1.0
2 0 2 2	23,095,574	26,163,797	3,068,223	13.3

- 징수결정액(25조 9,003억 9,300만원)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5조 5억 100만원)와 비교하면, 3.6%, 8,998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나, 환급액은 1조 9,647억 8,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6,347억 7,300만원)보다 20.2%, 3,300억 1,000만원이 증가한 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환급액 규모가 1조원 이상 발생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환급액 발생율도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방세 징수결정의 정밀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 지방세 환급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환급액	행기 착	정관 오	납세 권구	납세 자리 제	납세 자 오	차 미 등 기	국 경	세 정	법 개	령 정	법 정	인 산	기 타
지 방 세	1,964,783	2,550	430,607	44,625	13,440	277,050	3,036	1,188,050	5,421					
취 득 세	361,518	246	329,478	29,510	35	-	1,117	-	1,130					
주 민 세	4,067	5	2,948	922	-	-	-	-	190					
재 산 세	13,912	1,726	6,264	4,407	-	-	42	-	1,470					
자동차세	10,548	21	2	404	10,014	-	16	-	89					
레 저 세	-	-	-	-	-	-	-	-	-					
담 배 소 비 세	1,290	-	-	-	-	-	-	-	1,290					
지 방 소 비 세	9,738	-	-	-	-	9,738	-	-	-					
지 방 소 득 세	1,529,879	47	68,858	5,762	61	266,876	4	1,188,050	218					
지역자원 시 설 세	524	85	184	87	-	-	31	-	135					
지 방 교 육 세	24,440	371	14,726	3,450	3,323	-	1,710	-	857					
지난년도 수 입	8,864	46	8,143	80	5	435	114	-	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 '24회계연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4조 8,037억 2,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24조 2,352억 7,400만원보다 5,684억 5,000만원 증가한 바,

- 취득세(9,512억 5,600만원), 재산세(326억 2,100만원), 지방소비세(110억 8,000만원), 지방교육세(696억 8,800만원)는 증가되었으나, 주민세(△78억 7,900만원), 자동차세(△1,917억 8,400만원), 레저세(△102억 5,100만원), 담배소비세(△180억 2,600만원), 지방소득세(△2,404억 4,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427억 4,4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주1)}	24,235,274	24,803,724	568,450	2.3
①	취 득 세	5,325,753	6,277,009	951,256	17.9
⑤	주 민 세	806,929	799,050	△7,879	△1.0
②	재 산 세	3,532,059	3,564,680	32,621	0.9
④	자 동 차 세	1,199,481	1,007,697	△191,784	△16.0
⑦	레 저 세	116,676	106,425	△10,251	△8.8
	담 배 소 비 세	571,727	553,701	△18,026	△3.2
③	지 방 소 비 세	2,730,596	2,741,676	11,080	0.4
⑥	지 방 소 득 세	7,692,288	7,451,844	△240,444	△3.1
	지역자원시설세	335,187	292,443	△42,744	△12.8
	지 방 교 육 세	1,702,378	1,772,066	69,688	4.1

※ 주1)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 ①취득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 및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23회계연도보다 17.9% 인상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5조 3,257억 5,300만원)보다 9,512억 5,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 ②재산세도 직전회계연도보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하는 등으로 '23회계연도보다 0.9% 인상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3조 5,320억 5,900만원)보다 326억 2,1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③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소비지출분 19.3%, 취득세 등 보전분 6%)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으로 '24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안분비율과 비교할 때 소비지출분(19.3%)은 13.0%로 0.2%포인트 증가하였고, 취득세 등 보전분(6%)은 22.8%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대비 8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듯 모세(母稅)인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증가로 당초 편성한 세입예산액(2조 7,305억 9,600만원)보다 110억 8,000만원(0.4%) 초과수납된 것임
- 다만,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부가가치세 실적 등이 반영되어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에, 현행 세액비율(25.3%)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와 타·시도의 안분비율도 가중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소비지출분 및 취득세 등 보전분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④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및 유류세 인하정책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1,994억 8,100만원)보다 △1,917억 8,400만원(△16.0%) 부족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 ⑤주민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와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3회계연도 426만원에서 '24회계연도 443만원으로 3.9% 증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은 '23회계연도보다 278억 6800만원 초과수납되었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과세 대상 축소등으로 주민세는 세입예산액 보다 △78억 7,900만원 부족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⑥지방소득세 수입은 '23회계연도 귀속 법인실적 저조로 인하여 당초 세입예산액(7조 6,922억 8,800만원)보다 △3.1%, △2,404억 4,300만원 부족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7〉 지방소득세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률 (C)/(A)
합 계		7,692,288	7,451,844	△240,443	△3.1
	양 도 소 득 분	713,025	684,444	△28,580	△4.0
	종 합 소 득 분	956,921	1,026,016	69,185	7.2
	법 인 소 득 분	2,274,188	1,884,551	△389,636	△17.1
	특 별 징 수 분	3,748,154	3,856,831	108,677	2.9

- ⑦레저세 수입은 경기재개 등을 기대하여 예산액을 1,166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102억 5,100만원(△8.8%) 부족수납된 1,064억 2,500만원으로 제출됨

(2)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4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8,521억 1,200만원)보다 13.7%, 1,164억 4,300만원 증가한 9,685억 5,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8〉 시세세입 수납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4	25,900,393	24,803,724	95.8	968,556	3.7
2 0 2 3	25,000,501	23,862,799	95.4	852,112	3.4
2 0 2 2	27,089,200	26,163,797	96.6	814,292	3.0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된 시세 수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4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9,685억 5,6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4,121억 6,600만원과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5,563억 9,000만원으로 확인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무재산, 납세태만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출국정지 신청 기준을 더욱 낮추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징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4회계연도에 발생한 시세 미수납액(9,685억 5,600만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25년 2월말 기준으로 9.0%(868억 200만원)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난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의 경우, '24년 2월말 기준으로 10.6%, 899억 5,500만원만 수납된 것으

로 확인되어 미납된 시세에 대한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9,685억 5,600만원) 발생 사유를 구분하면 무 재산이 45.2%, 4,377억 4,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이 43.7%, 4,230억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미수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성 높은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												
		무 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추위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기 미도래
합계	968,556 (100.0)	437,746 (45.2)	33,401 (3.5)	423,020 (43.7)	25,240 (2.6)	1,337 (0.1)	4 (0.0)	5,667 (0.6)	3,389 (0.3)	1,799 (0.2)	- (0.0)	- (0.0)	36,948 (3.8)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412,166 (100.0)	239,876 (58.2)	7,097 (1.7)	131,400 (31.9)	355 (0.1)	194 (0.0)	- (0.0)	1 (0.0)	1,037 (0.3)	1 (0.0)	- (0.0)	- (0.0)	32,201 (7.8)
취득세	80,357	39,181	1,034	29,152	3	-	-	-	41	-	-	-	10,943
주민세	7,834	5,560	31	2,216	1	3	-	-	-	-	-	-	19
재산세	57,127	33,005	583	22,029	46	53	-	-	563	-	-	-	844
자동차세	56,121	39,049	330	16,096	24	2	-	-	10	-	-	-	606
담배소비세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	-	-	-	-	-	-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지방교육세	171,747	97,999	4,845	49,372	258	116	-	-	294	1	-	-	18,861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556,390 (100.0)	197,869 (35.6)	26,304 (4.7)	291,620 (52.4)	24,884 (4.5)	1,142 (0.2)	4 (0.0)	5,666 (1.0)	2,351 (0.4)	1,798 (0.3)	- (-)	- (-)	4,746 (0.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3) 시세 세입중 정리보류액 관련

○ '24회계연도에 대한 시세 세입 결산결과 정리보류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 55.1%, △1,574억 7,600만원 감소한 1,281억 1,200만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분 정리보류액은 212억 2,800만원, 지난연도분은 1,068억 8,4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0〉 지방세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배분금액 부 족	체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 재 산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 세 정리보류	평 가 액 부 족	기 타
2 0 2 4	128,112	270	4,960	17,051	818	79,268	12	-	19,171	6,557
	(100.0)	(0.2)	(3.9)	(13.3)	(0.6)	(61.9)	(0.0)	-	(15.0)	(5.1)
2 0 2 3	285,589	133	259	15,977	1,739	214,939	32	-	39,714	12,794
	(100.0)	(0.0)	(0.1)	(5.6)	(0.6)	(75.3)	(0.0)	-	(13.9)	(4.5)
2 0 2 2	111,111	56	733	17,291	2,089	73,216	5	185	12,862	4,669
	(100.0)	(0.1)	(0.7)	(15.6)	(1.9)	(65.9)	(0.0)	(0.2)	(11.6)	(4.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 '22년 1월, 법령 개정에 따라 '22년 2월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개정하였으나 명칭만 다를 뿐 정리보류 또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리보류 또한 납세의무를 잠정적이거나 소멸시켜주는 것인 바,
-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는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적용하여 해당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지방세 세목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리 보류액									
			배분금액 부 족	채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 재 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 세 징보류	평가액 부 족	기 타
합	계	128,112	270	4,960	17,051	818	79,268	12	-	19,171	6,557
	당 해 연 도 수 입	21,228	46	114	-	181	16,274	-	-	2,650	1,962
	취 득 세	3,822	28	-	-	70	2,951	-	-	556	216
	주 민 세	889	-	-	-	1	544	-	-	3	339
	재 산 세	1,154	12	20	-	55	325	-	-	405	335
	자 동 차 세	1,027	-	66	-	7	318	-	-	66	569
	담 배 소 비 세	-	-	-	-	-	-	-	-	-	-
	지 방 소 득 세	13,166	-	-	-	27	11,493	-	-	1,474	170
	지역자원시설세	102	2	3	-	1	21	-	-	26	47
	지 방 교 육 세	1,066	3	23	-	16	619	-	-	118	284
	지 난 년 도 수 입	106,884	224	4,846	17,051	637	62,994	12	-	16,521	4,59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4)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수가 가감되는 수입원으로서 시세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24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1조 4,714억 9,300만원)보다 △11.8%, △1,731억 6,800만원 감소된 1조 2,983억 2,5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8,634억 6,500만원)보다 △23.2%, △2,002억 1,000만원 감소된 6,632억 5,4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1,15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픽스(COFIX)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33.5%, △386억 4,7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은 3,67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1,704억 5,000만원) 불발 등으로 △44.8%, △1,646억 2,7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의 경우, '22회계연도에 매각대금 7,500억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 불발로 미수납 되었으며, '23회계연도에는 당초 1,896억원을 편성하고,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25억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나, 매각 불발로 징수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825억원 전액을 부족 수납처리한 사례가 있고, '24회계연도에도 매각이 불발되어 편성된 1,704억 5,000만원 전액이 부족 수납 처리된 것으로 제출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5,998억 900만원)보다 3.4%, 206억 7,800만원 증가된 6,204억 8,7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DMC 홍보관 매각 수입의 경우, '24회계연도에 매각대금 1,016억 4,300만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DMC 교육첨단용지를 포함한 홍보관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단계로 확인되어 전액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3-12〉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4 회 계 연 도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세 외 수 입	1,471,493	1,298,325	88.2	1,335,051	1,388,503	104.0	1,888,271	1,336,601	70.8
경 상 적 외 수 입	863,465	663,254	76.8	784,933	725,351	92.4	1,423,889	702,749	49.4
재 임 대 수 산 입	183,716	174,015	94.7	159,401	172,253	108.1	154,234	137,268	89.0
사 용 료 입	144,229	159,816	110.8	155,688	154,990	99.6	142,832	148,134	103.7
수 수 료 입	41,640	34,894	83.8	38,799	36,405	93.8	44,616	44,379	99.5
사업수입 ^{주1)}	367,492	202,865	55.2	296,900	212,223	71.5	949,551	193,447	20.4
징수교부금 ^수	10,992	14,916	135.7	11,394	8,700	76.4	11,383	9,541	83.8
이 자 수 입	115,393	76,745	66.5	122,748	140,776	114.7	121,271	169,978	140.2
임 시 적 외 수 입	599,809	620,487	103.4	542,469	655,386	120.8	456,496	621,337	136.1
재 산 매 각 수 입 ^{주2)}	151,252	82,004	54.2	149,218	168,042	112.6	52,835	56,573	107.1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13,276	13,022	98.1	13,770	13,392	97.3	14,599	13,641	93.4
보 조 금 반 환 수 입	248,251	295,306	119.0	213,478	297,241	139.2	178,922	292,360	163.4
기 타 수 입	156,584	205,425	131.2	135,503	147,949	109.2	180,852	221,681	122.6
지 난 년 도 수 입	30,445	24,728	81.2	30,498	28,759	94.3	29,288	37,080	126.6
지방행정재·부 과 금 등	8,218	14,583	177.4	7,648	7,766	101.5	7,884	12,514	158.7
과 징 금	920	758	82.5	691	588	85.2	317	1,916	603.4
이행강제금	-	-	-	-	-	-	-	-	-
변 상 금	4,684	11,340	242.1	4,470	4,403	98.5	3,371	7,899	234.3
과 태 료	2,508	2,336	93.1	2,361	2,482	105.1	4,062	2,637	64.9
환 수 금	-	70	순증	-	132	순증	-	9	순증
부 담 금	105	77	73.5	124	158	127.0	133	52	39.0
범 칙 금 ^{주3)}	-	-	-	-	-	-			

주1) 매각사업수입 △1,704억 5,000만원 (DMC F1,F2 용지 매각 수입) 포함

주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16억 4,300만원 (DMC 홍보관 매각수입) 포함

주3)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도부터 “범칙금”이 신설

(5)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표 3-13〉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실제수납액 (E)	예 산 액 대 비 실제수납액 차 이 (F=E-A)
	A=B+C+D	본 예 산 (B)	추 경 예 산 (C)	간 주 처 리 (D)		
지 방 교 부 세	144,606	136,108	4,562	3,936	142,832	△1,173
보 통 교 부 세	103,604	103,604	-	-	103,534	△70
특 별 교 부 세	3,936	-	-	3,936	6,981	3,045
소방안전교부세	37,066	32,504	4,562	-	32,317	△4,748

- **보통교부세**는 법령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1,036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본예산에 325억 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보통교부세의 경우, '24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 결과에 따른 감액 결정(△2억원)과 인센티브 보전금(1억 3,000만원)이 조정되어 실제수납액은 기정예산(1,036억 400만원)보다 △7,000만원 감액된 1,035억 3,400만원으로 확인됨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23회계연도중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예상금액 사전통지를 근거로 본예산 32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5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37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24년 11월, 행정안전부가 '24년도 교부액을 △47억 4,800만원으로 감액 변경하여 323억 1,7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특별교부세는 '24회계연도중 예산총칙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한 39억 3,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나,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액(1,446억 600만원)보다 세입결산액(1,428억 3,200만원)이 △11억 7,300만원 부족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4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은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을 '19년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지난 '22년 11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부서장회의'에서 분권교부세 보전분 제도 원안유지 의견을 제출하여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교부기한을 '2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구두협이라는 한계가 있어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실화 및 교부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국고보조금등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인 바,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편성하되, ①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③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동 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수납한 것임
- '2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6조 9,995억 6,7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7조 1,075억 6,700만원)보다 △ 1.5%, △1,079억 9,900만원이 부족수령된 바,
 - 결산결과를 세입과목별로 검토하면, ①**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6조 6,074억 5,0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7,115억 9,600만원)보다 △1.6%, △1,041억 4,5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으며,
 - ②**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869억 8,5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885억 4,300만원)보다 △1.8%, △15억 5,800만원이 부족수령 되고,
 - ③**기금(511-03)**의 경우, 3,051억 3,1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3,074억 2,700만원)보다 △0.7%, △22억 9,500만원이 부족수령된 것임

〈표 3-14〉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B)	수납률	예산액 대비 (C)=(B)-(A)	부족수령액
			(B)/(A)		(C)/(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7,107,567	6,999,567	98.5	△ 107,999	△ 1.5
국고보조금(511-01)	6,711,596	6,607,450	98.5	△ 104,145	△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511-02)	88,543	86,985	98.2	△ 1,558	△ 1.8
기금(511-03)	307,427	305,131	99.3	△ 2,295	△ 0.7

※ 자료근거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표 3-15〉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실제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8,825,663	8,747,610	△78,052
	일반회계 ^{주1)}	7,107,567	6,999,567	△107,999
	특별회계	1,718,096	1,748,043	29,947
	기타특별회계 ^{주1)}	1,715,139	1,745,278	30,13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4,116	159,585	5,468
	교통사업특별회계	62,234	62,219	△1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674	7,674	-
	주택사업특별회계	420,761	457,493	36,732
	도시개발특별회계	189,504	177,978	△11,525
	균형발전특별회계	56,557	56,391	△16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90,311	790,311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9,172	28,816	△355
	소방특별회계	4,808	4,808	-
	공기업특별회계 ^{주2)}	2,956	2,764	△192
	수도사업특별회계	1,956	1,764	△19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0	1,000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 ① 국고보조금(511-01)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③ 기금(511-03)을 포함한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 현황임

주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 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과
- ② 보조금수익(673)중 국고보조금(673-01)에 대한 수입결산 현황임

※ 자료근거 : ①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

- ② 「2024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61기)」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 ③ 「2024년도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4조 6,276억 4,200만원)의 98.9%, 14조 4,713억 6,8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미수납액(1,524억 4,3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규모(2,359억 4,100만원)보다 △35.4%, △834억 9,800만원 감소하였고, 정리보류액(38억 3,000만원) 또한 직전회계연도보다 △8.6%, △3억 6,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표 3-16〉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정리보류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4	14,627,642	14,471,368	98.9	152,443	3,830
2 0 2 3	14,783,418	14,543,285	98.4	235,941	4,191
2 0 2 2	15,070,984	14,857,539	98.6	212,304	1,14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 ①주택사업사업특별회계(553억 5,800만원), ②교통사업특별회계(318억 5,000만원), ③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217억 8,500만원), ④수도사업특별회계(225억 7,800만원), ⑤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91억 8,400만원) 등에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미수납액 감소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7〉 특별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징수결정액대비)	(징수결정액대비)
합	계	14,627,642	14,471,368 (98.9)	3,830 (0.0)	152,443 (1.0)
기	타	12,309,311	12,196,089 (99.1)	2,542 (0.0)	110,680 (0.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164,345	2,164,327 (99.9)	- (-)	18 (0.0)
	② 교통사업특별회계	1,815,984	1,781,612 (98.1)	2,521 (0.1)	31,850 (1.8)
	③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5,059	283,273 (92.9)	- (-)	21,785 (7.1)
	① 주택사업특별회계	2,867,078	2,811,719 (98.1)	- (-)	55,358 (1.9)
	도시개발특별회계	2,082,194	2,080,986 (99.9)	- (-)	1,207 (0.1)
	균형발전특별회계	232,719	232,719 (100.0)	-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9,309	19,309 (100.0)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9,744	1,789,607 (99.9)	- (-)	136 (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865	31,865 (100.0)	- (-)	- (-)
	소방특별회계	1,001,009	1,000,667 (99.9)	20 (0.0)	321 (0.0)
	공기업특별회계	2,318,330	2,275,279 (98.1)	1,287 (0.1)	41,763 (1.8)
	④ 수도사업특별회계	1,143,986	1,121,036 (98.0)	371 (0.1)	22,578 (2.0)
	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74,344	1,154,243 (98.3)	916 (0.1)	19,184 (1.6)

- ①**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553억 5,800만원)중 무재산은 52.3%, 289억 5,400만원, 납세태만은 40.8%, 225억 8,200만원으로 확인되고,
- ②**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318억 5,000만원)중 납세태만은 98.3%. 313억 400만원, ③**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217억 8,500만원)중 납기미도래 49.8%, 108억 4,700만원, 기타의 사유로 35.1% 76억 3,600만원으로 확인됨
-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등의 사유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유의 미수납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8〉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 또는 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 미 도 래
합 계	152,443 (100.0)	30,455 (20.0)	697 (0.5)	59,822 (39.2)	3,372 (2.2)	- (-)	2 (0.0)	3,091 (2.0)	- (-)	29,400 (19.3)	11,246 (7.4)	14,355 (9.4)	
도시 철도 건설 사업 비	18 (100.0)	- (-)	- (-)	- (-)	- (-)	- (-)	- (-)	- (-)	- (-)	- (-)	18 (100.0)	- (-)	
② 교 통 사업	31,850 (100.0)	- (-)	- (-)	31,304 (98.3)	- (-)	- (-)	- (-)	- (-)	- (-)	- (-)	340 (1.1)	205 (0.6)	
③ 광 역 교 통	21,785 (100.0)	- (-)	- (-)	- (-)	- (-)	- (-)	- (-)	2,680 (12.3)	- (-)	621 (2.9)	7,636 (35.1)	10,847 (49.8)	
소 방	321 (100.0)	25 (7.8)	24 (7.5)	207 (64.4)	34 (10.6)	- (-)	- (-)	2 (0.7)	- (-)	23 (7.4)	2 (0.6)	2 (0.9)	
① 주 택 사업	55,358 (100.0)	28,954 (52.3)	673 (1.2)	22,582 (40.8)	- (-)	- (-)	2 (0.0)	408 (0.7)	- (-)	490 (0.9)	18 (0.0)	2,228 (4.0)	
도 시 개 발	1,207 (100.0)	- (-)	- (-)	62 (5.2)	- (-)	- (-)	- (-)	- (-)	- (-)	- (-)	488 (40.4)	656 (54.4)	
의 료 급 여 기 금	136 (100.0)	- (-)	- (-)	- (-)	- (-)	- (-)	- (-)	- (-)	- (-)	- (-)	136 (100.0)	- (-)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1조 1,439억 8,600만원)의 98.0%인 1조 1,210억 3,6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1,439억 8,600만원)은 가정용 및 일반용의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사용료 수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1조 745억 1,100만원)보다 6.5%, 694억 7,5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1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4~'23)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2 0 2 4		1,143,986 (100.0)	1,121,036 (98.0)	371 (0.0)	22,578 (2.0)
	당 해 연 도 분	1,083,293 (100.0)	1,064,244 (98.2)	- (-)	19,049 (1.8)
	지난년도수입	60,692 (100.0)	56,792 (93.6)	371 (0.6)	3,529 (5.8)
2 0 2 3		1,074,511 (100.0)	1,012,372 (94.2)	658 (0.0)	61,480 (5.7)
	당 해 연 도 분	1,058,564 (100.0)	999,359 (94.4)	- (-)	59,204 (5.6)
	지난년도수입	15,946 (100.0)	13,012 (81.6)	658 (4.1)	2,275 (14.3)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958 ('25. 4. 1)

-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614억 8,000만원)보다 △63.3%, △389억 100만원 감소된 225억 7,8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 미수납액(225억 7,800만원)중 자금압박을 사유로 67.7% 152억 8,0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25년도에는 납기내에 수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조 1,743억 4,400만원)의

98.2%인 1조 1,542억 4,3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1,743억 4,4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1조 846억원)보다 8.3%, 897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518억 7,700만원)보다 △63.0%, △326억 9,200만원 감소한 191억 8,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2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4~'23)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2 0 2 4		1,174,344 (100.0)	1,154,243 (98.2)	916 (0.1)	19,184 (1.6)
	당 해 연 도 분	1,121,654 (100.0)	1,107,164 (98.7)	8 (0.0)	14,481 (1.3)
	지난년도수입	52,689 (100.0)	47,078 (89.4)	908 (1.7)	4,703 (8.9)
2 0 2 3		1,084,600 (100.0)	1,032,513 (95.2)	209 (0.0)	51,877 (4.8)
	당 해 연 도 분	1,034,912 (100.0)	986,267 (95.3)	- (-)	48,644 (4.7)
	지난년도수입	49,688 (100.0)	46,246 (93.1)	209 (0.4)	3,232 (6.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2 ('25. 4. 3)

4. 지방채 관련

- '24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11억 4,424억 9,700만원)보다 △0.9%, △1,049억 5,700만원 감소된 **11조 3,375억 3,900만원**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21회계연도 중 지방채 342억원을 발행한 이후 지난 '24회계연도까지 지방채가 추가적으로 발생·소멸된 내역이 없어 '2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342억원)과 동일한 **342억원**임
 - **특별회계**의 경우, '24회계연도 중 지방채 1조 6,226억 3,700만원을 발행하고, 1조 5,775억 9,400만원이 소멸된 결과 '2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10조 7,582억 9,700만원)보다 0.4%, 450억 4,200만원 증가된 **10조 8,033억 3,900만원**이며,
 - **기금**의 경우에는 '24회계연도 중 지방채의 추가적인 발생 없이 1,500억원을 상환한 결과 '2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말(6,500억원)보다 △23.0%, △1,500억원 감소된 **5,000억원**으로 확인됨

〈표 3-21A〉 2024회계연도 중 지방채^{주1)}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주2)	2023년도말 현 재 액	2024회계연도 중		증 감 현 황 증 감액 ①-②	2024년도말 현 재 액	2024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발생액 ^(주3) ①	소멸액 ^(주4) ②			
총 계			11,442,497	1,622,637	1,727,594	△104,957	11,337,539	193,603
일 반 회 계 (합계)			34,200	-	-	-	34,200	783
일반회계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모 집 공 채	24,000	-	-	-	24,000	549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모 집 공 채	8,200	-	-	-	8,200	187
	단 절 된 녹 지 축 연 결	모 집 공 채	2,000	-	-	-	2,000	45
특 별 회 계 (합계)			10,758,297	1,622,637	1,577,594	45,042	10,803,339	182,273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10,758,297	1,622,637	1,577,594	45,042	10,803,339	182,273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특별 회계	도시철도공채 상환(원금 상환) ^(주5)	도시철도공채	5,467,670	597,837	790,314	△192,477	5,275,193	71,087
	도시철도공채 상환(원금 상환) ^(주6)	모집공채	443,000	220,000	-	220,000	663,000	15,282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모 집 공 채	143,600	70,000	-	70,000	213,600	4,705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 집 공 채	96,200	114,000	-	114,000	210,200	3,165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 집 공 채	193,200	-	41,000	△41,000	152,200	3,735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 집 공 채	28,000	35,000	-	35,000	63,000	1,193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모 집 공 채	51,000	25,000	-	25,000	76,000	2,174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시비)	모 집 공 채	-	50,000	-	50,000	50,000	-
광역교통 시설 특별 회계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모 집 공 채	208,000	90,000	85,000	5,000	213,000	2,907
	동부간선도로 확장(노천교~의정부시계)	모집공채	1,204,000	-	37,000	△37,000	83,400	1,789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역 교통 시설 특별 회 계)	모 집 공 채	30,000	-	-	-	30,000	727
주택 사업 특별 회계	공 공 임 대 주 택 매 입	주택모집공채	1,165,858	-	262,305	△262,305	903,552	21,562
	재 개 발 임 대 주 택 매 입	모집공채	422,000	180,000	-	180,000	602,000	11,597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모 집 공 채	80,000	12,000	80,000	△68,000	12,000	283
	청 년 매 입 임 대 사 업	모 집 공 채	30,000	12,000	30,000	△18,000	12,000	106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모 집 공 채	45,000	-	45,000	△45,000	-	159
	재 건축 소 형 주 택 매 입	모 집 공 채	60,000	-	-	-	60,000	2,377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모 집 공 채	-	120,000	-	120,000	120,000	-
도시 개발 특별 회계	장미잡생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모 집 공 채	1,300,000	-	20,000	△20,000	1,280,000	22,269
	풍 납 토 성 복 원	모 집 공 채	58,000	-	10,000	△10,000	48,000	894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모 집 공 채	15,000	-	-	-	15,000	268
	서울 공 예 박 물 관 건 립	모 집 공 채	12,000	-	-	-	12,000	214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모 집 공 채	10,000	-	-	-	10,000	179

주1) 지방채는 지방채무 중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한 것임(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 미포함)

주2)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3)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3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4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68억원)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소멸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은 상환에 따라 지방채가 소멸된 것임

주5)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 그 자체에 대한 것임

주6)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모집공채, 정부자금채 등)에 대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② '19~'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1B〉 2024회계연도 중 지방채^{주1)}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주2)}	2023년도말 현 재 액	2024회계연도 중 증감현황			2024년도말 현 재 액	2024회계연도 중 이자지급
				발생액 ^{주3)} ①	소멸액 ^{주4)} ②	증감액 ①-②		
도시개발 특별회계	신림 ~ 봉천터널 건설	상생기금모집채	62,453	10,000	3,085	6,915	69,368	1,330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상생기금모집채	105,475	-	18,150	△18,150	87,325	2,017
	안양교 확장	공자기금모집채	31,500	-	-	-	31,500	645
	동부간선도로 확장(알매교~녹천교)	모집채공자기금	26,900	-	10,000	△10,000	16,900	406
	월드컵대교 건설	모집공채	196,960	-	72,460	△72,460	124,500	3,627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모집공채	99,996	-	-	-	99,996	2,24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모집공채	112,101	-	46,490	△46,490	65,611	2,035
	양재대로 구조개선	모집채상생기금	24,000	24,000	-	24,000	48,000	734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모집공채	47,393	-	15,000	△15,000	32,393	1,077
	한강상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모집공채	11,000	-	-	-	11,000	194
	사당로(구) 범진여객~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모집공채	4,000	-	-	-	4,000	70
	울곡로(창경궁앞) 구조개선	모집공채	2,000	-	-	-	2,000	35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모집공채	5,000	-	-	-	5,000	118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모집공채	3,000	-	-	-	3,000	71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모집공채	2,000	-	-	-	2,000	47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모집공채	1,100	20,000	-	20,000	21,100	26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상생기금	-	6,000	-	6,000	6,000	6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집공채	4,990	30,000	4,990	25,010	30,000	17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안기금	-	6,800	6,800	-	-	-
군형발 특별회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모집공채	5,000	-	-	-	5,000	102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군형발특별회계)	모집공채	11,000	-	-	-	11,000	196
	사당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모집공채	7,000	-	-	-	7,000	156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군형발특별회계)(전환사업)	모집공채	2,500	-	-	-	2,500	55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모집공채	14,000	-	-	-	14,000	32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			-	-	-	-	-	-
기 금 (합 계)			650,000	-	150,000	△150,000	500,000	10,546
재난 관리 기금	재 난 예 방 ^{주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모집공채	650,000	-	150,000	△150,000	500,000	10,546

주1) 지방채는 지방채무 중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한 것임(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은 미포함)

주2)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3)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3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4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68억원)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소멸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은 상환에 따라 지방채가 소멸된 것임

주5) 재난관리기금 자원 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② '19~'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 '24회계연도의 지방채 **발생액**은 직전회계연도(1조 7,072억 2,000만원)보다 △4.9%, △845억 8,300만원 감소된 1조 6,226억 3,7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에서만 지방채(1조 6,226억 3,700만원)를 발행한 것임

- 세부적인 발행내역을 회계별로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1조 1,515억 9,000만원)보다 △3.4%, △397억 5,300만원 감소된 1조 1,118억 3,7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 ① 도시철도공채 5,978억 3,700만원이 매출되었으며, ② '24회계연도에 상환시기가 도래한 도시철도공채('17회계연도 매출분)중 일부(2,200억원)를 차환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정부자금채 2,200억원을 차입하고,

■ ③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1,140억원),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700억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350억원)을 포함한 지하철 건설사업과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시비)**(500억원),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250억원)를 포함한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에 총 2,940억원의 모집공채를 발행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850억원)보다 5.8%, 50억원 증가된 9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서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을 위해 모집공채 900억원을 발행한 것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3,950억원)보다 △17.9%, △710억원 감소된 3,24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정부자금채 1,800억원을 차입하고,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1,200억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120억원), **청년 매입임대 사업**(120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총 1,440억원의 모집공채를 발행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756억 3,000만원)보다 27.9%, 211억 7,000만원 증가된 968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300억원)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200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모집공채 500억원을 발행하고,
 - **양재대로 구조개선(240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100억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60억원)**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지방공공자금채 4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 정부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서울시가 차입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이관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68억원을 발행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법령에 따라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나 예산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24회계연도의 경우, 총 한도액(2조 5,637억 6,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통해 총 1조 6,907억 6,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 결산결과 실제 발행규모(1조 6,226억 3,700만원)는 지방채 최종예산(1조 6,907억 6,500만원)보다 △681억 2,800만원 감소된 것으로서
 - ① 정부자금채와 지방공공자금채 그리고 모집공채는 세입예산에 편성된 대로 전액 발행하였지만, ②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는 실제 매출규모(5,978억 3,700만원)가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것(6,659억 6,500만원)보다 △681억 2,800만원 감소된 결과로 확인됨

〈표 3-22〉 2024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예산 편성현황^{주1)} 및 실제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한도액	기본 한도액	별도 한도액	한 도 액 산 정 내 역					
'24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2,563,765	1,721,800	841,965	○ 기본 한도액 = [경상일반채원(27,550,808,681천원) - 채무잔액(11,898,002,355천원)] × 11% ○ 별도 한도액 = 지역개발채원 발행액(0천원) + 도시철도공채 발행액(665,965,323천원) + '24년도 차환채 발행액의 80%(176,000,000천원) + 지역알짜사업(투자사업)(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0천원)					
사 업 명	예 산 편 성 현 황				실 제 발 행 현 황				발행액과	
	세입과목	예산편성액 (최종예산)			발 행 액	발 행 일	차입선 ^{주2)}	발행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편성액 간 차액
		㉠	기본한도 내 편성액	별도한도 내 편성액	㉡					㉢-㉠
총 계		1,690,765	848,800	841,965	1,622,637 ^{주3)}					△68,12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소계		1,179,965	338,000	841,965	1,111,837					△68,128
도시철도공채 상환(원리금 상환 ^{주4)})	매 출 공 채	665,965	-	665,965	597,837	연중수시	도시철도공채	2,500	7년(일시)	△68,128
도시철도공채 상환(원리금 상환 ^{주5)})	정부자금채	220,000	44,000	176,000	220,000	'24.10.31	공자기금	3.123	5년(10년)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모 집 공 채	114,000	114,000	-	114,000	'24. 9.27	모집공채	3.110	3년(일시)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모 집 공 채	70,000	70,000	-	70,000	'24.12. 5	모집공채	2.895	3년(일시)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 집 공 채	35,000	35,000	-	35,000	'24.12.13	모집공채	2.950	5년(일시)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국비)	모 집 공 채	25,000	25,000	-	25,000	'24.12.13	모집공채	2.950	5년(일시)	-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사비)	모 집 공 채	50,000	50,000	-	50,000	'24.12.13	모집공채	2.950	5년(일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계		90,000	90,000	-	90,000					-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모 집 공 채	90,000	90,000	-	90,000	'24.12.13	모집공채	2.950	5년(일시)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소 계		324,000	324,000	-	324,000					-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모 집 공 채	12,000	12,000	-	12,000	'24. 9.27	모집공채	3.110	3년(일시)	-
청년 매입임대 사업	모 집 공 채	12,000	12,000	-	12,000	'24. 9.27	모집공채	3.110	3년(일시)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정부자금채	180,000	180,000	-	180,000	'24.10.31	공자기금	3.123	5년(10년)	-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모 집 공 채	120,000	120,000	-	120,000	'24.12. 5	모집공채	2.895	3년(일시)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소 계		96,800	96,800	-	96,800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	6,800	6,800	-	3,200	'24. 3.20	농안기금	3.000	공사로	-
					3,600	'24.11.20	농안기금	3.000	이관 ^{주6)}	-
신림 ~ 봉천터널 건설	차용공채	10,000	10,000	-	10,000	'24.9.25	상환기금	3.750	2년(8년)	-
양재대로 구조개선	차용공채	24,000 ^{주7)}	24,000	-	24,000	'24.9.25	상환기금	3.750	2년(8년)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차용공채	6,000 ^{주7)}	6,000	-	6,000	'24.9.25	상환기금	3.750	2년(8년)	-
동부간선도로(충동성계곡) 지하차도 건설	모 집 공 채	20,000	20,000	-	20,000	'24. 9.27	모집공채	3.110	3년(일시)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 집 공 채	30,000	30,000	-	30,000	'24. 9.27	모집공채	3.110	3년(일시)	-

주1) “예산 편성현황”은 '24년도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 포함)의 ① 예산총칙과 ② 세입예산 중 지방채 편성내역을 정리한 것임

주2)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②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③ “상환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의미함

주3) '24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액(1조 6,226억 3,700만원)은 모두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며, '23회계연도 분을 '24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 그 자체에 대한 것임

주5)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것임

주6)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하고, 공사에서 해당 재원을 집행·상환하는 사안임

주7)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은 지방채 100억원을, 양재대로 구조개선은 지방채 200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24년도 제1회 추경('24. 6 의결)에서 공사 지연을 사유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 편성된 지방채(100억원) 중 △40억원을 감추경하고,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편성된 지방채(200억원)은 40억원 증액조정된 것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8112 ('23. 7.13)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③ '24년도 예산서 및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④ '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등기·등록(자동차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사안별로 일정 금액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 다른 지방채와는 달리 발행여부 및 발행규모가 서울시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매출액이 세입예산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 3-23〉 도시철도공채 예산 편성현황 및 실제 매출현황(2020~202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예산 편성액	본예산	772,600	773,850	810,675	777,252	665,965
	최종예산 ③	772,600	773,850	810,675	716,252 ^{주1)}	665,965
실 제	매 출 액 ⑥	872,741	816,351	756,016	690,690	597,837
차	액 ⑥-③	100,141	42,501	△54,658	△25,561	△68,128

주1) '23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은 제1회 추경('23. 7 의결)을 통해 기정예산(7,772억 5,200만원)보다 △610억원 감액조정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3889 ('21. 4. 8)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0635 ('22. 4. 7) ④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⑤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560 ('24. 4.15) ⑥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를 재구성

- 서울시는 '20회계연도부터 '24회계연도까지 5개 회계연도 중 '23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통해 매출공채 편성규모를 증·감조정 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재원으로서 본예산에 기 편성한 규모보다 초과매출이 발생될 경우, 추경을 통해 증액조정하지 않는다면 초과매출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회계연도 중에는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만일 본예산에 기 편성한 규모보다 부족매출이 발생될 경우, 추경을 통해

도시철도공채 세입예산액을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매출공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배분받아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자원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의 경우,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제외한 모든 지방채를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대로만 전액 발행한 것으로서 ①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지방채를 '24회계연도 중 발행하거나, ② '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4년도 예산 중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들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것이나,
 -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검토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함에도 회계연도 중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예산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이 9개 사업으로 검토됨
 - 이 중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제외한 8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이전에 지방채를 예산편성된 대로 전액 발행하여 발행액(원금)과 그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발생시키며 재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시비와 지방채를 포함한 서울시 부담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검토됨

〈표 3-24〉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 중 당해연도 예산이 50억원 이상 미집행(이월·불용)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지방채 차입선과 발행액 / 발행일)	재 원 구 분	최종예산 ^{주1)}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최종예산 중 미집행액		
						합	계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주 택 실	일반(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사업 (모집공채 120억원 / '24. 9.27)	계	81,349	16,449	16,449	64,900	54,742	10,158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23,960	10	10	23,950	13,792	10,158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57,389	16,439	16,439	40,950	40,950	-
주 택 실	청년 매입임대 사업 (모집공채 120억원 / '24. 9.27)	계	81,925	38,320	38,320	43,605	14,746	28,858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25,000	15,550	15,550	9,450	4,500	4,950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56,925	22,770	22,770	34,155	10,246	23,908
도시개발사업본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모집공채 700억원 / '24.12. 5)	계	133,284	133,258	97,743	35,541	35,514	26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133,284	133,258	97,743	35,541	35,514	26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	-	-	-	-	-
도시개발사업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 (민자) (모집공채 1,140억원 / '24. 9.27)	계	162,789	148,201	147,547	15,241	14,584	657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137,189	125,701	125,047	12,141	11,484	657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25,600	22,500	22,500	3,100	3,100	-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모집공채 200억원 / '24. 9.27)	계	25,564	25,564	12,331	13,233	13,233	-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25,564	25,564	12,331	13,233	13,233	-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	-	-	-	-	-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집공채 350억원 / '24.12.13)	계	69,427	63,118	58,561	10,865	4,243	6,622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43,827	41,976	39,567	4,259	4,243	16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25,600	21,141	18,994	6,606	-	6,606
주 택 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공공기관비자금 1,800억원 / '24.10.31)	계	254,163	246,623	246,623	7,539	-	7,539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195,456	195,456	195,456	-	-	-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58,706	51,167	51,167	7,539	-	7,539
재난안전실	신림~봉천터널 건설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 / '24. 9.25)	계	10,709	10,708	4,301	6,407	6,407	-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10,709	10,708	4,301	6,407	6,407	-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	-	-	-	-	-
재난안전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지역상생발전기금 60억원 / '24. 9.25)	계	8,109	8,108	1,716	6,392	6,392	-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8,109	8,108	1,716	6,392	6,392	-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	-	-	-	-	-

주1)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월예산은 미포함된 것임(의회의결 또는 간주처리를 거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의미하는 것임)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등)
 ② '24년도 예산서 및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376 ('25. 5.19)
 ④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5123 ('25. 4. 2) 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본부, 총무부-5980 ('25. 3.31)
 ⑥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3785 ('25. 4. 8) ⑦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5369 ('25. 4. 1) 등을 재구성

- 8개 세부사업 중에는 서울시 부담재원 중 ①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 이월·불용된 사업뿐만 아니라 ②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회계연도 내 전액 집행하였지만 당초부터 기 확보되어 있던 시비를 이월·불용처리한 사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나,
- 두 경우(①와 ②) 모두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을 불문하고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된 대로 전액 발행하기보다는, 서울시 부담재원 중 기 확보된 시비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한 후 지방채는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될 규모에 한정하여 발행하되,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될 경우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다음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이월발행 하는 등 지방채 발행규모와 시기를 실집행과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24년 6월, 행정안전부의 훈령이 개정·시행되어 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수입이 미확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회계연도 중 추가로 집행하게 될 서울시 부담재원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先) 집행한 후 집행결과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주택실 임대주택과 소관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24년도 예산에 국비(573억 8,900만원)와 시비(119억 6,000만원) 그리고 지방채(120억원)를 포함하여 총 813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24년 9월, 기 편성된 지방채 전액을 발행하였으나,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당해연도 최종예산(813억 4,900만원) 중 서울시 부담재원(239억 6,000만원)은 단 1,0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

지 239억 5,0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137억 9,200만원)하거나 불용처리(101억 5,8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5〉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24회계연도 자원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미집행액		
					합계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계 ① + ②	계	360,956	281,863	281,863	79,093	54,742	24,351
	서울시 부담재원 (시비+지방채)	114,765	76,622	76,622	38,143	13,792	24,351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246,191	205,241	205,241	40,950	40,950	-
전년 이월예산 (’23→’24 이월액) ③	계	279,607 주1)	265,414	265,414	14,193	-	14,193
	서울시 부담재원 주2) (시비+지방채)	90,805 주1)	76,612	76,612	14,193	-	14,193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188,802	188,802	188,802	-	-	-
당해연도 예산 (’24년도 최종예산) ④	계	81,349	16,449	16,449	64,900	54,742	10,158
	서울시 부담재원 주3) (시비+지방채)	23,960	10	10	23,950	13,792	10,158
	중앙정부 지원재원 (국고보조금등)	57,389	16,439	16,439	40,950	40,950	-

주1)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 '24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은 서울시 부담재원(시비+지방채) 1,220억 1,000만원을 포함한 3,108억 1,200만원이나, '24년 12월 27일, 명시이월된 서울시 부담재원 중 △31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것임
[변경사유 : '23회계연도 결산시 명시이월을 통해 추진하려던 사업물량(590호) 중 일부(249호)가 약정취소 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312억 500만원)를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활용(청년 매입임대 사업으로 173억 5,000만원 변경,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으로 138억 5,500만원 변경)]

주2) 전년도 이월예산 중 서울시 부담재원에는 '23년 12월 12일, 모집공채(800억원)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포함된 것임 (해당 모집공채는 이자율 4.25%, 1개월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24년 1월 전액 상환하였음)

주3) 당해연도 예산 중 서울시 부담재원에는 '24년 9월 27일, 모집공채(120억원)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포함된 것임 (해당 모집공채는 이자율 3.11%,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것임)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등)
② '24년도 예산서 및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376 ('25. 5.19)
④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5123 ('25. 4. 2) ⑤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6319 ('24.12.18) 등을 재구성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일반(다가구)주택 매입임대'를 위한 서울시 부담재원으로 지방채 800억원과 시비 943억 1,000만원을 포함한 1,743억 1,000만원을 편성하기로 시의회의 의결('22.12)을 얻고, '23년 12월, 예산편성된 지방채(800억원) 전액을 발행한 후 회계연도 중 집행이 용이하지 않자 의회의 별도 승인('23.12)을 얻어 서울시 부담재원 1,220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이나,

- '24회계연도에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예산으로 매입하려던 일반(다가구)주택 사업물량(590호) 중 일부(249호)가 약정취소 되자 명시이월된 서울시 부담재원(1,220억 1,000만원) 중 △31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141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방채 발행, 세입·세출예산 편성, 명시이월에 대해 의회가 의결·승인한 사업내용은 '일반(다가구)주택의 매입임대'이며, 이월예산은 이월된 내용대로만 집행할 수 있고 전용·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에 편성·이월된 서울시 부담재원 중 312억 500만원은 다른 내용(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 잔여분(141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한 사례로,
 - ① 의회의 의결·승인내용과 이월예산의 한계를 도외시한 채 예산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서울시 부담재원을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편성한 후 빚(지방채) 내서 마련한 서울시 부담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월·불용시키거나 심지어 다른 사업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재정운용 행태는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결과로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24회계연도의 지방채 **소멸액**은 직전회계연도(2조 1,627억 2,500만원)보다 △20.1%, △4,351억 3,000만원 감소된 1조 7,275억 9,400만원임
- 다만, 결산서(재무제표)의 첨부서류인 “채무관리보고서”에는 1조 7,275억 9,400만원 전액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소멸액(1조 7,275억 9,400만원) 중 1조 7,207억 9,400만원은 **기타특별회계**(1조 5,707억 9,400만원)와 **기금**(1,500억원)에서 ‘상환’한 것이며, 나머지 68억원 **기타특별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바,

- 소멸액(1조 7,275억 9,400만원) 전액에 대한 상환부담은 해소된 것이나 ‘상환’과 ‘이관’에 따른 소멸액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재무제표 중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적인 소멸내역을 회계별·기금별로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1조 3,924억 5,300만원)보다 △40.2%, △5,611억 3,900만원 감소된 8,313억 1,400만원이 소멸된 것인 바,
 - ① '17회계연도 중 매출된 도시철도공채 7,903억 1,400만원(공사 이관분 3,194억 3,300만원 포함)과 ②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을 위해 '19년 11월 발행한 모집공채 41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930억원)보다 31.1%, 290억원 증가된 1,220억원이 소멸된 것으로,
 - ①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을 위해 '23년 12월 발행한 모집공채 850억원과 ②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을 위해 '19년 11월 발행한 모집공채 37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3,581억 6,600만원)보다 16.5%, 591억 3,800만원 증가된 4,173억 5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 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95년부터 '01년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정부자금채(6,852억 2,700만원) 중 523억 500만원과 '20년 6월 발행한 모집공채 2,1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총 2,623억 500만원을 상환하고,
 - '23년 12월, ②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800억원과 ③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450억원, ④ **청년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3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임

-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3,060억 500만원)보다 △32.3%, △990억 3,000만원 감소된 2,069억 7,5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 ① **월드컵 대교 건설**을 위해 '19년 11월(580억원)과 '23년 12월(144억 6,000만원) 발행한 모집공채 724억 6,000만원과 ②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을 위해 '19년 11월(460억원)과 '23년 12월(4억 9,000만원) 발행한 모집공채 464억 9,000만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액 상환한 것이며,
- ③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을 위해 '19년 11월 발행한 모집공채 130억원과 '20년 7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412억원) 중 51억 5,000만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총 181억 5,000만원을 상환하고,
- ④ **신림~봉천터널 건설**을 위해 '19년 12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공공자금채(242억원) 중 30억 2,500만원과 '23년 12월 발행한 모집공채 6,000만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총 30억 8,500만원을 상환한 것임
- 아울러 '19년 11월, 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150억원과 ⑥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를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1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하고,
- '23년 12월, ⑦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200억원과 ⑧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100억원, 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를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49억 9,000만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하였으며,

- ⑩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24년 3월(32억원)과 '24년 11월(36억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정부자금 채 68억원은 해당 재원의 집행·상환주체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24회계연도 중 소멸된 것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경우에는 '21년 3월 기금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1,500억원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한 것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상환한 것임

- 그러나 다른 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회계나 기금에서 직접 상환하거나,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대신 상환하고 있으나,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해당 기금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 해당 기금(재난관리기금)의 직접적인 설치·운용근거인 조례의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재원을 전입받아 직접 상환할 필요가 있음에도, 다른 회계나 기금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부적절하게 상환한 사례로서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의 채무 현재액(11조 3,375억 3,9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말(11조 4,424억 9,700만원)보다 △0.9%, △1,049억 5,700만원 감소된 것으로,

- 서울시의 계획 등에 따라 채무총액을 관리하고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 결과 채무 규모는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표 3-26〉 직전회계연도 대비 예산대비 채무비율 변동현황(결산시점 기준)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채무 현재액 (채무잔액)	최 종 예 산			예 산 대 비 채 무 비 율
		⑥	예 산	기 금	
	①	②	③	④	⑤/②
2023회계연도 ㉓	11,442,497	56,915,595	50,375,981	6,539,613	20.1
2024회계연도 ㉔	11,337,539	52,668,999	47,414,393	5,254,606	21.5
증 감 ㉔-㉓	△104,957	△4,246,595	△2,961,588	△1,285,007	1.4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등을 재구성

- 다만, 채무 규모가 감소되었음에도 최종예산의 규모 또한 직전회계연도(56조 9,155억 9,500만원)보다 △7.4%, △4조 2,465억 9,500만원 감소됨에 따라 재정지표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오히려 직전회계연도(20.1%)보다 1.4%p 증가된 21.5%로 확인되는 바,
- ①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21.5%)은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22.1%)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며, ② 향후 비율이 증가되어 25%를 초과한다면 법령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③ 서울시의 전체 채무(11조 3,375억 3,900만원) 중 '25회계연도부터 '29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약 8조 2,135억원(전체 채무의 72.4%)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채무 규모가 직전회계연도말보다 소폭 감소되었다는 것만으로 낙관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채무 발생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27〉 연도별 채무 만기도래액 현황('24회계연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

전 체 채무규모	5년간 만기도래 채무						2030 이후 만기도래 채무
	소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113,375 (100.0)	82,135 (72.4)	19,645 (17.3)	18,354 (16.2)	14,778 (13.0)	14,210 (12.5)	15,148 (13.4)	31,240 (27.6)

〈표 3-28A〉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 ^{주1)}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4년도말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5년도말	
				발행 금리 ^{주2)}	거치·상환 기간	현재액	발생액 ^{주3)}	소멸액 ^{주4)}	이자 지급액	현재액 (잔액)	
채무총계 (가)+(나)+(다)			11,763,268			11,337,539	1,933,858	1,964,485	215,118	11,306,913	
지방채 (가)=A+B+C			11,763,268			11,337,539	1,933,858	1,964,485	215,118	11,306,913	
일반회계 A			34,200			34,200	150,000	-	783	184,200	
마곡산업단지 공공 지원센터(M+센터) 건립			모집공채 '21.12. 7	24,000	2,29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24,000	-	-	549	24,000
서울의료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모집공채 '21.12. 7	8,200	2,29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8,200	-	-	187	8,200
단절된 녹지축 연결			모집공채 '21.12. 7	2,000	2,29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2,000	-	-	45	2,000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25. 7(예정)	-	미정	7년거치, 일시상환	-	150,000	-	-	150,000
특별회계 B=①+②			11,229,068			10,803,339	1,783,858	1,614,485	207,329	10,972,713	
기타특별회계 ①			11,229,068			10,803,339	1,783,858	1,614,485	207,329	10,972,71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703,193			6,703,193	938,458	794,339	115,193	6,847,312	
도시철도공채 ^{주5)} 상환(원리금 상환)			도시철도 공채 '18~'25	5,275,193	1,000~2,500 (고정)	7년거치, 일시상환	5,275,193	666,958	774,339	69,665	5,167,812
도시철도공채 ^{주6)} 상환(원리금 상환)			모집공채 '21.11.19	190,000	2,367(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663,000	87,000	20,000	22,455	730,000
			모집공채 '23.11.13	253,000	4,263(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공자기금 '24.10.31	220,000	3,123(고정)	5년거치, 10년 불상환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모집공채 '25. 3.27	-	2,945(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213,600	-	-	6,732	213,600
			모집공채 '20.11. 5	38,600	1,695(고정)	10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1.12. 7	23,100	2,424(고정)	7년거치, 일시상환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재)			모집공채 '23.11.13	81,900	4,263(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210,200	89,500	-	6,711	299,700
			모집공채 '24.12. 5	70,000	2,895(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0.11. 5	4,200	1,695(고정)	10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1.12. 7	45,000	2,424(고정)	7년거치, 일시상환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재)			모집공채 '23.11.13	47,000	4,263(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152,200	-	-	3,017	152,200
			모집공채 '24. 9.27	114,000	3,110(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5.11(예정)	-	미정	10년거치, 일시상환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모집공채 '20.11. 5	92,200	1,695(고정)	10년거치, 일시상환	63,000	20,000	-	2,226	83,000
			모집공채 '21.12. 7	60,000	2,424(고정)	7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3.11.13	28,000	4,263(고정)	3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4.12.13	35,000	2,950(고정)	5년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 '25.11(예정)	-	미정	10년거치, 일시상환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3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4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24억원)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주5)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 그 자체에 대한 것임

주6) 도시철도공채(매출공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모집공채, 정부자금채 등)에 대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8B〉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주1)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4년도말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5년도말
					발행 금리 ^(주2)	거치·상환 기간	현재액	발생액 ^(주3)	소멸액 ^(주4)	이자 지급액	현재액 (잔향액)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6,703,193			6,703,193	938,458	794,339	115,193	6,847,312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 (국비)	모집공채	'23.11.13	51,000	4.263(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76,000	75,000	-	2,911	151,000	
	모집공채	'24.12.13	25,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11(예정)	-	미정	10년거치 알시상환						
지하철 4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시비)	모집공채	'24.12.13	50,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50,000	-	-	1,475	50,000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26,400			326,400	-	-	7,098	326,400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모집공채	'19.11.22	42,000	1.790(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213,000	-	-	5,261	213,000	
	모집공채	'21.12. 7	81,000	2.29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4.12.13	90,000	2.95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공자기금	'20.10.30	83,400	1.365(고정)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83,400	-	-	1,109	83,400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21.12. 7	30,000	2.424(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30,000	-	-	727	30,0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112,574			1,709,552	433,000	489,570	41,694	1,652,981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기금	'95~01	685,227	3.000(고정)	10년거치 20년분할상환	903,552	108,000	164,570	18,678	846,981	
	주택기금	'15~17	333,347	1.800(변동)	30년거치 15년분할상환						
	모집공채	'19.11.14	180,000	1.885(고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0.11.20	108,000	1.47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10(예정)	-	미정	10년거치 알시상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20.11. 5	85,000	1.415(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602,000	265,000	265,000	16,417	602,000	
	모집공채	'21. 6.11	120,000	2.030(고정)	7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1.12. 1	37,000	2.230(고정)	5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3.11.22	180,000	3.963(고정)	2년거치 알시상환						
	공자기금	'24.10.31	180,000	3.123(고정)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모집공채	'25.10(예정)	-	미정	10년거치 알시상환						
	모집공채	'25.10(예정)	-	미정	15년거치 알시상환						
일반(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	모집공채	'24. 9.27	12,000	3.110(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2,000	-	-	373	12,000	
청년 매입임대 사업	모집공채	'24. 9.27	12,000	3.110(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2,000	-	-	373	12,000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모집공채	'23.11.22	60,000	3.963(고정)	2년거치 알시상환	60,000	60,000	60,000	2,377	60,000	
	모집공채	'25.11(예정)	-	미정	15년거치 알시상환						
재건축 등 공공 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24.12. 5	120,000	2.895(고정)	3년거치 알시상환	120,000	-	-	3,474	120,000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3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4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24억원)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8C〉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주1)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4년도말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5년도말
					발행 금리 ^(주2)	거치·상환 기간	현재액	발생액 ^(주3)	소멸액 ^(주4)	이자 지급액	현재액 (잔액)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47,400			2,024,693	412,400	330,575	42,511	2,106,51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시공원)	모집공채	'19.10.30	210,000	1.847(고정)	30년까지 알시상환	1,280,000	280,000	280,000	24,306	1,280,000	
	모집공채	'19.11.22	190,000	1.685(고정)	30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19.12.24	180,000	1.742(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20. 5.22	280,000	1.297(고정)	5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20. 7.23	150,000	1.359(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21. 5.14	150,000	2.245(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21.12. 1	120,000	2.454(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25. 4.17	-	2.803(고정)	7.5년까지 알시상환						
풍납토성 복원	모집공채	'19.11.22	48,000	1.790(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48,000	-	-	859	48,000	
신원빛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모집공채	'19.11.22	15,000	1.790(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15,000	-	-	268	15,00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모집공채	'19.11.22	12,000	1.790(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12,000	-	-	214	12,000	
빛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모집공채	'19.11.22	10,000	1.790(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10,000	-	-	179	10,000	
신림~봉천터널 건설	상생기금	'19.12.20	24,200	1.500(고정)	2년까지 8년 불환	69,368	-	13,025	1,558	56,343	
	모집공채	'20.11.20	23,000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모집공채	'21.11.24	22,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상생기금	'24. 9.25	10,000	3.750(고정)	2년까지 8년 불환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상생기금	'20. 7.24	41,200	0.750(고정)	2년까지 8년 불환	87,325	-	5,150	1,750	82,175	
	모집공채	'21.11.24	59,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안양교 확장	공자기금	'20.10.30	14,500	1.365(고정)	5년까지 10년 불환	31,500	-	-	645	31,500	
	모집공채	'21.11.24	17,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공자기금	'20.10.30	16,900	1.365(고정)	5년까지 10년 불환	16,900	-	-	230	16,900	
월드컵 대교 건설	모집공채	'20.11.20	66,000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124,500	-	-	2,560	124,500	
	모집공채	'21.12. 1	58,500	2.383(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모집공채	'20.11.20	44,996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99,996	-	-	2,242	99,996	
	모집공채	'21.11.24	55,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강남순환도로 고속도로 건설	모집공채	'20.11.20	57,611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65,611	-	-	1,228	65,611	
	모집공채	'21.11.24	8,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양재대로 구조개선	모집공채	'20.11.20	16,000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48,000	25,000	24,000	1,761	49,000	
	모집공채	'21.11.24	8,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상생기금	'24. 9.25	24,000	3.750(고정)	2년까지 8년 불환						
	모집공채	'25. 3.27	-	2.945(고정)	5년까지 알시상환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모집공채	'20.11.20	4,393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32,393	-	-	814	32,393	
	모집공채	'21.11.24	28,000	2.632(고정)	7년까지 알시상환						
한강상교량 연결로 구조 개선(올림픽대교 남단)	모집공채	'20.11.20	11,000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11,000	-	-	194	11,000	
율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모집공채	'20.11.20	2,000	1.767(고정)	10년까지 알시상환	2,000	-	-	35	2,000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3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4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24억원)를 서울특별시 시농수산물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8D〉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주1)}	발행 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024년도말	2025년도 중 채무관리계획			2025년도말
					발행 금리 ^{주2)}	거치·상환 기간	현재액	발생액 ^{주3)}	소멸액 ^{주4)}	이자 지급액	현재액 (잔액)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47,400			2,024,693	412,400	330,575	42,511	2,106,518
사당로 (구) 범진여객~ 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모집공채	'20.11.20	4,000	1.767(고정)	10년 거치, 일시 상환	4,000	-	-	70	4,000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모집공채	'21.11.19	5,000	2.367(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5,000	-	-	118	5,000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모집공채	'21.11.19	3,000	2.367(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3,000	-	-	71	3,000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모집공채	'21.11.19	2,000	2.367(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2,000	-	-	47	2,000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모집공채	'21.12. 7	1,100	2,424(고정)	7년 거치, 일시 상환	21,100	-	-	648	21,100
		모집공채	'24. 9.27	20,000	3,110(고정)	3년 거치, 일시 상환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상생기금	'24. 9.25	6,000	3,750(고정)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	6,000	-	6,000	225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모집공채	'24. 9.27	30,000	3,110(고정)	3년 거치, 일시 상환	30,000	40,000	-	1,522	70,000
		모집공채	'25. 3.27	-	2,945(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모집공채	'25. 3.27	-	2,945(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	30,000	-	441	3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		모집공채	'25. 3.27	-	2,945(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	25,000	-	368	25,00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모집공채	'25. 3.27	-	2,945(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	10,000	-	147	10,000
가락동 농수산물도매 시장 시설 현대화		농안기금	'25. 4 '25. 7	-	3,000(고정)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	2,400	2,400	-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39,500			39,500	-	-	832	39,50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모집공채	'19.11.22	11,000	1,790(고정)	10년 거치, 일시 상환	11,000	-	-	196	11,000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모집공채	'19.11.22	2,000	1,790(고정)	10년 거치, 일시 상환	5,000	-	-	102	5,000
		모집공채	'21.12. 1	3,000	2,230(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모집공채	'21.12. 1	7,000	2,230(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7,000	-	-	156	7,000
서림청소년음악캠퍼스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사업))		모집공채	'21.12. 1	2,500	2,230(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2,500	-	-	55	2,500
평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모집공채	'21.12. 7	14,000	2,290(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14,000	-	-	320	14,0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②				-			-	-	-	-	-
기 금 ㉠				500,000			500,000	-	350,000	7,005	150,000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500,000			500,000	-	350,000	7,005	150,000
재난예방(재난관리 주5) 기금 재난계정)		모집공채	'20. 7.23	150,000	1,237(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500,000	-	350,000	7,005	150,000
		모집공채	'21. 3.26	150,000	1,710(고정)	5년 거치, 일시 상환					
		모집공채	'22. 2.11	200,000	2,585(고정)	3년 거치, 일시 상환					
채 무 부 담 행 위 (나)			-			-	-	-	-	-	-
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 (다)			-			-	-	-	-	-	-

주1) ① “공자기금”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 소관), ② “주택기금”은 정부자금인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소관), ③ “농안기금”은 정부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④ “상생기금”은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역상생발전조합 소관)을 의미함

주2) “(고정)”이라고 표시된 것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며, “(변동)”이라고 표시된 것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4년 12월(4/4분기) 기준 상환금리를 기재한 것임

주3) 채무 발생액은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분('24회계연도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서 '23회계연도분을 이월하여 '24회계연도에 발행한 내역(이월발행분)은 없음

주4) 채무 소멸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경우,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24억원)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주5)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임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② 각 회계연도 결산서 중 “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재구성

〈표 3-29〉 서울시 및 서울시투자기관의 부채·채무 현황 (2024~2022)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4	2 0 2 3	2 0 2 2
서울시 및 투자기관 총계	부 채	46,867,114	43,429,021	44,776,082
	채 무	22,786,765	21,714,185	22,017,477
서울시	부 채	18,633,017	18,089,181	19,360,205
	채 무	11,337,539	11,442,497	11,898,002
서울시투자기관	부 채	28,234,097	25,339,839	25,415,876
	채 무	11,449,225	10,271,687	10,119,475
서울교통공사	부 채	7,347,323	6,832,164	6,556,959
	채 무	4,188,000	3,958,000	3,538,000
서울시설공단	부 채	252,659	245,661	199,348
	채 무	-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 채	213,125	197,104	172,091
	채 무	98,218	94,122	71,19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1)}	부 채	20,023,630	17,706,889	18,168,757
	채 무	6,892,888	5,960,188	6,328,312
서울에너지공사	부 채	380,955	349,126	307,276
	채 무	270,118	259,377	181,96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 채	16,403	8,893	11,442
	채 무	-	-	-

주1)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25. 4.25 본회의 의결)되어 공사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422 ('25. 4.25)

IV.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 '24회계연도 최종예산 규모는 47조 4,143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조 6,905억 5,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조 1,049억 5,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1조 4,900억 4,800만원) 보다 예산현액 규모가 △4.6%, △2조 3,850억 9,700만원 감소함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46조 7,814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가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직전회계연도(92.2%) 보다 3.1%p 증가하였음
- '24회계연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 9,202억 9,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6,905억 5,700만원) 보다 △7,702억 6,600만원 감소하였고,
-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0.2%, 779억 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01억 8,500만원) 보다 △222억 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 1조 3,252억 8,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2,388억 5,000만원)보다 △9,135억 6,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4-1〉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종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계	47,414,393	1,690,556	49,104,950	47,360,506	46,781,476	920,290	77,902	1,325,280
예산현액 대비	-	-	-	96.4	95.3	1.9	0.2	2.7
일반회계	34,246,380	256,205	34,502,585	33,717,626	33,565,394	189,536	68,982	678,674
예산현액 대비	-	-	-	97.7	97.3	0.5	0.2	2.0
특별회계	13,168,013	1,434,351	14,602,365	13,642,880	13,216,082	730,754	8,920	646,606
예산현액 대비	-	-	-	93.4	90.5	5.0	0.1	4.4

- 아울러 2023회계연도에 이어 2024회계연도에도 실·본부·국간 또는 부서간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48건, 153억 3,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65건, 240억 3,600만원) 보다 △17건, △87억 1,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4-2〉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합계 (건수)	15,337 (148)	24,036 (165)	26,784 (132)
일반회계 (건수)	10,794 (129)	12,067 (138)	16,575 (90)
특별회계 (건수)	4,542 (19)	11,970 (27)	10,209 (42)
기타특별회계 (건수)	3,685 (17)	3,531 (18)	8,130 (36)
공기업특별회계 (건수)	857 (2)	8,439 (9)	2,079 (6)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건수임

2. 불용액²⁾ 관련

(1) 불용액(집행잔액) 발생 현황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49조 1,049억 5,000만원)의 2.6%에 해당하는 1조 3,252억 8,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2,388억 5,000만원)보다 △40.8%, △9,135억 6,9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4-3〉 서울시 세출결산 현황('24회계연도~'23회계연도)^{주1)}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2 0 2 4 회 계 연 도 ㉠	2 0 2 3 회 계 연 도 ㉡	증 감 액 ㉢=㉠-㉡	증 감 률 ㉢/㉡
예 산 현 액 ㉠	49,104,950	51,490,048	△2,385,097	△4.6
지 출 액 ㉡	46,781,476	47,460,455	△678,978	△1.4
(집 행 률) ㉡/㉠	(95.2)	(92.1)	(3.0)	
다음연도 이월액 ㉢	920,290	1,690,556	△770,266	△45.5
(이 월 률) ㉢/㉠	(1.8)	(3.2)	(△1.4)	
보조금 반납금 ㉣	77,902	100,185	△22,282	△22.2
(보조금반납금 비율) ㉣/㉠	(0.1)	(0.1)	(0.0)	
불 용 액 ㉤=㉠-㉡-㉢-㉣	1,325,280	2,238,850	△913,569	△40.8
(불 용 률) ㉤/㉠	(2.6)	(4.3)	(△1.6)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2) 용어사용 관련사항

- '14년 11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세출결산에 관하여 “집행잔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어 온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됨
- '16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바, 현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세출결산 명시사항으로 “집행잔액”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시 그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25. 1. 1 시행)에는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용되어 온 용어인 “불용액”까지 여전히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고,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는 “지출잔액”(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존재하고 있어 유사 용어 사용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이라는 용어를 병용함

- 지난 '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의 규모가 직전회계연도('22회계연도)보다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회계연도 중 집행되지 못한 재원인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 그리고 불용액의 발생규모는 오히려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됨에 따라 결산심사시 우리 위원회는 이월·불용 등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 '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집행률(95.1%)이 직전회계연도(92.1%)보다 3.0%p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뿐만 아니라 불용액의 규모 또한 감소되어 재정지표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예산현액의 규모(49조 1,049억 5,000만원)가 지난 '23회계연도(51조 4,900억 4,800만원)와 '22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보다 감소된 것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일 수 있어 재정운영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주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2 0 2 4	49,104,950	1,325,280	2.6
2 0 2 3	51,490,048	2,238,850	4.3
2 0 2 2	53,468,799	1,995,105	3.7
2 0 2 1	47,759,128	1,180,681	2.4
2 0 2 0	46,798,514	1,223,944	2.6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불용액 발생 현황을 회계별로 검토하면 일반회계는 직전회계연도(1조 2,418억 9,900만원)보다 △45.3%, △5,632억 2,500만원 감소된 6,786억 7,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비 교부 규모를 감액하는 변경내시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의결('24. 6)된 이후인 하반기에 통보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지 못하여 결산시점에서는 부족수령된 국비가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unfunded disuse)으로 처리되고 매칭시비까지 불용된 것이 불용액 발생규모를 확대시킨 주요원인으로 검토되는 바,
- 향후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대해 조기에 변경내시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포인트(One-Point)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재원없는 불용'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응편성된 시비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9,969억 5,000만원)보다 △35.1%, △3,503억 4,400만원 감소된 6,466억 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기타특별회계중 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99.9%, △262억 9,800만원 감소), 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93.6%, △3,127억 1,500만원 감소), ③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68.8%, △22억 6,100만원 감소), ④ **교통사업특별회계**(△47.7%, △697억 8,200만원 감소), 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3.4%, △29억 3,400만원 감소), ⑥ **균형발전특별회계**(△32.1%, △47억 8,500만원 감소)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 ⑦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245.1%, 326억 2,400만원 증가), ⑧ **소방특별회계**(26.5%, 73억 6,000만원 증가), ⑨ **주택사업특별회계**(9.0%, 154억 9,000만원 증가), ⑩ **도시개발특별회계**(4.5%, 35억 7,400만원 증가)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증가된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8억 7,900만원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1,060억 3,000만원)보다 불용액이 △7.6%, △81

억 5,100만원 감소하였으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44억 8,500만원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669억 5,100만원)보다 불용액이 26.1%, 175억 3,4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4-5〉 회계별 불용액 발생현황('24회계연도~'23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p)

회 계 명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률) ^{주1)}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률) ^{주1)}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률) ^{주1)}
합 계	49,104,950	1,325,280 (2.6)	51,490,048	2,238,850 (4.3)	△2,385,097	△913,569 (△1.6)
일 반 회 계	34,502,585	678,673 (1.9)	36,507,392	1,241,899 (3.4)	△2,004,807	△563,225 (△1.4)
특 별 회 계	14,602,365	646,606 (4.4)	14,982,655	996,950 (6.6)	△380,290	△350,344 (△2.2)
기타특별회계	12,505,405	464,241 (3.7)	12,979,944	823,968 (6.3)	△474,538	△359,727 (△2.6)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192,501	45,935 (2.0)	2,057,950	13,310 (0.6)	134,551	32,624 (1.4)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818,772	76,399 (4.2)	2,230,608	146,182 (6.5)	△411,836	△69,782 (△2.3)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286,302	5,843 (2.0)	332,691	8,778 (2.6)	△46,388	△2,934 (△0.5)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35,935	185,849 (6.1)	3,041,073	170,359 (5.6)	△5,137	15,490 (0.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85,456	82,644 (3.9)	2,119,576	79,070 (3.7)	△34,120	3,574 (0.2)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27,487	10,090 (4.4)	211,850	14,875 (7.0)	15,637	△4,785 (△2.5)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9,594	74 (0.7)	36,771	26,373 (71.7)	△27,177	△26,298 (△70.9)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1,790,363	21,267 (1.1)	1,928,934	333,983 (17.3)	△138,570	△312,715 (△16.1)
한강수질개선회계	32,258	1,021 (3.1)	37,339	3,282 (8.7)	△5,081	△2,261 (△5.6)
소 방 특 별 회 계	1,026,732	35,115 (3.4)	983,148	27,755 (2.8)	43,584	7,360 (0.5)
공기업특별회계	2,096,959	182,365 (8.6)	2,002,711	172,981 (8.6)	94,248	9,383 (0.0)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20,431	97,879 (9.5)	995,268	106,030 (10.6)	25,162	△8,151 (△1.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1,076,527	84,485 (7.8)	1,007,442	66,951 (6.6)	69,085	17,354 (1.2)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① 보조금정산잔액, ② 예산절감액, ③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 낙찰차액, ⑤ 지출잔액, ⑥ 예비비를 포함한 6가지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표 4-6〉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사유 비교^{주1)}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발생사유 ^{주2)}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4 회계연도	불용액	1,325,280	164,460	4,609	301,570	68,533	686,273	99,833
	구성비	100.0	12.4	0.3	22.8	5.2	51.8	7.5
2023 회계연도	불용액	2,238,850	382,014	6,144	547,759	81,831	1,131,386	89,713
	구성비	100.0	17.1	0.3	24.5	3.7	50.5	4.0
2022 회계연도	불용액	1,995,105	302,036	-	771,840	84,915	750,653	85,660
	구성비	100.0	15.1	0.0	38.7	4.3	37.6	4.3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른 각 사유(원인)의 의미는 아래와 같음

1. 보조금정산잔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액 : ①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②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지출잔액**의 경우,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3,252억 8,000만원) 중 51.8%에 해당하

는 6,862억 7,3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서 ① 불용액의 규모는 직전회계연도(1조 1,313억 8,600만원)보다 △39.3%, △4,451억 1,300만원 감소된 것이나, ②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차지하는 비중(51.8%)은 직전회계연도(50.5%)보다 1.3%p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3,252억 8,000만원) 중 22.8%에 해당하는 3,015억 7,0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서 ① 불용액의 규모가 직전회계연도(5,477억 5,900만원)보다 △44.9%, △2,461억 8,900만원 감소되었고, ②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차지하는 비중(22.8%)도 직전회계연도(24.5%)보다 △1.7%p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지출잔액**의 경우,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회계연도에는 37.6%, '23회계연도 50.5%, '24회계연도 51.8%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22회계연도 38.7%, '23회계연도 24.5%, '24회계연도 22.8%로 감소되는 추세로 검토되나,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서울시가 결산서 중 **지출잔액**으로 구분한 사안 중에는 서울시가 자의(自意)로 ㉠ 관련 세목의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중앙정부가 ㉢ 국비 교부액을 감액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사례, ㉣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급단가가 하락되어 보조금 지급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고,
- 심지어는 ㉤ 서울시의 계획 변경 또는 공사 일시중단으로 불용이 발생한 사례, ㉦ 관련 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이 발생한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주체인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임에도,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는 **지출잔액**으로 구분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정한 불용액 발생사유 사례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 잘못된 구분 자체가 서울시가 불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용액의 의미를 단순한 잔액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불용액 중 **보조금정산잔액**은 직전회계연도(3,720억 1,400만원)보다 △56.9%, △2,175억 5,400만원 감소된 1,644억 6,000만원이 발생된 것이며, 예비비 편성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예비비**는 직전회계연도(897억 1,300만원)보다 11.2%, 101억 1,900만원 증가된 998억 3,300만원이 발생된 것임
- 아울러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직전회계연도(818억 3,100만원)보다 △16.2%, △132억 9,700만원 감소된 685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직전회계연도(61억 4,400만원)보다 △24.9%, △15억 3,500만원 감소된 46억 9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실·본부·국 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복지실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3,252억 8,000만원)의 16.5%, 2,193억 2,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불용액(2,193억 2,800만원) 중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1,079억 3,100만원)과 **보조금정산잔액**(681억 1,3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임
-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시 복지실에 대해 국비 부족수령 등으로 인해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되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확대되고, 매칭시비의 불용액을 의미하는 **보조금정산잔액**의 규모 또한 증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실제 교부액과 예산액

을 적극적으로 관리·경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사례가 있음에도,

- '24회계연도의 경우, 복지실의 불용액(2,193억 2,8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5,192억 1,500만원)보다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10개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 부족수령이 발생됨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정산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바,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에 대한 교부권한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불용액 발생규모를 축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중앙정부에 국비 교부규모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변경 내시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동일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주택실의 경우에는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16.1%에 해당하는 2,127억 2,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불용액(2,127억 2,900만원) 중에는 **지출잔액**(951억 700만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692억 5,3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 물순환안전국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9.3%에 해당하는 1,238억 9,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불용액(1,238억 9,400만원) 중에는 **지출잔액**(580억 800만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263억 7,7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이고,
- 교통실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불용액 중 7.7%에 해당하는 1,017억 7,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불용액(1,017억 7,200만원) 중에는 **지출잔액**(860억 8,200만원)과 **보조금정산잔액**(48억 5,5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4-7〉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 (계)	발 생 사 유 별 불 용 액						
		구성비 ^{주2)}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유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325,280	100.0	164,460	4,609	301,570	68,533	686,273	99,833
복 지 실	219,328	16.5	68,113	-	107,931	95	43,188	-
주 택 실	212,729	16.1	44,799	-	69,253	483	95,107	3,083
물 순 환 안 전 국	123,894	9.3	23,203	112	26,377	15,434	58,008	758
교 통 실	101,772	7.7	4,855	83	4,556	3,742	86,082	2,451
서 울 아 리 수 본 부	97,879	7.4	6,400	1,127	2,240	16,497	61,912	9,700
기 획 조 정 실	83,829	6.3	-	-	214	306	2,270	81,038
소 방 재 난 본 부	63,434	4.8	237	90	1,389	2,339	57,563	1,813
평 생 교 육 국	59,339	4.5	76	-	198	124	58,940	-
재 무 국	51,970	3.9	-	-	47	174	51,747	-
여 성 가 족 실	49,216	3.7	11,266	-	9,024	247	28,677	-
미 래 한 강 본 부	40,113	3.0	-	3	31,383	2,030	6,695	-
기 후 환 경 본 부	34,514	2.6	520	1,354	3,238	1,757	27,643	-
재 난 안 전 실	30,315	2.3	1,315	395	1,406	11,654	15,543	-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26,460	2.0	776	-	20,966	28	4,690	-
정 원 도 시 국	23,580	1.8	822	44	5,397	4,211	13,102	-
행 정 국	21,403	1.6	-	114	44	245	20,998	-
경 제 실	16,119	1.2	158	-	4,096	230	11,633	-
시 민 건 강 국	14,796	1.1	918	65	4,611	898	8,302	-
문 화 본 부	12,946	1.0	327	187	2,715	880	8,835	-
미 래 청 년 기 획 관	5,653	0.4	64	-	-	554	5,034	-
균 형 발 전 본 부	4,692	0.4	17	-	943	329	2,415	987
민 생 노 동 국	4,673	0.4	489	48	1,425	98	2,611	-
디 지 털 도 시 국	4,642	0.4	4	385	337	2,469	1,444	-
관 광 체 육 국	3,573	0.3	14	371	792	270	2,125	-
시 립 미 술 관	3,182	0.2	-	-	106	426	2,649	-
의 회 사 무 처	2,813	0.2	-	36	759	302	1,715	-
도 시 공 간 본 부	2,744	0.2	-	40	361	298	2,044	-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948	0.1	-	-	427	379	1,142	-
인 재 개 발 원	1,671	0.1	-	-	10	155	1,505	-
디 자 인 정 책 관	1,580	0.1	-	-	827	527	225	-
홍 보 기 획 관	1,024	0.1	-	142	1	490	389	-
서 울 역 사 박 물 관	870	0.1	7	-	-	232	631	-
건 설 기 술 정 책 관	622	0.0	-	-	382	33	207	-
글 로 벌 도 시 정 책 관	581	0.0	66	-	-	1	513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464	0.0	-	4	37	288	134	-
비 상 기 획 관	417	0.0	2	-	20	233	161	-
감 사 위 원 회	210	0.0	-	-	-	-	210	-
민 생 사 법 경 찰 국	116	0.0	-	-	15	49	5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7	0.0	-	-	-	-	77	-
대 변 인	70	0.0	-	-	27	5	37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4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 14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8〉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3,940	3,940
물순환안전국	대치역사거리 빗물펌프장 신설	2,000	2,000
재난안전실	성암로 도로 확장	500	500
건설기술정책관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382	382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The-K호텔) 운영	311	311
물순환안전국	정수비용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29	229
미래공간기획관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타당성조사	180	180
미래공간기획관	수서 공영주차장 복합화 타당성조사 수수료	180	180
균형발전본부	한강 곤돌라(잠실) 추진	150	150
균형발전본부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45	45
주 택 실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30	30
시민건강국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10	10
균형발전본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4	4
교 통 실	화물위법행위 관련 포상금	1	1

※ 예비비와 인력운영비 그리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제외한 것임

○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소관 **성암로 도로확장**은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3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5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있고,
- '24회계연도의 경우, 자치구(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선형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성암로변에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자치구 사업에 보행로 조성에 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미반영됨('24. 7)에 따라 예산현액 전액(5억원)이 불용처리된 것임

〈표 4-9〉 성암로 도로확장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발생내역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500	500 (100.0)	-	-	-	-	500 (100.0)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의 경우, 결산서에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의 경우에는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주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미시행된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자치구의 사업계획에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을 미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5억원)은 **지출잔액**이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용사유를 부적절하게 기재한

사례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정수비용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은 당초 '2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른 국비의 간주처리를 통해 신설된 세부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억 2,9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4년 9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서울시로 국비(2억 2,900만원)가 지원됨을 한강유역환경청이 통보('24. 9.23)하여 '24년 10월과 12월, 사업부서는 예산부서에 간주처리를 요청하였으나,
- 12월 6일에서야 간주처리를 통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어 회계연도 종료 전 약품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여 소요예산(2억 2,900만원)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임
- 우리 시의회는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는 국비를 서울시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예산총칙 중 간주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제9조)을 포함시켜 의결하고 있는 바,
- 간주처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는 이전재원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24년 9월 통보된 국비를 12월에서야 간주처리함으로써 소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부족하여 소요예산 전액(2억 2,900만원)을 불용시킨 사안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0〉 정수비용지원(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보 조 금	예 산	계획변경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정산잔액	절 감 액	집행사유 미 발 생			
229	229 (100.0)	-	-	-	-	229 (100.0)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아울러 동 사업은 서울시가 회계연도 중 지출원인행위(약품계약)를 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할 사유 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불용액 발생사유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단순한 잔액을 의미하는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안으로 판단됨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소관 **한강 곤돌라(잠실) 추진**은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 당초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23. 7 의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지연되어 예산현액(1억 5,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있음
- '24년도의 경우에는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곤돌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적격성조사를 위한 경비(1억 5,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을 보류하는 사유로 제시된 대규모 사업 중에는 서울시가 '21년 5월, 시의회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잠실 스

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이미 추진되고 있던 유관사업을 예산 편성과 이월을 거친 이후에서야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단계에서 유관사업의 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소관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으로서 예산현액 4,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7만 1,302 m^2)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4,500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 국토교통부에는 일정한 기 해제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20만 제곱미터(m^2)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미 해제된 지역이 집단취락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24년 2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 이적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 해제된 지역이 집단취락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연접한 20만 제곱미터(m^2)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 '24년 4월, 지침 일부개정시 서울시가 개선건의한 내용이 미반영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해 소요예산(4,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4,500만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예산편성 당시의 구 지침은 물론 '24년 4월

개정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위한 용역비는 '24년도 제1회 추경('24. 6 의결)을 통해 감액조정되어야 함에도 감추경을 요청하지 않아 전액불용이라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 결과를 유발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소관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은 '24년도 본예산에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면 그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연구자료 작성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아 예산현액(1,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소요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야 전액 불용 처리 하기보다는 '24년 6월 의결된 제1회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됨

(3)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43개 세부사업으로서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7,561억 900만원)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3,252억 8,000만원) 중 57.0%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 14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전액(100%)이 불용된 것이나, 전액불용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0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중 90% 이상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1A〉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복 지 실	기 초 연 금 지 급	3,271,508	104,856	3.2	-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767,463	40,631	2.2	-
주 택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525,300	40,000	7.6	-
주 택 실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10,683	39,369	35.5	-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1,840,453	32,942	1.7	-
교 통 실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02,905	31,668	30.7	-
주 택 실	청 년 매 입 임 대 사 업	213,970	28,858	13.4	14,746

※ 예비비와 인력운영비는 제외한 것임

〈표 4-11B〉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소방재난본부	소 방 특 별 회 계 일 반 전 출 금	977,726	28,319	2.8	-
복 지 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388,161	26,734	1.9	-
주 택 실	주 거 급 여 수 급 자 지 원	784,816	25,024	3.1	-
미래한강본부	서 울 향 조 성	25,521	24,854	97.3	456
복 지 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634,508	24,853	3.9	-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15,347	24,437	11.3	-
주 택 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360,956	24,351	6.7	54,742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42,040	24,040	57.1	11,644
복 지 실	의 료 급 여 사 업	1,790,196	21,267	1.1	-
교 통 실	지하철 9호선 2·3단계 재정지원	37,148	20,949	56.3	-
교 통 실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86,246	19,604	22.7	-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보 급	198,914	14,994	7.5	8,815
평 생 교 육 국	친 환 경 학 교 급 식 지 원	210,415	11,984	5.6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 북 선 경 전 철 건 설 (민 자)	191,611	11,802	6.1	14,584
주 택 실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 공공 임대 주택)	31,274	9,373	29.9	-
여 성 가 족 실	누 리 과 정 보 육 료 지 원	195,078	8,805	4.5	-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40,145	8,691	21.6	2,135
주 택 실	재 개 발 임대주택 위탁 관리	167,101	8,679	5.1	252

※ 예비비와 인력운영비는 제외한 것임

〈표 4-11C〉 불용액이 4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주 택 실	청 년 안 심 주 택 매 입	85,498	7,792	9.1	-
주 택 실	재 개 발 임 대 주 택 매 입	254,163	7,539	2.9	-
여 성 가 족 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7,314	6,962	9.0	-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0,588	6,915	13.6	2,016
물 순 환 안 전 국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30,884	6,884	22.2	20,01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9 호 선 4 단 계 건 설	77,672	6,622	8.5	4,243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73,047	6,313	8.6	8,295
주 택 실	신 혼 부 부 매 입 임 대 사 업	137,845	5,035	3.6	11,235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7,394	5,019	18.3	2,593
기 후 환 경 본 부	자 원 회 수 시 설 위 탁 운 영 (양 천 , 노 원 , 강 남 , 마 포)	101,529	4,842	4.7	233
서울아리수본부	급 수 공 사	28,298	4,718	16.6	-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63,847	4,528	1.7	-
여 성 가 족 실	아 동 수 당 지 원	382,246	4,517	1.1	-
문 화 본 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9,510	4,452	15.0	8,457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72,573	4,411	6.0	1,619
기 후 환 경 본 부	자 원 회 수 시 설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전 출 금	34,443	4,378	12.7	-
시 민 건 강 국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6,250	4,058	64.9	1,998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유 지 보 수	31,073	4,023	12.9	-

※ 예비비와 인력운영비는 제외한 것임

〈표 4-12〉 불용률이 90% 이상 100% 미만인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도시기반시설본부	위 레 신 사 선 건 설 (민 자)	3,227	3,215	99.6	-
정 원 도 시 국	백 악 산 일 원 탐 방 로 정 비	3,734	3,700	99.0	-
복 지 실	공공 실버타운(골드빌리지) 조성	202	200	98.8	-
미래한강본부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700	684	97.7	-
미래한강본부	서 울 항 조 성	25,521	24,854	97.3	456
물순환안전국	하 천 사 용 료 징 수 포 상 금	2	2	96.0	-
균형발전본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22	211	94.9	-
교 통 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1,152	1,052	91.3	-
정 원 도 시 국	공 유 재 산 관 리	28	25	91.0	-
문 화 본 부	서 울 문 학 의 집 운 영	386	348	90.3	-

※ 불용률인 100%인 세부사업(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세부사업)은 제외한 것임

○ 복지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은 예산현액(3조 2,715억 800만원) 중 3.2%, 1,048억 5,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당초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를 근거로 '24년도 본예산에 국비(2조 9,195억 9,700만원)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3,519억 1,000만원)를 포함한 3조 2,715억 8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 '2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을 기 편성액(2조 9,195억 9,700만원)보다 △934억 800만원 감액된 2조 8,261억 8,900만원으로 변경내시하고, 변경내시액(2조 8,261억 8,900만원) 전액을 교부한 바,

- 불용액(1,048억 5,600만원) 중 ① 국비 편성액과 수령액 간 차액인 934억 800만원이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발생한 장부상 허수인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하며 ② 나머지 114억 4,800만원은 대응편성된 시비(자체재원)가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 서울시가 부담하는 시비를 포함하여 대규모 재원이 편성·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내시 규모가 부정확하거나, 변경내시 시점이 지연되어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변경내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산시점에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 '24회계연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이 의결('24. 6)된 이후 11월에서야 보건복지부가 변경내시를 통보하여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감액조정하지 못한 국비와 이에 대응되는 시비가 불용되어 단일 세부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의 불용액(1,048억 5,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 중앙정부에 국비 교부규모에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변경내시를 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필요시에는 원포인트(One-Point)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장부상 허수인 국비 불용액, 즉 ‘재원없는 불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현금으로 대응편성 되는 시비 편성분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3〉 최근 5년간 기초연금 지급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보조금	예산	계획변경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정산잔액	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2024	3,271,508	104,856 (3.2)	-	-	<재원없는 불용(국비)> 93,408 (2.8)	-	<시비 불용> 11,448 (0.3)	-
2023	3,043,664	77,113 (2.5)	<시비 불용> 8,392 (0.2)	-	-	-	<재원없는 불용(국비)> 68,721 (2.2)	-
2022	2,740,152	12,011 (0.4)	<시비 불용> 1,385 (0.0)	-	<재원없는 불용(국비)> 10,625 (0.3)	-	-	-
2021	2,533,272	18,130 (0.7)	-	-	<재원없는 불용(국비)> 15,922 (0.6)	-	<시비 불용> 2,208 (0.0)	-
2020	2,236,874	-	-	-	-	-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320 ('21. 5.20) ②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1414 ('22. 5. 2)
③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678 ('23. 5.15) ④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384 ('24. 5.29)
⑤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6376 ('25. 5.19) ⑥ 각 회계연도 결산서 등 재구성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중앙정부 등 행정주체의 계획변경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은 경비는 불용사유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하고,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되지 않은 자체재원(시비)는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해 지난 '2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미집행된 자체재원(시비)를 지출잔액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부적정한 분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직후인 '22회계연도에만 일시적으로 불용사유를 적정하게 구분하였을 뿐 지난 '23회계연도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

유 미발생으로 구분되어야 할 재원없는 불용(국비)을 지출잔액으로 구분하고,

- 금번 '24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기재되어야 할 자체 재원(시비)의 불용을 지출잔액으로 구분하는 등 행정안전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그때그때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의로 불용사유를 구분하는 사례로서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택실 주거정비과 소관 세부사업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속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은 예산현액(5,253억원) 중 7.6%, 400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 회계연도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상황을 검토한 결과 결산시점에는 잉여금이 당초 추계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재원을 예탁하는 규모를 △400억원 축소함에 따라 해당 규모(400억원)만큼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지균형의 원칙은 결산의 측면에서는 1회계연도의 지출총액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자결산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표 4-14〉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③ + ⑥	초 과 세 입 금 ④	집 행 잔 액 ⑤
4,251	△224,216	228,468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중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42억 5,100만원으로 만일 동 사업에서 400억원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전액 집행(예탁)하였다면 동 회계는 세계잉여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적자결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례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400억원)은 단순히 쓰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서울시가 자의로 예탁규모를 축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나,

- 결산서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닌 **지출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불용사유 구분시 행정안전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보 조 금	예 산	계획변경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정산잔액	절 감 액	집행사유 미 발 생			
525,300	40,000 (7.6)	-	-	-	-	40,000 (7.6)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소관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06억 8,300만원) 중 35.5%, 393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임

〈표 4-16〉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세출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

통 계 목	본 예산	제1회 추경을 통한 증감조정	최종예산	변 경	예산현액 ①	지출액	불용액 ②	불용률 ②/①
합 계	115,603	△580	115,023	△4,340	110,683	71,314	39,369	35.5
이 차 보 전 금	114,883	-	114,883	△4,340	110,543	71,268	39,274	35.5
사회보장적수혜금 (지 방 재 원)	700	△580	120	-	120	25	94	78.9
사 무 관 리 비	20	-	20	-	20	19	-	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5123 ('25. 4. 2) 재구성

- 동 사업의 소요예산 중 **이차보전금**의 경우, '24년도 본예산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① 신혼부부를 위한 이차보전금(1,035억 6,200만원)과 ② 청년을 위한 이차보전금(111억 4,300만원) 그리고 ③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별대출을 시행하기 위한 이차보전금(1억 7,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① '23년 11월, 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보전과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에 대한 변경 협의가 '24년 5월에서야 완료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시행시기('24. 7.30)가 사업부서의 당초 계획('24. 4)보다 지연되었고,
- ② 고금리 기조에 따른 자부담 증가로 인해 이용자 수가 감소되어 '24년 12월, △43억 4,000만원을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예산현액(1,105억 4,300만원) 중 35.5%, 392억 7,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대한 협의는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先) 이행되어야 할 사전절차에 해당됨에도,

- 동 사업의 경우, '2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사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향후 별도의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하고 회계연도 중 사업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점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고, '23년 3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기존 사업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차보전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 결산시점에서는 '24년 4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음에도 '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23.11. 1)한 이후 별도로 요청('23.11.21)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지연되어 제도 변경시기 또한 지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 서울시가 ①예산심사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 등과 ②결산심사시 제출한 불용액 발생사유 간 사업내용과 사전절차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표 4-17〉 예산심사시 사업별설명서 기재내용과 결산심사시 불용액 발생사유 비교

구 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결산 심사시 불용액 발생사유	
사 전 절 차 대상 및 이행여부		구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기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제도협의	2023. 3. 21.	협의 완료	2023. 3. 21. 협의완료	2024. 5. 23. 협의완료
신 혼 부 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자보전금)	지 원 대 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좌동)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 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완화 등
	지 원 금 리	대출금의 최대 연 4% 이자 보전			(좌동)	대출금의 최대 연 4.5% 이자 보전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확대
청 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자보전금)	지 원 대 상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좌동)	(좌동)
	지 원 금 리	대출금의 최대 연 2% 이자 보전			(좌동)	대출금의 최대 연 3.5% 이자 보전 ※ 한부모가구 추가지원 산별(연 1%) 등
신 혼 부 부 보증보험료 지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 원 대 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신규대출 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좌동)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신규대출자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 험 료 지 원 액	1인당 20만원 한도(생애 1회)			(좌동)	1인당 30만원 한도(생애 1회)
비 고		사업별설명서에는 '24회계연도 중 사업내 용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음 (미기재)			'24년 4월부터 제도를 개선(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사 회보장협회가 지연되어 7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함 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함	

-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118~124
 ②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1157~1161
 ③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9596 ('23.10.16)
 ④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22087 ('23.11.21)
 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0720 ('24. 6.12)
 ⑥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5123 ('25. 4. 2) 등 재구성

- 시의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사시 서울시가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 등을 신뢰하여 소요예산을 의결한 것임에도, 사업부서는 예산심사 시에는 기존의 내용대로 추진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였던 사안에 대해 결산심사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불용사유를 적시한 사안으로,

- 사업부서가 예산심사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절차(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사업별

설명서는 적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성한 내용대로라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연된 것이 불용액이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로 사료되지 않음에도 직접적이거나 주된 불용사유로 부정확하게 제출한 사례로 사료됨

- 사업부서는 예산심사시와 결산심사시에 차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유를 공문을 통해 별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에 따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복지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는 예산현액(1조 3,881억 6,100만원) 중 267억 3,400만원(예산현액 중 1.9%)이 불용되고, 보조금반납금도 70억 6,300만원(예산현액 중 0.5%)이 발생한 것으로,
 -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보건복지부의 가내시('23. 9)에 따라 국비(9,376억 900만원)와 이에 매칭되는 시비(4,505억 5,200만원)를 포함한 1조 3,88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24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교부할 국비 규모를 예산액(9,376억 900만원)보다 △134억 1,200만원 감액한 9,241억 9,700만원으로 변경내시하고, 변경내시액 전액을 교부한 바,
 - 예산액(9,376억 900만원)과 실제수령액(9,241억 9,700만원) 간 차액인 134억 1,200만원이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산서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으로 기재된 것임

〈표 4-1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보조금	예산	계획변경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정산잔액	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1,388,161	7,063 (0.5)	26,734 (1.9)	13,322 (0.9)	-	13,412 (0.9)	-	-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아울러 서울시로 교부된 국비(9,241억 9,700만원) 중 70억 6,300만 원은 회계연도 중 집행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 정산 후 중앙정부에 반환 하여야 하는 국비로서 **보조금반납금**으로 처리된 것이며,
 - 교부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었던 국비(재원없는 불용)와 교부되었으나 지출되지 않아 반환예정인 국비(보조금반납금)에 대응편성된 시비 133억 2,200만원은 **보조금정산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제1회 추경예산을 의결('24. 6)한 후 약 4개월 이 경과한 시점('24.10)에서야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감추경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고, 중앙정부가 통보한 내시액이 실제 집행규모와도 일치되지 못해 '재원없는 불용'뿐만 아니라 보조금반납금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 향후에는 국비의 재원없는 불용과 보조금반납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중앙 정부에 국비를 적기에 변경내시하고, 내시규모의 정확성 또한 제고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래한강본부 소관 **서울항 조성**은 예산현액(255억 2,100만원) 중 97.3%, 248억 5,400만원이 불용되고, 4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 ① 입찰안내서에 대한 건설기술심의('24. 2), ② 운항선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유관기관 협의('24. 3~'24. 6) 등을 거쳐 ③ '24년 7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하였으나, ④ '24년 9월, 조달청의 입찰공고 결과 공사비 부족 등을 사유로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된 바,
- 적정 공사비 산정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총사업비가 현재 (490억 8,400만원)보다 증가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25년도에 해당 절차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어 시설비 4억 5,600만원은 사고이월 하고, 기본계획 재검토 및 타당성조사 이전에는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48억 5,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9〉 서울항 조성 세출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5,521	210 (0.8)	456 (1.7)	-	456 (1.7)	-	24,854 (97.3)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안건을 심사할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는 공사비 등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편성한 '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과거의 유사사례를 볼 때 경제적인 타당성 문제로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문적·객관적인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음
- 현재 공사비 재산정 등을 위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불용·이월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결과가 발생된 것은 서울시가 사

업에 대한 추진의욕을 우선하여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재고(再考)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이월예산이 불용된 사업

- '24회계연도의 경우, '23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원(이월예산)을 집행한 결과 10억원 이상 불용된 세부사업은 27개 사업이며, 이월예산 중 90% 이상 불용된 세부사업은 14개 사업으로 확인됨

〈표 4-20A〉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원(이월예산^{주1)})을 집행한 결과 10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중 이월예산		이월예산에 대한 불용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월예산에 대한 재이월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택 실	일반(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사업	360,956	279,607 ^{주2)}	24,351 (6.7)	14,193 (5.0)	54,742 (15.1)	- (0.0)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동 북 선 경 전 철 건 설 (민 자)	191,611	28,822	11,802 (6.1)	11,145 (38.6)	14,584 (7.6)	- (0.0)
주 택 실	신 혼 부 부 매 입 임 대 사 업	137,845	121,438 ^{주3)}	5,035 (3.6)	5,035 (4.1)	11,235 (8.1)	- (0.0)
문 화 본 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 성 · 운 영	29,510	17,788	4,452 (15.0)	4,437 (24.9)	8,457 (28.6)	7,035 (39.5)
시민건강국	보 라 매 병 원 안 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6,250	4,250	4,058 (64.9)	4,058 (95.4)	1,998 (31.9)	- (0.0)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3,940	3,940	3,940 (100.0)	3,940 (100.0)	- (0.0)	- (0.0)
미래한강본부	한 강 공 원 나 들 목 신 설 및 개 선	6,339	3,752	3,803 (59.9)	3,683 (98.1)	1,135 (17.9)	- (0.0)
평생교육국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4,632	4,686	2,884 (19.7)	2,879 (61.4)	1,359 (9.2)	- (0.0)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573	52,757	4,411 (6.0)	2,763 (5.2)	1,619 (2.2)	- (0.0)
물순환안전국	신 촌 - 6 소 구 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96	3,596	2,575 (71.5)	2,575 (71.5)	- (0.0)	- (0.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시 설 복 개 공 원 화	3,126	2,381	2,364 (75.6)	2,364 (99.2)	745 (23.8)	- (0.0)

※ 주1) 이월예산은 ① 예산현액 중 일부로서 ② '23회계연도로부터 '24회계연도로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건설개량이월 포함)된 재원을 의미하며,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됨

주2) '23회계연도 결산결과 3,108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24년 12월 27일, 전년도 명시이월액 중 △31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 **청년 매입임대 사업**(173억 5,000만원 증액)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138억 5,500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명시이월액(3,108억 1,200만원)보다 이월예산(2,796억 700만원)의 규모가 감소된 것임

주3) '23회계연도 결산결과 1,075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24년 12월 27일,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전년도 명시이월액 중 138억 5,500만원을 동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명시이월액(1,075억 8,300만원)보다 이월예산(1,214억 3,800만원)의 규모가 증가된 것임

〈표 4-20B〉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원(이월예산^{주1)})을 집행한 결과 10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중 이월예산		이월예산에 대한 불용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월예산에 대한 재이월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문 화 본 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25,867	10,958	1,896 (7.3)	1,896 (17.3)	5,257 (20.3)	233 (2.1)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 급 체 계 구 축	27,394	5,515	5,019 (18.3)	1,830 (33.1)	2,593 (9.4)	1,555 (28.2)
정원도시국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보상(시공원)	79,266	79,266	1,792 (2.2)	1,792 (2.2)	9,994 (12.6)	9,994 (12.6)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보 급	198,914	39,661	14,994 (7.5)	1,790 (4.5)	8,815 (4.4)	- (0.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11,187	10,708	1,561 (13.9)	1,545 (14.4)	- (0.0)	- (0.0)
교 통 실	스마트쉘터 조성 추진	2,100	2,100	1,542 (73.4)	1,542 (73.4)	387 (18.4)	387 (18.4)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이상) 정비	73,047	19,779	6,313 (8.6)	1,363 (6.8)	8,295 (11.3)	- (0.0)
재난안전실	장기미집행 도로 토 지 보 상 비	30,047	13,541	3,832 (12.7)	1,333 (9.8)	180 (0.5)	- (0.0)
물순환안전국	장 위 - 4 소 구 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662	2,443	3,831 (57.5)	1,260 (51.5)	- (0.0)	- (0.0)
물순환안전국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8,288	4,998	1,807 (21.8)	1,245 (24.9)	- (0.0)	- (0.0)
재난안전실	노 들 로 구 조 개 선	8,015	8,015	1,224 (15.2)	1,224 (15.2)	- (0.0)	- (0.0)
정원도시국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33,073	17,328	1,542 (4.6)	1,218 (7.0)	10,271 (31.0)	1,669 (9.6)
재난안전실	현 룡 로 확 장	2,408	2,408	1,127 (46.7)	1,127 (46.7)	- (0.0)	- (0.0)
여성가족실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2,015	1,985	1,100 (54.6)	1,100 (55.4)	738 (36.6)	738 (37.1)
교 통 실	통일로 중앙버스 전 용 차 로 조 성	1,152	1,152	1,052 (91.3)	1,052 (91.3)	- (-)	- (-)

※ 주1) 이월예산은 ① 예산현액 중 일부로서 ② '23회계연도로부터 '24회계연도로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건설개량이월 포함)된 재원을 의미하며,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됨

〈표 4-21〉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자원(이월예산^{주1)})을 집행한 결과 90% 이상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중 이월예산		이월예산에 대한 불용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월예산에 대한 재이월 (이월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3,940	3,940	3,940 (100.0)	3,940 (100.0)	- (-)	- (-)
재난안전실	성 암 로 도 로 확 장	500	500	500 (100.0)	500 (100.0)	- (-)	- (-)
균형발전본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222	210	211 (94.9)	210 (100.0)	- (-)	- (-)
복 지 실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33,333	200	201 (0.6)	200 (100.0)	- (-)	- (-)
균형발전본부	한강 곤돌라(잠실) 추진	150	150	150 (100.0)	150 (100.0)	- (-)	- (-)
미래한강본부	서 울 항 조 성	25,521	150	24,854 (97.3)	150 (100.0)	456 (1.7)	- (-)
디자인정책관	서 울 은 미 술 관 정 책 기 반 조 성	172	100	101 (58.7)	100 (100.0)	- (-)	- (-)
의회사무처	의 회 청 사 공 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3,422	7	84 (2.4)	7 (100.0)	466 (13.6)	-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시설 복 개 공 원 화	3,126	2,381	2,364 (75.6)	2,364 (99.2)	745 (23.8)	- (-)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신 설 및 개 선	6,339	3,752	3,803 (59.9)	3,683 (98.1)	1,135 (17.9)	- (-)
미래한강본부	한강변 노을 특화 공 간 조 성 사 업	700	700	684 (97.7)	684 (97.7)	- (-)	- (-)
시민건강국	보 라 매 병 원 안 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6,250	4,250	4,058 (64.9)	4,058 (95.4)	1,998 (31.9)	- (-)
교 통 실	통일로 중앙버스 전 용 차 로 조 성	1,152	1,152	1,052 (91.3)	1,052 (91.3)	- (-)	- (-)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1,745	884	801 (45.9)	801 (90.6)	861 (49.3)	- (-)

※ 주1) 이월예산은 ① 예산현액 중 일부로서 ② '23회계연도로부터 '24회계연도로 이월(명시이월·사고이월·건설개량이월 포함)된 재원을 의미하며,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됨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소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은 예산
현액 62억 5,000만원 중 64.9%, 40억 5,800만원이 불용되고, 예산현
액의 31.9%에 해당하는 19억 9,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 '24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사업비(854억원)가 '21년 7월, 투자
심사를 이행할 당시(459억원)보다 86.0%, 395억원 증가되어 법령에 따
라 ① 타당성 재조사와 ② 투자심사 재심사, ③ 공유재산심의 재심의와 ④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 '24회계연도 중 관련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소요예산(42억 5,000만원)
중 95.4%, 40억 5,800만원을 불용시키고, 당해연도 예산(20억원) 중
99.9%에 해당하는 19억 9,8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표 4-22〉 최근 3년간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세출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③/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2024 회계연도	합 계	6,250	192	3.0	1,998	-	4,058
	당해연도 예산	2,000	1	0.0	1,998	-	-
	이월예산	4,250	191	4.5	-	-	4,058
2023 회계연도	합 계	5,484	1,233	22.4	4,250	-	-
	당해연도 예산	4,255 주1)	4	0.1	4,250	-	-
	이월예산	1,229	1,229	99.9	-	-	-
2022 회계연도	합 계	2,355	1,126	47.8	1,229	-	-
	당해연도 예산	2,355	1,126	47.8	1,229	-	-
	이월예산	-	-	-	-	-	-

※ 주1)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공사비) 72억 4,500만원을 포함한 7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4년
도 제1회 추경예산('23. 7 의결)을 통해 시설비(공사비) △32억 4,5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임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동 사업은 '22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설계용역비(19억 4,500
만원)를 포함한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결산시점에는 설계용역이
'23년 3월 준공될 예정이라는 점을 사유로 12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지난 '23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공사비(72억 4,500만원)를 포함한 7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설계기간이 10개월 연장됨을 사유로 공사비 △32억 4,500만원을 감추경한 바, 결산시점에서는 당해연도 예산(42억 5,500만원) 중 99.8%, 4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이미 지난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률이 50% 미만인 동시에 예산이월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24회계연도에는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이 '24년 5월 준공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전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회계연도 중 공사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업부서가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예산(42억 5,000만원) 중 지출원인 행위가 되지 않은 40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물론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24. 6 의결)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20억원)에 대한 감액조정을 일체 요청하지 않아 당해연도 예산 중 99.9%가 이월되는 결과까지 자초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인 난지물재생센터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
- '24년 1월, 서울시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24년 2월, 고양시가 난지물

재생센터에서 발행하는 약취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전반을 공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반려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불용과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바,

-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의 경우, 예산현액(31억 2,600만원) 중 75.6%, 23억 6,400만원이 불용되고, 23.8%, 7억 4,5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이며,
-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의 경우, 예산현액(17억 4,500만원) 중 45.9%, 8억 100만원이 불용되고, 49.3%, 8억 6,1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23〉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및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의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집행률 ㉒/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합 계	3,126	16	0.5	745	-	2,364
	당해연도 예산	745	-	-	745	-	-
	이월예산	2,381	16	0.7	-	-	2,364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합 계	1,745	82	4.7	861	-	801
	당해연도 예산	861	-	-	861	-	-
	이월예산	884	82	9.3	-	-	801

※ 자료근거 : ① '24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등 재구성

- 서울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회계연도 중 지역주민 간담회(총 7회)를 개최하고 '24년 11월, 지역주민의 동의 및 고양시와의 합의를 통해 난지물재생센터의 현대화 추진방향을 전면 지하화 방식으로 하였으나,
-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에서 건설개량이월된 재원(7억 4,500만원)은 전면 지하화와는 상충되는 복개공원화를 추진하려던 것이며,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에서 건설개량이월된 재원(8억

6,100만원)은 센터시설 전반에 대한 지하화가 아닌 개별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하려던 것임

- 따라서 이월예산은 '이월된 내용대로만' 집행될 수 있기에 동 사업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은 다른 내용(시설 전반에 대한 지하화)으로 집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2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시점에는 불용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9억 4,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① '24년 2월, 유관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② '24년 11월, 현대화사업을 전면 지하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 동 사업의 경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 전반에 대해 민간투자사업과 전면 지하화 방식의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기에 앞서 개별적으로 소화조 효율개선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소요예산(39억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미래한강본부 소관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7억원)의 97.7%, 6억 8,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서 “사업 타당성 결여”로 보상비 지급 후 종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동 사업은 '23년 8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 조성된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여 당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후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 '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던 시점과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명시이월을 요청한 시점에는 예산 편성 및 이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결산시점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종결처리 하였다고 불용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서울시가 예산 확보시점과 결산시점에 있어 서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 밖에 없어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재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추경이나 전용·변경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감액조정할 수 없어 결국 불용처리하게 되는 바, 향후 서울시는 재원의 이월 여부 및 이월규모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24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 및 부서간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749건, 2조 4,919억 9,3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제출됨

〈표 4-24〉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749	2,491,993	△2,491,993
	일반회계	617	856,520	△856,520
	특별회계 주1)	132	1,635,472	△1,635,472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체 없음

- 2024회계연도 이체는 직전 회계년도(191건, 4,429억 9,100만원)보다 558건, 2조 490억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이체가 발생한 것은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주된 사유로,

-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돌봄·고독정책관, 저출생담당관 등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이 알기 쉽고 간명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을 개편하고, 실·국내 조직을 변경함에 따른 것임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이관하기 전까지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을 이관 받는 부서로서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5A〉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고
	감	증	감	증	
계	749	749	△2,491,993	2,491,993	
홍 보 기 획 관	9	9	△1,579	1,579	■ 홍보기획관 내 조직변경
여 성 가 족 실	93	55	△254,437	232,163	<감액> ■ 여성가족실→복지실 △12(1건) ■ 여성가족실→시민건강국 △207(7건) ■ 여성가족실→글로벌도시정책관 △32,843(39건) ■ 여성가족실 내 조직변경 △221,374(46건) <증액> ■ 복지실→여성가족실 10,788(9건) ■ 여성가족실 내 조직변경 221,374(46건)
글 로 벌 도시 정책 관	10	60	△5,796	43,825	<감액> ■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조직변경 △5,797(10건) <증액> ■ 여성가족실→글로벌도시정책관 32,843(39건) ■ 경제정책실→글로벌도시정책관 5,468(11건) ■ 글로벌도시정책관 내 조직변경 5,797(10건)
미 래 청 년 기 획 관	42	42	△94,908	94,908	■ 미래청년기획관 내 조직변경
기 획 조 정 실	13	8	△69,432	1,698	<감액> ■ 기획조정실→균형발전본부 △68,944(2건) ■ 기획조정실→미래공간기획관 △287(5건) ■ 기획조정실→도시공간본부 △199(6건) <증액> ■ 약자와의동행추진단→기획조정실 1,664(7건) ■ 행정국→기획조정실 34(1건)

〈표 4-25B〉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경 제 실	17	11	△36,020	33,489	<감액> ■ 경제실→글로벌도시정책관 △5,185(11건) ■ 경제실 내 조직변경 △30,835(6건) <증액> ■ 약자와의동행추진단→경제실 2,654(5건) ■ 경제실 내 조직변경 30,835(6건)
복 지 실	32	24	△92,687	81,911	<감액> ■ 여성가족실→복지실 △10,789(9건) ■ 복지실 내 조직변경 △81,899(23건) <증액> ■ 여성가족실→복지실 12(1건) ■ 복지실 내 조직변경 81,898(24건)
교 통 실	16	16	△4,876	4,876	■ 교통실 내 조직변경 (16건)
문 화 본 부	50	26	△35,573	10,893	<감액> ■ 문화본부→서울역사박물관 △1,693(10건) ■ 문화본부→시립미술관 △22,987(14건) ■ 문화본부 내 조직변경 △10,893(26건) <증액> ■ 문화본부 내 조직변경 10,893(26건)
시 민 건 강 국	152	160	△182,461	183,053	<감액> ■ 시민건강국 내 조직변경 △182,461(152건) <증액> ■ 시민건강국 내 조직변경 183,053(160건)
민 생 노 동 국	6	6	△127	127	○ 민생노동국 내 조직변경(6건)

〈표 4-25C〉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디 지 털 도 시 국	26	53	△12,991	19,754	<감액> ■ 디지털도시국 내 조직변경 △12,607(25건) ■ 디지털도시국→시민건강국 △384(1건) <증액> ■ 디지털도시국 내 조직변경 1,267(25건)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도시국 7,147(28건)
행 정 국	15	14	△7,894	7,860	<감액> ■ 행정국 내 조직변경 △7,860(14건) ■ 행정국→기획조정실 △34(1건) <증액> ■ 행정국 내 조직변경 7,860(14건)
민 생 사 법 경 찰 국	2	2	△39	39	○ 민생사법경찰국 내 조직변경
미 래 공 간 기 획 관	30	27	△7,346	5,515	<감액> ■ 미래공간기획관→도시공간본부 △1,418(7건) ■ 미래공간기획관→미래한강본부 △700(1건) ■ 미래공간기획관 내 조직변경 △5,227(22건) <증액> ■ 기획조정실→미래공간기획관 287(5건) ■ 미래공간기획관 내 조직변경 5,227(22건)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3	△382	386	<감액> ■ 건설기술정책관 내 조직변경 △382(1건) <증액> ■ 재난안전실→건설기술정책관 2(1건) ■ 주택실→건설기술정책관 2(1건) ■ 설기술정책관 내 조직변경 382(7건)

〈표 4-25D〉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재 난 안 전 실	36	35	△116,450	116,448	<감액> ■ 재난안전실→건설기술정책관 △2(1건) <증액> ■ 재난안전실 내 조직변경 116,448(35건)
주 택 실	74	73	△1,548	1,548	<감액> ■ 주택실→건설기술정책관 △21(1건) ■ 주택실 내 조직변경 △1,548(73건) <증액> ■ 주택실 내 조직변경 1,548(73건)
도 시 공 간 본 부	31	64	△3,371	7,974	<감액> ■ 도시공간본부 내 조직변경 △3,371(31건) <증액> ■ 기획조정실→도시공간본부 199(6건) ■ 미래공간기획관→도시공간본부 1,418(7건) ■ 균형발전본부→도시공간본부 2,985(20건) ■ 도시공간본부 내 조직변경 3,371(31건)
균 형 발 전 본 부	24	6	△4,833	70,793	<감액> ■ 균형발전본부→도시공간본부 △4,834(24건) <증액> ■ 기획조정실→균형발전본부 68,945(2건) ■ 균형발전본부 내 조직변경 1,848(4건)
미 래 한 강 본 부	-	1	-	700	<증액> ■ 미래공간기획관→미래한강본부 700 (1건)
서 울 역 사 박 물 관	-	10	-	1,693	<증액> ■ 문화본부→서울역사박물관 1,693(10건)
시 립 미 술 관	-	14	-	22,987	<증액> ■ 문화본부→서울시립미술관 22,987(14건)

〈표 4-25E〉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감 사 위 원 회	30	14	△789	313	<감액>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75(16건) ■ 감사위원회 내 조직변경 △313(14건) <증액> ■ 감사위원회 내 조직변경 313(14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6	-	475	<증액>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75(16건)
디 지 털 정 책 관	28	-	△7,147	-	<감액>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디지털도시국 △7,147(28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2	-	△4,318	-	<감액> ■ 약자와의동행추진단→경제실 △2,654(5건) ■ 약자와의동행추진단→기획조정실 △1,664(7건)

4.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법령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충칙을 통해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4년도 서울시 예산서중 「예산충칙」 제8조를 통해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회계연도 이후 '24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된 바 없음

5.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4회계연도의 경우, 전용 건수는 148건으로 예산현액 49조 1,049억 5,000만원중 0.03%, 153억 3,700만원을 전용한 바,
 - '23회계연도 대비 전용 건수는 △17건 감소하였고, 전용액도 △86억 9,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①일반회계의 경우, 129건, 107억 9,400만원을 전용하여 '23회계연도보다 전용 건수는 △9건 감소하였고, 전용액 또한 △12억 7,100만원 감소하였으며, ②기타특별회계는 17건, 36억 8,5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 대비 △1건, △1억 5,400만원 감소하고, ③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건, 8억 5,7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7건, △ 75억 8,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4-26〉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2023		2022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48	15,337	165	24,036	132	26,784
일반회계	129	10,794	138	12,067	90	16,574
특별회계	19	4,542	27	11,970	42	10,209
기타특별회계	17	3,685	18	3,531	36	8,130
공기업특별회계 ^{주1)}	2	857	9	8,439	6	2,078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예산 전용 기준에 따라 분류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은 법령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4-27〉 예산의 전용 규정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7), p.173

- 조직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30개 실·본부·국에서 148건을 전용한 것으로 복지실 33건(17억 3,800만원), 경제실 13건(18억 9,00만원), 시민건강국 10건(13억원), 주택실 10건(11억 7,200만원)을 전용한 바,
 - **복지실**은 '23회계연도(31건, 41억 3,100만원)에 이어 전용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복지 사무와 관련하여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경 내시 등 재정 상황 변화가 빈번하여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전용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전용함으로써 전용 사례 발생건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통실**의 경우 전용 건은 4건이나, 전용 규모는 24억 1,800만원으로

총 전용액(153억 3,700만원)중 가장 큰 비중(15.8%)을 차지하고 있는 바, 장애인 법인특장택시 증차 추진을 위하여 22억 700만원을 전용한 것 이외에도 착오로 인한 예산 과소편성 등의 사유로 2억원을 전용사례가 있어 향후 적정 재정 수요 산출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4-28〉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 ^{주1)}			전 용 건 수	전 용 액						
					전체 전용액 대비					
계			148	15,337	100.0					
	교	통	실	4	2,418	15.8				
	경	제	실	13	1,809	11.8				
	복	지	실	33	1,738	11.3				
	시	민	건	강	국	10	1,300	8.5		
	주		택	실	10	1,172	7.6			
	평	생	교	육	국	3	1,150	7.5		
	서	울	아	리	수	본	부	1	700	4.6
	문		화		본	부	9	662	4.3	
	기	후	환	경	본	부	9	619	4.0	
	디	지	털	도	시	국	2	554	3.6	
	관	광	체	육	국	5	500	3.3		
	재	난	안	전	실	3	397	2.6		
	미	래	청	년	기	획	관	2	380	2.5
	인	재	개	발	원	3	322	2.1		
	여	성	가	족	실	5	322	2.1		
	정	원	도	시	국	3	303	2.0		
	미	래	공	간	기	획	관	4	220	1.4
	물	순	환	안	전	국	1	157	1.0	
	민	생	노	동	국	3	136	0.9		
	행		정		국	2	110	0.7		
	미	래	한	강	본	부	4	101	0.7	
	기	획	조	정	실	5	63	0.4		
	시	립	미	술	관	4	46	0.3		
	서	울	역	사	박	물	관	3	43	0.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8	0.2				
	소 방 재 난 본 부			2	25	0.2				
	균 형 발 전 본 부			1	25	0.2				
	비 상 기 획 관			1	20	0.1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3	0.0				
	감 사 위 원 회			1	3	0.0				

주1) 전용액 규모순

1.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2. “구성비”는 전체 실·본부·국(서울아리수본부 포함)의 전용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정원도시국, 기획조정실, 경제실 등 6개 실·국은 법령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하도록 관련 기준이 '23년도 7월에 개정 되었음에도 광고비용에 대한 예산 과목을 여전히 사무관리비로 설정함에 따라 회계연도중 적정 예산과목으로 설정하지 않은 오류를 해소하고자 6건, 4억 7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4-29〉 광고 비용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실 국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기획조정실	②시민참여예산 운영	사 무 관 리 비	148	△9	-	'24. 5.16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9	
정원도시국	①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 무 관 리 비	489	△300	-	'24. 8. 6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70	-	300	
재난안전실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 무 관 리 비	374	△37	-	'24 8.13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37	
경 제 실	③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운영	사 무 관 리 비	1,352	△22	-	'24. 9.27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22	
교 통 실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 무 관 리 비	172	△11	-	'24.11.28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	-	11	
시 민 감 사 옴 부즈 만 위 원 회	④위원회 직무 역량 강화 및 홍보확대	사 무 관 리 비	82	△28	-	'24. 2.20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28	

- 정원도시국 소관 ①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은 정원도시 서울정

책을 홍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설정하도록 관련 훈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무관리비**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3억원을 '24회계연도중 광고비용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 내 전용(**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하였고,

- 기획조정실 소관 ②**시민참여예산 운영**중 **사무관리비**(9,900만원)와 경제실 소관 ③**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의 **사무관리비**(2,200만원) 등의 경우에도 광고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과목(**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을 신설하여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해당 훈령은 이미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내용임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전용을 통해 훈령 위반요인을 해소한 사례로서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으로 설정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4년도 8월 이후 전용 전인 경제실 소관 ③**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은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4. 6.25 의결)을 통해서도 경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경정 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립센터중 일부를 구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편성 시점보다 자치구의 재정 수요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민간위탁사업비**)을 신설하여 전용하는 등 3건에 대해 1억 3,6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0〉 예산 전용 현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송 인 용 일
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615	△30	-	'24.10.22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	-	30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585	△20	-	'24.11.11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시 설 비	30	-	20	
②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565	△86	-	'24.12.12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민 간 위 탁 사 업 비	-	-	86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소관 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4년 10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을 위해 세부사업내 통계목을 신설(민간위탁비)하여 3,000만원을 전용한 것이고,
- ②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은 '24년 12월, 지하철 이동 노동자 쉼터를 종각역과 사당역에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중 전용을 통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감액(△8,600만원)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중 예산과목(민간위탁사업비)을 신설하여 증액(8,600만원)한 것으로 확인됨
- 노동정책과 입장에서는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일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쪽보다는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법령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용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전 등 예측 가능한 사업 수요의 경우 사업예산 확보는 전용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하는 방법이 우선시 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의 조례는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 사무의 추가 등 중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동 노동자 쉼터를 민간위탁 사업에 추가하여 신규로 조성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실 소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으로

-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손해보험료 등이 **공공운영비**로 설정되어야 하나, **보험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이후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신설하여 5,5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4-31〉 예산 전용 현황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가 정 위 탁 아 동 상 해 보 험 료 지 원	보 험 금	55	△55	-	'24. 2.15	
〃	공 공 운 영 비	-	-	55		

- 동 사례는 예산편성 이후 전용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

산과목을 수정한 사례로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용제도가 집행기관이 스스로 유발한 예산 편성 오류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제실 소관 ①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는 디지털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 자 **행사운영비** 5억원 전액을 세부사업 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 디지털도시국 소관 ②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은 스마트도시 세미나 개최(2억 4,000만원)와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을 개최(2억 9,500만원) 하고자 **행사운영비** 5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회계연도 개시 이후 디지털재단의 서울스마트라이프 워크(SLW)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전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2〉 예산 전용 현황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단위 : 백만원)

실 국 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용 일
경 제 실	① 약 자 동 행 기술박람회 개최	행 사 운 영 비	500	△500	-	'24. 7.31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 탁 사 업 비	-	-	500	
디 지 털 도 시 국	② 스 마 트 도 시 민 · 관 협 력	행 사 운 영 비	535	△535	-	'24. 8.14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 탁 사 업 비	220	-	535	

- 다만, 경제실 소관 ①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전용일은 '24년도 7월 31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24. 6. 25. 의결)을 통하여 예산을 경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전용한 바,

- 사업수행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집행방식의 변화가 아닌 사업책임

소재 등 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을 동반하는 것으로 집행 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전용은 지양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 경우, 추진 근거인 관련 조례는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례의 경우,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사무를 공기관에 위탁(공공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전용 결정 사례로 판단됨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상설전시실 유지운영**은 당초 상설전시실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자 **사무관리비**(2,000만원)를 편성하였으나,

- '24년 3월,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 무인 정보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교체도 필요하게 되어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예산 전액(2,000만원)과 사무관리비중 상설전시 콘텐츠 보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3,000만원)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3〉 예산 전용 현황(상설전시실 유지운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감	증	전 승 인 일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사 무 관 리 비	307	△30	-	'24.10. 8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	30	

- 그러나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해 이용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법령은 '24년 3월 개정되어 동 전용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 동 법률의 시행일이 '25년 3월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전용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전용이라기 보다는 법 개정에 따라 장래 필요한 사업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에 해당되는 바,
 - 새로운 사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전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하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 적용되는 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실 소관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은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민간투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 평가 및 협상 업무를 전문기관(서울연구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내에서 전용한 것으로
- 동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 신청자 평가 및 협상 업무를 서울연구원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업무 위탁비' 7,000만원만 편성하고, '평가업무 위탁비'는 편성하지 않은 결과 회계연도 개시이후, '평가업무 위탁비' 1억 7,000만원과 협상업무 추가 소요분 3,000만원을 확보하고자 2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전용 사례는 예산 편성시 누락시킨 소요 예산과 착오로 인해 과소 편성

된 추가 소요분을 전용하여 확보한 사례로, 필수 소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로 적용되는 전용은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4〉 예산 전용 현황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지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우 이 신 설 경 전 철 재 정 지 원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40,633	△200	-	'24. 3. 6
〃	사 무 관 리 비	225	-	200	

6. 명시이월 관련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 관련 법령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 49조 1,049억 5,000만원 중 0.7%, 3,457억 7,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248억 400만원)도 포함된 것임

〈표 4-35〉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률
합 계		49,104,950	345,777 ^{주1)}	0.7
	일반회계	34,502,585	44,396	0.1
	기타특별회계	12,505,405	276,576	2.2
	공기업특별회계	2,096,959	24,804 ^{주2)}	1.1

주1) '24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248억 4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24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

※ 자료근거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는 달리 이월의 종류를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는 바

-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활용되는 명시이월과 비교하면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한다는 점과, 다음연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연도로 재이월(사고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근거, 이월대상, 이월에 대한 승인권자 등의 차이가 있어 상호 구별이 필요한 제도임

〈표 4-36〉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24~'22)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주1)}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2024	합계 ①+②+③		49,104,950	156	345,777 ^{주2)}	0.7
	명시이월	소계 ①+②	47,007,990	129	320,972 ^{주3)}	0.7
		일반회계 ①	34,502,585	43	44,396	0.1
		기타특별회계 ②	12,505,405	86	276,576	2.2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96,959	27	24,804	1.1
2023	합계 ①+②+③		51,490,048	137	829,975 ^{주2)}	1.6
	명시이월	소계 ①+②	49,487,336	115	797,073 ^{주3)}	1.6
		일반회계 ①	36,507,392	48	42,345	0.1
		기타특별회계 ②	12,979,944	67	754,727	5.8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02,711	22	32,902	1.6
2022	합계 ①+②+③		53,468,799	178	348,007 ^{주2)}	0.6
	명시이월	소계 ①+②	51,566,754	164	335,677 ^{주3)}	0.9
		일반회계 ①	38,319,642	75	81,713	0.2
		기타특별회계 ②	13,247,111	89	253,964	1.9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902,045	14	12,329	0.6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 -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등 재구성

○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년도부터 여러 차례 결산심사시 결산서에 ①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과 ②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이 상호 구분되어 작성되도록 행정안전부에 기준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왔으며 서울수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수 차례 기준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 지난 '25년 1월, 개정 통보된 기준에는 일부 표현만 수정되었을 뿐, 여전히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에 통합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산 총괄부서도 기준에 따라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55억 4,200만원)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92억 6,100만원)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3,209억 7,200만원으로

- 우리 시의회는 '25년도 예산심사시 서울시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사하여 '24회계연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세부사업, 129개 통계목에 대해 3,651억 6,600만원의 명시이월을 승인('24.12)하였으나,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부사업(96개)과 통계목(129개)은 동일하나 실제 명시이월된 규모는 당초 승인된 명시이월액보다 △441억 9,400만원 감소된 3,209억 7,200만원으로 확정하여 제출하였음

〈표 4-37〉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관련 의회 승인 및 실제 이월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의회 승인현황 (2025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결결과)			실제 이월현황 (결산결과)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 승인액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액
96	129	365,166	96	129	320,972

- 실제 '25년도로 명시이월된 규모(3,209억 7,200만원)가 시의회의 승인 규모(3,651억 6,600만원)보다 △12.1%, △441억 9,400만원 감소된 것은 예산안 제출시점('24.11. 1)에는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비가 회계연도 종료시점('24.12.31)까지 일부 집행된 결과로 사료되나,
-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명시이월액중 87.8%만이 실제 이월되었다는 것은 이월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일 수 있어 향후에는 이월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명시이월이 승인요청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명시이월 발생건수는 129건으로 직전회계연도(115건)보다 14건 증가되었으나, 발생규모는 직전회계연도(7,970억 7,300만원)보다 △4,761억 1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발생규모(893억 6,800만원)가 직전회계연도(5,906억 7,800만원)보다 △5,013억 1,000만원 감소한 것이 명시이월액 발생규모가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 사료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명시이월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세부사업중 ①**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②**청년 매입임대 사업**, ③**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이 807억 2,300만원으로 3개 사업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893억 6,800만원)의 90.3%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4회계연도 명시이월 총액(3,209억 7,200만원)의 25.1%를 차지하고 있음

〈표 4-38〉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이 월 액	이 월 률	이 월 액	이 월 률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35,935	89,368	2.9	5,689	0.2
	소 계		712,772	80,723 ^{주1)}	11.3	-	-
	① 일 반 (다 가 구) 매 입 임 대 주 택 사 업		360,956	54,742	15.1	-	-
	②청년 매입임대 사업		213,970	14,746	6.8	-	-
	③ 신 혼 부 부 매 입 임 대 사 업		137,845	11,235	8.1	-	-

주1) 3개 세부사업의 명시이월액(807억 2,300만원)은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액의 25.1%,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의 90.3%에 해당됨

※ 자료근거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소관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포함한 3개 세부사업은 이월사유를 “매입공고 시기 지연 및 추진일정 순연”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소요예산이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면 서민주거 불안정 및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출재원의 이월로만 판단하지 말고 사업 취지나 목적까지 미달성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향후에는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매입공고 및 추후 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월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된 ④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⑤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⑥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에 이른 바, 서울시내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와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중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액(3,209억 7,200만원)의 20.2%에 해당

되는 651억 5,1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표 4-39〉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이 월 액	이 월 률	이 월 액	이 월 률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85,456	115,203	5.5	186,450	8.9
	소 계		135,048	65,151 ^{주1)}	48.2	22,587	16.7
	④ 도 립 천 일 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62,124	47,948	77.2	8,130	13.1
	⑤ 광 화 문 일 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30,884	14,059	45.5	5,957	19.3
	⑥ 강 남 역 일 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42,040	3,144	7.5	8,499	20.2

주1) 3개 세부사업의 명시이월액(651억 5,100만원)은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액의 20.2%,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의 56.5%에 해당됨

※ 자료근거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아울러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나 사고이월과는 다르게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예산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명시이월 또한 이월예산의 한 종류로서 ①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감추경 또한 불가능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 ②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0〉 직전회계연도 대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증감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2024회계연도 ①			2023회계연도 ②			증감 ①-②	
	예산현액	건수 ^{주1)}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건수 ^{주1)}	이월액 (이월률)	건수	증감액 (증감률)
합 계 ① + ②	49,104,950	156	345,777 ^{주2)} (0.7)	51,490,048	137	829,975 ^{주2)} (1.6)	17	△484,188 (△58.3)
명 시 이 월 (계) ①	47,007,990	129	320,972 ^{주3)} (0.7)	49,487,336	115	797,073 ^{주3)} (1.6)	14	△476,101 (△59.7)
일 반 회 계	34,502,585	43	44,396 (0.1)	36,507,392	48	42,345 (0.1)	△5	2,051 (4.8)
기 타 특 별 회 계	12,505,405	86	276,576 (1.9)	12,979,944	67	754,727 (5.8)	19	△478,151 (△63.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192,501	5	15,541 (0.7)	2,057,950	6	37,369 (1.8)	△4	△21,828 (△58.4)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818,772	10	36,037 (2.0)	2,230,608	9	19,462 (0.8)	1	16,575 (85.1)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286,302	4	4,802 (1.7)	332,691	2	3,480 (1.0)	2	1,322 (37.9)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35,935	11	89,368 (2.9)	3,041,073	11	590,678 (19.4)	0	△501,310 (△84.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85,456	47	115,203 (5.5)	2,119,576	32	83,759 (3.9)	15	31,444 (37.5)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27,487	5	1,736 (0.8)	211,850	7	19,978 (9.4)	△2	△18,242 (△91.3)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594	-	- (0.0)	36,771	-	- (0.0)	-	-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790,363	-	- (0.0)	1,928,934	-	- (0.0)	-	- (-)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2,258	-	- (0.0)	37,339	-	- (0.0)	-	- (-)
소 방 특 별 회 계	1,026,732	4	13,886 (1.4)	983,148	-	- (0.0)	4	13,886 (순증)
건설개량이월 (계) ②	2,096,959	27	24,804 (1.1)	2,002,711	22	32,902 (1.6)	3	△8,098 (△24.6)
공기업특별회계	2,096,959	27	24,804 (1.1)	2,002,711	22	32,902 (1.6)	3	△8,098 (△24.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20,431	7	5,542 (0.5)	995,268	8	9,053 (0.9)	△3	△3,511 (△38.7)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1,076,527	20	19,261 (1.7)	1,007,442	14	23,848 (2.3)	6	△4,587 (△19.2)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등 재구성

(2)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 건설개량이월은 법령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중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중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
- '24회계연도에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2조 969억 5,900만원) 중 1.1%에 해당하는 248억 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29억 200만원)보다 △32.6%, △80억 9,8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회계별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는 7건으로 직전회계연도(8건)보다 △1건 감소하였고, 건설개량이월액은 55억 4,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90억 5,300만원)보다 △38.7%, △35억 1,100만원 감소되었으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는 20건으로 직전회계연도(14건)보다 6건 증가하였으나, 건설개량이월액은 직전회계연도(238억 4,800만원)보다 △19.2%, △45억 8,700만원 감소된 192억 6,1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1〉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발생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가)	건설개량이월		
			건수 (세목 기준)	건설개량이월액 (나)	건설개량이월률 (나)/(가)
2024 회계연도	계	2,096,959	27	24,804	1.1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20,431	7	5,542	0.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6,527	20	19,261	1.7
2023 회계연도	계	2,002,711	22	32,902	1.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8	8	9,053	0.9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7,442	14	23,848	2.3
2022 회계연도	계	1,902,045	14	12,329	0.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7,963	8	4,964	0.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081	6	7,365	0.7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사업별로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소관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은 급수 수요 발생 및 증가에 대응하여 상수도 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관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8,300만원중 9억 8,300만원(예산현액 대비 20.9%)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7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0%)이 불용된 것임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중 하나인 개화동 미급수지역 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허가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회계연도중 이행하지 못하여 소요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2〉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	4,683	2,948	983	983	-	-	751
시 설 비	4,683	2,948	983	983	-	-	75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과-3940 ('25. 3.31)

- 다만,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25년 5월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처리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월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불용처리”외에는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예산의 이월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규모에 한정하여 이월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다음 연도로 재원을 이월하여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당해연도 재원은 불용 처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 이후 다음 연도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세출재원의 합리적 배분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소관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은 노량진에 있는 수도자재센터 부지에 서부선 차량기지 및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유수지를 건립하고자 기존의 수도자재센터를 (舊)우면산가압장과 강북정수센터, 2개소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1억 5,500만원중 2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9,100만원은 이월된 것임

〈표 4-43〉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	4,155	234	3,891	3,844	47	-	75
시 설 비	4,100	234	3,838	3,791	47	-	73
감 리 비	53	-	53	53	-	-	-
시설부대비	2	-	-	-	-	-	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과-3940 ('25. 3.31)

- 사업부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서부선 차량기지 건설 및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에 연동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 외부적인 지연요인 뿐만 아니라
 -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중 하나인 (舊)우면산가압장의 시설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추가하고, 계약심사의 회를 보완하는 등의 사업 내부적인 지연요인으로 예산현액(41억 5,500만원)중 92.5%, 38억 4,400만원에 대해 건설개량이월한 것임
- 동 사업과 연동되는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터널은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우선시공분)는 준공되었으나, 사전절차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이 이행되지 않아 실제 건축공사는 '25년 5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부서는 지난 '23년 10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160억원으로 하여 투자심사는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4년도 말 수립한 이월방침에는 현재 총사업비 추정액을 당초(160억원)보다 105.3% 증가된 328억 5,10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은 총사업비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총사업비가 105.3%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 동 사업은 “투자심사 재심사”를 이행한 이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소요예산은 확보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한 동 사업의 재원은 건설개량이월을 하기보다는 '24회계연도에는 불용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이행한 이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표 4-44〉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사업현황 (서울아리수본부)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건설개량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서울아리수본부	수도자재 관리센터 이전	4,155	234	187	3,844	92.5
서울아리수본부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4,683	2,948	2,948	983	20.9
서울아리수본부	행정 장비 확충 및 청사 환경 개선	10,748	9,248	8,822	530	4.9
서울아리수본부	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1,495	1,128	834	178	11.9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10,796	8,809	4,631	5	0.04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①**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는 예산현액 31억 2,600만원중 23.8%, 7억 4,5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되고 75.6%, 23억 6,400만원은 불용되었음

〈표 4-45〉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	3,126	16	745	745	-	-	2,364
시 설 비	2,596	-	515	515	-	-	2,081
감 리 비	523	16	223	223	-	-	283
시설부대비	7	-	7	7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②**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는 예산현액 17억 4,500만원중 49.3%, 8억 6,1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되고 45.9%, 8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표 4-46〉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	1,745	82	861	861	-	-	801
시 설 비	1,305	82	511	511	-	-	711
감 리 비	390	-	300	300	-	-	90
시설부대비	50	-	50	5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③**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표 4-47〉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	300	-	300	300	-	-	-
시 설 비	300	-	300	30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의 2개 사업은 고양시에 위치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자 하수처리시설은 복개하여 공원화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지하화하려는 사업으로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1차 요청 및 재심사 모두 반려되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다음 회계연도('25회계연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재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물재생시설과)는 '24년 2월, 고양시로부터 “반려”를 통보받은 이후, '24년 8월까지 고양시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24년 11월, 주민 동의를 얻어 “복개공원화 사업”에서 “전면지하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양시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방향이 “복개공원화 사업”에서 “전면지하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추진하고자 한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를 포함한 3개 사업에 기 편성된 예산은 사업부서의 당초 계획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하고 의결을 통해 확정된 “복개공원화 사업”이 아니기에 난지물재생센터 “전면지하화”를 위한 용도로 지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시가 건설개량이월을 확정하여야 하는 지난 '25년 1월 10 일에는 해당 재원을 '25년도로 건설개량이월 하여도 당초('24회계연도)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은 사업과 실제 추진될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은 물론 관련 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기편성된 재원을 그대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 '24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 재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월한 것은 관련 제도를 편의적으로 적용한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음

〈표 4-48〉 '24회계연도 결산결과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계	460	-	460	460	-	-	-
시설비	460	-	460	46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은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2년 9월, 탄천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에 대한 사업의향서가 제출되어 시작된 바,
- 사업부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지난 '2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한 것이나 '25년 5월, 현재는 용역이 일시중지 중인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사업부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와 관

련된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건설개량이월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 '24회계연도 2월에 의뢰한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가 건설개량이월을 확정하는 '25년 1월 10일까지도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추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개량이월을 결정하기에 앞서 불용처리 후, 적격성 심사 결과 통보 이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49〉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사업현황 (물순환안전국)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건설개량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물순환안전국	영등포, 신길펌프장 주변 배수시설(관로) 개선	4,000	574	574	3,400	85.0
물순환안전국	양재2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	3,500	111	111	3,328	95.0
물순환안전국	양재동 일원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3,200	177	-	3,022	94.4
물순환안전국	대치역 사거리 일대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배수개선	3,200	295	-	2,904	90.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9,133	6,194	5,489	2,300	25.1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4,029	2,407	221	1,293	32.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1,745	82	82	861	49.3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3,126	16	16	745	23.8
물순환안전국	탄천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460	-	-	460	100.0
물순환안전국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6,163	4,775	3,479	440	7.1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주전기실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00	-	-	300	100.0
물순환안전국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실증단지 조성	1,774	1,523	67	205	11.5

7. 사고이월 관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49조 1,049억 5,000만원)의 1.2%, 5,745억 1,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8,605억 8,100만원)보다 △33.2%, △2,860억 6,800만원 감소된 바,

〈표 4-50〉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가)	사 고 이 월		
			건 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나)	사고이월률 (나)/(가)
2 0 2 4 회 계 연 도	계	49,104,950	646	574,513	1.2
	일반회계	34,502,585	287	145,139	0.4
	특별회계 ^{주1)}	14,602,365	359	429,374	2.9
2 0 2 3 회 계 연 도	계	51,490,048	706	860,581	1.6
	일반회계	36,507,392	306	213,859	0.5
	특별회계 ^{주1)}	14,982,655	400	646,721	4.3
2 0 2 2 회 계 연 도	계	47,759,128	709	690,473	1.4
	일반회계	33,834,846	296	183,674	0.5
	특별회계 ^{주1)}	13,924,281	413	506,799	3.6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34조 5,025억 8,500만원)의 0.4%, 1,451억 3,9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2,138억 5,900만원)보다 △32.1%, △687억 2,000만원 감소되었고,
-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14조 6,023억 6,500만원)의 2.9%, 4,293억 7,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6,467억 2,100만원)보다 △33.6%, △2,173억 4,7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24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액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액 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체 이월액의 발생규모는 9,202억 9,000만원으로 지난 '17회계연도 이후 이월액 발생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감소된 것임

〈표 4-51〉 예산이월 현황 ('24~'17)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 =(다)+(라)+(마)	이월률 (나)/(가)	명시이월액 ^{주1)} (다)		건설개량 이월액 (라)	이월률 (라)/(가)	사고이월액 (마)	
				이월률 (다)/(가)	이월률 (다)/(가)			이월률 (마)/(가)	이월률 (마)/(가)
2024	49,104,950	920,290	1.9	320,972	0.7	24,804	0.1	574,513	1.2
2023	51,490,048	1,690,556	3.2	797,073	1.5	32,902	0.1	860,581	1.6
2022	53,468,799	1,114,066	2.0	335,677	0.6	12,329	0.0	766,058	1.4
2021	47,759,128	1,161,603	2.4	445,055	0.9	26,074	0.1	690,473	1.4
2020	46,798,514	1,061,606	2.3	423,097	0.9	27,586	0.1	610,921	1.3
2019	40,094,847	1,574,468	3.9	783,534	2.0	69,486	0.2	721,447	1.8
2018	36,547,866	1,136,886	3.1	538,744	1.5	91,556	0.3	506,585	1.4
2017	32,916,151	766,173	2.3	237,104	0.7	- ^{주2)}	-	529,069	1.6

주1) 매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한 것임**

주2) 서울시는 '12회계연도부터 '17회계연도까지는 건설개량이월을 활용하지 않았으나, '18회계연도부터 다시 건설개량이월을 활용하였음

※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등 재구성

- 그러나 '24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49조 1,049억 5,0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51조 4,900만 4,800만원)보다 △2조 3,850억 9,8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이월규모가 감소된 것은 총 예산규모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축소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전 회계연도보다 이월규모가 축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이월예산은 ①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고, ②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사업 환경에 변화가 있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할 수 없으며 ③현액으로 관리되어 이·전용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미리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여전히 이월규모가 1조원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집행상황 및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다르게 의회의 사전승인(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편성된 예산을 회계연도내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 규모가 축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조직별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서울시의 전체 실·본부·국(40개) 중 사고이월액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4개 실·본부·국인 ①물순환안전국(1,500억 7,700만원), ②정원도시국(858억 3,500만원), ③재난안전실(808억 2,800만원), ④도시기반시설본부(598억 6,400만원)에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745억 1,300만원)의 65.5%에 해당하는 3,766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2A〉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건수(통계목 기준) 및 사고이월사유^{주1)}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계)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합의 자연	사전절차 자연	유관사업 자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재 구매자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합 계	646	574,513	100.0	70,489 (12.2)	11,246 (1.9)	140,110 (24.3)	14,031 (2.4)	20,341 (3.5)	4,817 (0.8)	240,960 (41.9)	72,516 (12.6)
물순환안전국	144	150,077	26.1	-	-	30,740	666	3,138	3,453	83,066	29,012
정 원 도 시 국	67	85,835	14.9	-	10,287	63,975	104	-	150	10,323	995
재 난 안 전 실	88	80,828	14.1	30,436	180	18,831	-	6,336	-	23,915	1,146
도시·건축·시설본부	8	59,864	10.4	18,955	-	-	-	-	-	40,909	-
교 통 실	22	29,141	5.1	-	-	12,791	2,792	544	1,213	523	11,276
문 화 본 부	38	26,236	4.6	-	778	912	-	-	-	24,545	-
서울아리수본부	21	23,186	4.0	7,840	-	3,726	2,855	421	-	47	8,295
기후환경본부	14	22,095	3.8	-	-	2,399	-	-	-	488	19,207
미래한강본부	34	18,871	3.3	1,736	-	-	-	-	-	15,419	1,715
균형발전본부	21	18,599	3.2	2,168	-	-	-	-	-	16,400	31
관 광 체 육 국	9	8,805	1.5	-	-	345	-	7,501	-	905	53
경 제 실	13	7,702	1.3	5,127	-	1,009	-	-	-	1,565	-
주 택 실	34	6,176	1.1	-	-	-	-	-	-	6,176	-
도시공간본부	25	5,378	0.9	-	-	-	-	-	-	5,378	-
미래공간기획관	25	4,777	0.8	-	-	-	-	-	-	4,777	-
복 지 실	12	4,694	0.8	-	-	4,084	382	-	-	227	-
시 민 건 강 국	17	3,879	0.7	-	-	424	2,231	631	-	201	398
민 생 노 동 국	7	2,938	0.5	3,347	-	-	335	89	-	85	21
디자인정책관	8	2,938	0.5	720	-	-	827	-	-	1,390	-
재 무 국	3	2,477	0.4	-	-	-	-	-	-	2,477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나,

-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8개 실·본부·국(대변인,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건설기술정책관, 서울역사박물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은 작성이 생략된 것임

주2) 구성비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745억 1,300만원) 중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이나, 사고이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실·본부·국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표 4-52B〉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건수(통계목 기준) 및 사고이월사유^{주1)}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사유별 사고이월액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합의 자연	사전절차 자연	유관사업 자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재 구매자연	용역 준공한 미도래	기타
합 계	646	574,513	100.0	70,489 (12.2)	11,246 (1.9)	140,110 (24.3)	14,031 (2.4)	20,341 (3.5)	4,817 (0.8)	240,960 (41.9)	72,516 (12.6)
재 무 국	3	2,477	0.4	-	-	-	-	-	-	2,477	-
시 립 미 술 관	6	2,204	0.4	-	-	-	2,204	-	-	-	-
행 정 국	5	2,102	0.4	-	-	-	-	1,678	-	423	-
의 회 사 무 처	4	1,083	0.2	-	-	-	-	-	-	1,083	-
미래청년기획관	3	1,083	0.2	-	-	-	901	-	-	181	-
여 성 가 족 실	2	738	0.1	-	-	-	730	-	-	8	-
홍 보 기 획 관	2	727	0.1	-	-	727	-	-	-	-	-
자치경찰위원회	2	435	0.1	-	-	72	-	-	-	-	363
소방재난본부	6	378	0.1	157	-	-	-	-	-	221	-
평 생 교 육 국	3	110	0.019	-	-	-	-	-	-	110	-
디지털도시국	1	86	0.014	-	-	-	-	-	-	86	-
기 획 조 정 실	1	85	0.014	-	-	85	-	-	-	-	-
인 재 개 발 원	1	19	0.003	-	-	-	-	-	-	19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나,

-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8개 실·본부·국(대변인,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건설기술정책관, 서울역사박물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은 작성이 생략된 것임

주2) 구성비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5,745억 1,300만원) 중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이나, 사고이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실·본부·국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 ①물순환안전국의 경우, '24회계연도 결산결과 회계연도중 추진한 473개 세부사업중 23.6%, 112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144건, 1,500억 7,7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6.1%)이 사고이월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양재천(강남구) 수변활력거점 조성(예산현액 34억원의 64.7%, 22억원),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예산현액 20억원의 99.2%, 19억 8,500만원) 등 28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420억 4,000만원의 20.2%, 84억 9,900만원),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621억 2,400만원의 13.0%, 81억 3,000만원),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308억 8,400만원의 19.2%, 59억 5,700만원)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1개 사업,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예산현액 7억 900만원의 9.8%, 7,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예산현액 285억 8,400만원의 35.8%, 102억 3,800만원), **차집관로 보수공사**(예산현액 126억 4,100만원의 32.4%, 41억원) 등 70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②정원도시국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회계연도중 추진한 285개 세부사업중 21.4%, 61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67건, 858억 3,5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4.9%)이 사고이월 되었음
- **일반회계**로 편성된 **근교산 등산로 정비**(예산현액 254억 2,400만원의 22.3%, 56억 6,400만원),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예산현액 38억 3,800만원의 86.2%, 33억 700만원) 등 40개의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 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예산현액 415억 7,800만원의 24.7%, 102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예산현액 792억 6,600만원의 12.6%, 99억 9,400만원) 19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예산현액 15억 600만원의 15.9%, 2억 3,900만원)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예산현액 45억원의 47.3%, 21억 2,900만원) 2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③재난안전실은 '24회계연도에 추진한 313개 세부사업중 22.3%, 70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88건, 808억 2,8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4.1%)이 사고이월된 바,

- 일반회계에서는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예산현액 62억 3,900만원의 23.5%, 14억 6,6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예산현액 67억 7,500만원의 13.0%, 8억 7,800만원)등 9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 되었고,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관리계정)**(예산현액 80억원의 89.8%, 71억 8,700만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예산현액 135억 1,700만원의 39.7%, 53억 6,500만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예산현액 9억 8,700만원의 81.1%, 8억원) 3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예산현액 2억 3,000만원의 18.6%, 4,200만원)에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예산현액 176억 3,900만원의 39.7%, 70억 100만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예산현액 258억 3,200만원의 24.8%, 64억 700만원) 등 57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 되었음

- ④도시기반시설본부는 '24회계연도에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산결과 6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8건, 598억 6,4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0.4%)이 사고이월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예산현액 1,598억 3,400만원의 22.2%, 355억 1,400만원)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현액 1,436억 2,500만원의 13.3%, 191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예산현액 725억 7,300만원의 0.4%, 3억 1,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53〉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현황(세부사업수,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의 비율)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명	전체 세부사업수 ①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수 ②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 비율 ②/①	전체 예산현액 ③	사고이월액 ④	사고이월률 ^{주1)} ④/③
합계	4,334	524	12.1	49,104,950	574,513	1.6
물 순환 안전국	473	112	23.6	1,429,343	150,077	10.4
정원도시국	285	61	21.4	676,782	85,835	12.6
재난안전실	313	70	22.3	1,316,573	80,828	6.1
도시기반시설본부	26	6	23.0	1,531,969	59,864	3.9
교통실	188	18	9.5	3,709,001	29,141	0.7
문화본부	289	27	9.3	698,071	26,236	3.7
서울아리수본부	85	17	20.0	1,020,431	23,186	2.2
기후환경본부	132	12	9.0	699,577	22,095	3.1
미래한강본부	76	25	32.8	181,957	18,871	10.3
균형발전본부	74	17	22.9	1,542,368	18,599	1.2
관광체육국	93	7	7.5	312,210	8,805	2.8
경제실	156	12	7.6	685,521	7,702	1.1
주택실	180	29	16.1	4,275,302	6,176	0.1
도시공간본부	97	24	24.7	33,733	5,378	15.9
미래공간기획관	51	22	43.1	28,841	4,777	16.5
복지실	234	8	3.4	10,507,433	4,694	0.044
시민건강국	339	12	3.5	731,818	3,879	0.5
민생노동국	153	6	3.9	271,361	2,938	1.0
디자인정책관	55	8	14.5	66,076	2,938	4.4
재무국	42	2	4.7	3,213,791	2,477	0.077
시립미술관	29	4	13.7	40,258	2,204	5.4
행정국	89	5	4.4	4,646,520	2,102	0.045
의회사무처	48	4	8.3	38,371	1,083	0.2
미래청년기획관	34	2	5.8	109,352	1,083	0.9
여성가족실	207	1	0.4	3,323,624	738	0.022
홍보기획관	35	1	2.8	78,444	727	0.9
자치경찰위원회	45	2	4.4	27,733	435	1.5
소방재난본부	87	5	5.7	2,004,458	378	0.018
평생교육국	76	3	3.9	4,443,511	110	0.002
디지털도시국	76	1	1.3	169,961	86	0.050
기획조정실	70	1	1.4	1,181,380	85	0.007
인재개발원	19	1	5.2	19,721	19	0.096
대변인	9	-	-	1,826	-	-
글로벌도시정책관	40	-	-	48,888	-	-
비상기획관	21	-	-	8,009	-	-
민생사법경찰단	5	-	-	1,618	-	-
건설기술정책관	28	-	-	7,316	-	-
서울역사박물관	38	-	-	18,943	-	-
감사위원회	17	-	-	1,698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	-	-	1,141	-	-

※ 주1) 사고이월률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 것이나,

- 예산현액에 비해 사고이월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취하면 “0.0”으로 기재되는 실·본부·국에 한정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 아울러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를 검토하면, ①용역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2,409억 6,0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41.9%), ②사전절차지연을 사유로 1,401억 1,0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4.3%), ③기타 사유로 725억 1,6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2.6%), ④공사추진중 장애발생 사유로 704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4〉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4~'22)^{주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주2)}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주2)}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2024	574,513	70,489	11,246	140,110	14,031	20,341	4,817	240,960	72,516
	(100.0)	(12.2)	(1.9)	(24.3)	(2.4)	(3.5)	(0.8)	(41.9)	(12.6)
2023	860,581	75,800	122,142	146,464	30,055	81,491	18,760	279,654	106,211
	(100.0)	(8.8)	(14.1)	(17.0)	(3.4)	(9.4)	(2.1)	(32.4)	(12.3)
2022	766,058	184,211	113,933	177,425	7,586	22,972	25,590	133,228	101,110
	(100.0)	(24.0)	(14.8)	(23.1)	(0.9)	(2.9)	(3.3)	(17.3)	(13.1)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8584 ('25. 4.11)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2,409억 6,0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2,796억 5,400만원)보다 △386억 9,400만원 감소되었으나,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41.9%)은 직전회계연도(32.4%)보다 9.5%p 증가된 것임

〈표 4-55A〉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개발사업본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시설비	154,217	34,325	22.3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 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시설비	39,651	12,673	32.0
문화본부	권역별시립도서관 조성·운영	시설비	24,606	6,737	27.4
재난안전실	노후포장도로 정비	시설비	98,032	6,344	6.5
문화본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시설비	23,505	5,257	22.4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	74,570	4,243	5.7
재난안전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시설비	11,187	3,548	31.7
문화본부	서울미술관 건립	시설비	15,625	3,394	21.7
미래한강본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시설비	19,686	3,348	17.0
정원도시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	17,969	3,326	18.5
재난안전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10,429	3,081	29.5
재난안전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비	12,615	3,072	24.4
물순환안전국	신수-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814	3,032	52.1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C S O S 간이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3,000	3,000	100.0
물순환안전국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7,572	2,971	39.2
물순환안전국	신월 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4,600	2,904	63.1

※ 주1) 통계목 기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4-55B〉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시 흥 고 지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853	2,833	58.4
물순환안전국	상 계 1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3,791	2,735	72.1
물순환안전국	하 수 도 관 리 전 산 시 스템 유 지 보 수 및 개 선	전산개발비	11,401	2,390	21.0
물순환안전국	용 산 - 2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3,792	2,273	59.9

※ 주1) 통계목 기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 문화본부 소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의 경우에는 시설비 67억 3,700만원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①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설계용역, ②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서대문) 공사용역, ③서울시립도서관(송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의 준공기한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 하는 것은 사고이월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22회계연도 및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계약체결시점부터 회계연도 중 준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계약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거쳐 승인되는 절차인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 여전히 회계연도 중 집행하지 못할 용역비까지 편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1,401억 1,0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464억 6,400만원)보다 △63억 5,400만원 감소된 것이나, 서울시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24.3%)은 직전회계연도(17.0%)보다 7.3%p 증가된 것임

〈표 4-56A〉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 통 실	9 호 선 전 동 차 증 차 지 원	시 설 비	11,283	11,269	99.9
정원도시국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공 원 보 상 (시 공 원)	시 설 비	79,266	9,994	12.6
정원도시국	생 활 밀 착 형 공 원 조 성	시 설 비	32,962	8,971	27.2
정원도시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 설 비	37,430	8,769	23.4
물순환안전국	강 남 역 일 대 빗 물 배 수 시 설 설 치	시 설 비	39,810	6,370	16.0
재난안전실	제 2 자 유 로 종 점 부 (난 지 도 길) 입 체 화	시 설 비	6,600	6,328	95.9
물순환안전국	도 림 천 일 대 빗 물 배 수 시 설 설 치	시 설 비	59,974	6,079	10.1
정원도시국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시 설 비	25,169	5,665	22.5
물순환안전국	광 화 문 일 대 빗 물 배 수 시 설 설 치	시 설 비	29,204	4,377	15.0
정원도시국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시 설 비	9,350	3,511	37.6
물순환안전국	도 림 2 - 6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3,548	3,488	98.3

※ 주1) 통계목 기준, “사전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4-56B〉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가 락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895	3,403	69.5
복 지 실	반 다 비 체 육 센 터 건 립	시 설 비	3,345	3,109	92.9
재난안전실	가 공 배 전 선 지 중 화	시 설 비	25,712	3,084	12.0
정원도시국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 림 휴 양 시 설 조 성	시 설 비	3,438	2,907	84.6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 템 공 급 체 계 구 축	시 설 비	26,760	2,593	9.7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시 설 비	4,029	2,186	54.3
물순환안전국	강 남 역 일 대 빗 물 배 수 시 설 설 치	감 리 비	2,130	2,130	100.0
정원도시국	공 원 내 C C T V 개 선	시 설 비	12,643	2,130	16.8
정원도시국	도 시 바 람 길 숲 조 성	시 설 비	4,500	2,130	47.3

※ 주1) 통계목 기준, “사전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 정원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의 경우에는 시설비 99억 9,400만원을 사전절차 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한남근린공원 보상과 관련된 소송 결과가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아 재원을 이월한 것으로 검토됨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내부절차를 이행하거나,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인허가·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서 관련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관련 절차의 이행기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다음에는 당초 전망보다 절차를 이행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기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로써

-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요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를 추진일정 및 예산규모에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야 사업부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뒤늦게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회계연도중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회계연도내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2.2%, 704억 8,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58억만원)보다 △53억 1,100만원 감소된 것임
- 재난안전실 소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의 경우에는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을 사유로 시설비 70억 1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남부순환로 본선구간 평탄화 작업중 연약지반 발생에 따른 안정화 작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며, 지장물(상수도) 저축에 따라 공정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공사추진중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제한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예산액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부서는 사고이월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산집행을 노력하고자 감액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어 향후에는 유사사례 발생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57〉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개발사업본부	위 레 선 도 시 철 도 건 설	시 설 비	139,045	18,955	13.6
물순환안전국	서 운 로 일 대 저 지 고 지 수 로 정 비	시 설 비	27,738	10,143	36.6
재난안전실	남 부 순 환 로 (개 봉 사 거 리) 평 탄 화	시 설 비	16,700	7,001	41.9
재난안전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 환경 공 간 조 성	시 설 비	13,061	5,934	45.4
재난안전실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시 설 비	23,308	5,751	24.7
재난안전실	잠 실 대 교 남 단 주 변 연 결 체 계 개 선	시 설 비	12,702	5,244	41.3
경 제 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시 설 비	12,223	5,127	41.9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시 설 비	9,246	4,865	52.6
물순환안전국	센 터 내 토 목 및 건 축 시 설 물 보 수 공 사	시 설 비	11,984	3,623	30.2
민생노동국	양 곡 도 매 시 장 이 전	시 설 비	5,759	2,605	45.2
균형발전본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시 설 비	10,811	2,168	20.1
재난안전실	성 산 대 교 성 능 개 선	시 설 비	12,994	2,147	16.5
물순환안전국	남 가 좌 3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7,320	1,628	22.2
재난안전실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시 설 비	6,240	1,466	23.5
서울아리수본부	배 수 지 내 부 방 식	공공운영비	15,646	1,063	6.8
미래한강본부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	시 설 비	1,570	935	59.6
서울아리수본부	배 수 지 , 아 리 수 올 림 터 유 지 보 수	공공운영비	8,696	900	10.3
물순환안전국	방 화 1 - 8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3,542	875	24.7
물순환안전국	미 아 - 8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2,026	870	42.9
재난안전실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시 설 비	7,497	860	11.5

※ 주1) 통계목 기준,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기타로 분류된 사고이월액(725억 1,6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062억 1,100만원)보다 △336억 9,500만원 감소된 것이나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2.6%)은 직전회계연도(12.3%)보다 0.3%p 증가된 것임

- 교통실 소관 **저상버스 도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2억 7,600만원을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24년 6월, 환경부가 물량조정을 하여 취소되었으나, '24년 11월, 환경부와의 재협의를 통해 다시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차량 출고 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8〉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 통 실	저 상 버 스 도 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83,018	10,276	12.4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보 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93,526	8,521	4.4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 0 0 m m 이 상) 정 비	시 설 비	71,611	8,296	11.6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5,585	4,700	30.2
물순환안전국	차 집 관 로 성 능 개 선	시 설 비	8,262	3,568	43.2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 치 사 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1,232	3,336	29.7
기후환경본부	수 소 차 보 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8,283	2,600	14.2

※ 주1) 통계목 기준, “기타” 사유로 10억원 이상 사고이월된 세부사업임

(1) 주요 사고이월 발생사례 검토

- 경제실 창조산업과 소관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중구에 영상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2억 8,700만원의 39.7%, 52억 7,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59〉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3,287	8,013	5,273	5,273	-	-	0 ^{주1)}
시 설 비	12,223	7,096	5,127	5,127	-	-	-
감 리 비	1,032	885	146	146	-	-	-
시설부대비	32	31	-	-	-	-	0 ^{주1)}

주1) 시설부대비 불용액은 360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3836 ('25. 3.31)

- 사업부서는 '24년도 본예산(안)으로 161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으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 영화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유지비(6억 6,000만원)를 제외한 전액이 삭감조정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비심사결과대로 의결하였음
- '24년 5월, 관련 안건을 다시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24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본예산안 제출시 편성요청한 규모보다 △106억 6,900만원 감소된 5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추경예산 제출시점이 '24년 5월인 것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을 추계하여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60〉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재원현황

(단위 : 백만원)

통계목	본 예 산 안 (A)	본 예 산 심사조정액 (B)	본 예 산 서 (C=A+B)	추 경 예 산 증 액 안 (D)	추경예산서 (E=C+D)	예산현액 ^{주1)}
계	16,127	△15,467	660	5,558	6,218	13,287
사무관리비	83	△83	-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	△5	-	-	-	-
전산개발비	314	△314	-	-	-	-
시 설 비	14,955	△14,431	523	5,259	5,782	12,223
감 리 비	623	△485	137	296	433	1,032
시설부대비	6	△6	-	2	2	32
자 산 및 물품취득비	141	△141	-	-	-	-

주1) 예산현액에는 추경예산(최종예산)뿐 아니라 전년도이월액, 예산변경 등이 반영된 금액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3836 ('25. 3.31)

-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132억 8,700만원)의 39.7%, 52억 7,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는 추경을 통해 편성한 62억 1,800만원의 84.8%에 해당되는 규모로 검토됨

- 이는 사업부서가 전년도이월액 등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 재원이 있어 당해연도 예산액은 회계연도내 전액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원확보를 우선시하여 대규모 사고이월을 스스로 유발시킨 사례로 사료됨

- 특히, 사업부서의 사고이월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각종 공사의 계약일이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시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①12월이 동절기임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②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절대적인 공사가능일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사의 실제 가능상태와 무관하게 이월을 통해 예산확보를 위해 회계연도말 계약(지출원인행위)을 진행한 사례로 오해될 수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례의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후 차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에도 행정적인 편의를 우선시하여 사고이월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당초 '20년에 착공하여 '21년 8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시멘트 수급, 인접 건물 안정성 문제 등으로 현재는 '25년 6월 30일로 준공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됨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소관 **전기차 보급**은 예산현액 1,989억 1,400만원 중 4.3%, 86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 **전기차 보급**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마다 전기차의 출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을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 발생 사업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바,

〈표 4-61〉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세출결산 결과 ('24~'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보조금반납금 비율)	불용액 (불용률)
			계 (이월률)	명시이월 (명시이월률)	사고이월 (사고이월률)		
2024	198,914	131,520 (66.1)	8,815 (4.4)	202 (0.1)	8,612 ^{주1)} (4.3)	43,583 (21.9)	14,994 (7.5)
2023	282,047	159,826 (56.6)	39,661 (14.0)	- (0.0)	39,661 ^{주2)} (14.0)	59,620 (21.1)	22,938 (8.1)
2022	307,870	249,964 (81.1)	36,475 (11.8)	- (0.0)	36,475 ^{주3)} (11.8)	11,048 (3.5)	10,381 (3.3)
2021	355,543	277,587 (78.0)	53,200 (14.9)	- (0.0)	53,200 ^{주4)} (14.9)	24,047 (6.7)	707 (0.1)
2020	246,727	172,166 (69.7)	70,528 (28.5)	50,400 (20.4)	20,128 ^{주5)} (8.1)	2,652 (1.0)	1,380 (0.5)

주1) '24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2개월)이 미도래하는 등의 사유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5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연구용역 준공이 늦어져서 연구용역비 9,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11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임

주2) '23회계연도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96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임

주3) '22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3개월)이 미도래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0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차량생산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임

주4) '21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3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2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임

주5) '20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2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1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것임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심사마다 동일 사유(차량출고기한 미도래)로 수백억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월액 발생 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사업부서는 여전히 차량 출고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동 사업의 재원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①승용(승용, 택시)·화물·이륜의 경우, 4/4분기에 일부 모델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인 및 보조금 추가지원 등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이 증가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차량 출고기한까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4/4분기 신청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8억 2,300만원(총 639대분)이 사고이월 되었고,
- ②버스(시내/마을, 통학, 통근)의 경우, 제조사의 납품 또는 충전기 설치가 지연된 것이 차량출고 지연으로 연결되어 56억 9,600만원(총 59대분)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출함

〈표 4-62〉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내역 (전기차 보급)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이월 물량	사고이월액		
			계	국비	시비
합계		698	8,520	6,013	2,507
버스	소계	59	5,696	3,992	1,704
	시내버스·마을버스	56	5,583	3,908	1,675
	어린이통학버스	3	112	83	29
승용	소계	208	1,274	1,038	235
	승용	171	896	735	161
	택시	37	378	303	74
화물		53	775	590	184
이륜		378	774	391	38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14561 ('24.12.18) “2024년 전기차 보급 사업 사고이월 계획”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338억 4,600만원중 13.9%, 47억원이 사고이월되었음

〈표 4-63〉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33,846	27,201	4,700	4,700	-	-	1,944
기간제근로자 등 보 수	52	48	-	-	-	-	3
사 무 관 리 비	24	23	-	-	-	-	0.4 ^{주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65	3,065	-	-	-	-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체 재 원)	13,644	8,944	4,700	4,700	-	-	1,94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120	15,120	-	-	-	-	-

주1)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45만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5702 ('25. 4. 8)

- 동 사업은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전력량 증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사전절차 및 자치구의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절차는 연말 자체검사 및 사용 전 점검등으로 지연되고 동절기 굴착심의, 행위허가 등 자치구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지체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지난 '24년 8월,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24년 9월,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완속충전기를 이중 안전장치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 교체할 것으로 계획하여 서울시도 해당 충전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어 지난 '24년 11월, 생산 및 출고됨에 따라 12월부터 현장 설치가 진행되어 사업부서가 회

계연도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외부요인에 따른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대비하고자 추진되는 이른 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3개 사업에서 모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별로 사고이월 규모를 검토하면 ①**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84억 9,900만원(예산현액 420억 4,000만원의 20.2%), ②**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81억 3,000만원(예산현액 621억 2,400만원의 13.0%), ③**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59억 5,700만원(예산현액 308억 8,400만원중 19.2%)이 사고이월된 것인 바,

- 동 사업은 당초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고, ’23년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24년 2월, 총사업비 재협의를 통해 재원분담을 확정하고, ’25년 현재, 본 공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들과 관련하여 추진 첫 해인 ’23회계연도에는 편성된 예산액(338억 6,400만원)중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301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1,350억 4,800만원중 12.1%, 163억 8,500만원만을 집행하고, 877억 3,800만원(예산현액의 64.9%)은 ’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9억 2,400만원(예산현액의 22.8%)은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표 4-64〉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결산현황 ('24~'23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구분	'23회계연도			'24회계연도			
	예산현액 ^{주1)}	지출액	이월액 ^{주2)}	예산현액 ^{주1)}	지출액	이월액 ^{주2)}	불용액
계	33,864 (33,864)	-	30,124	135,048 (100,924)	16,385	87,738	30,924
강 남 역	13,740 (13,740)	-	10,000	42,040 (32,040)	6,355	11,644 ^{주3)}	24,040
도 림 천	12,124 (12,124)	-	12,124	62,124 (50,000)	6,045	56,078 ^{주4)}	-
광 화 문	8,000 (8,000)	-	8,000	30,884 (22,884)	3,983	20,016 ^{주5)}	6,884

주1) 괄호안의 수치는 당해연도 예산액임 ('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일치함)

주2)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임

주3) 명시이월액 31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 84억 9,900만원(재이월액 36억 4,500만원)

주4) 명시이월액 479억 4,800만원, 사고이월액 81억 3,000만원(재이월액 60억 7,800만원)

주5) 명시이월액 140억 5,900만원, 사고이월액 59억 5,700만원(재이월액 40억 200만원)

- 사업부서는 동 사업들을 '2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나, 사업추진중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당초 계획보다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서 추가 민원발생,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소관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은 공백없는 청년공간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를 성북구 내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4회계연도 내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 '24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예산현액 15억 5,000만원중 74.7%, 11억 5,400만원은 이월되고, 25.0%, 3억 8,7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4-65〉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x775) 1,550	(x193) 387	(x577) 1,154	(x115) 231	(x461) 923	0 ^{주1)}	8
시 설 비	(x733) 1,466	(x163) 327	(x565) 1,130	(x114) 228	(x450) 901	-	8
감 리 비	(x12) 24	-	(x12) 24	(x1) 2	(x10) 21	0 ^{주1)}	0 ^{주2)}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x29) 60	(x29) 60	-	-	-	-	-

주1) 보조금반납금은 500원임

주2) 감리비 불용액은 500원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3559 ('25. 4. 8)

- 공사를 시행하는 성북구가 수립한 방침에 따르면 공사 발주시점인 '23년 11월에 이미 동 공사가 착공부터 14개월(감리는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공사 준공시기를 '25년 2월로 기재하여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나,

- 청년사업담당관(舊 미래청년기획단)에서 '24년도 예산안 심사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동 사업 관련 공사의 준공시점을 '24년 11월로 적시하고, 감리 및 물품구입을 '2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작성한 바, 재원확보를 우선하여 의도적으로 시의회에 거짓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4-66〉 2024년도 추진일정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50	
착공	'24.01~'24.06	744	신축공사 추진 및 선금 지급
준공	'24.06~'24.11	744	신축공사 준공 및 준공금 지급
감리 및 물품구입	'24.09~'24.12	62	감리용역 준공, 집기 및 물품구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136

- '24년도 예산안 제출시점('23년 11월 1일)에는 회계연도중 용역이 준공 될 것으로 예측하여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편성요청한 것이라 하여도, 이후 성북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서 등을 통해 준공시기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추경예산을 통해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규모로 감액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 재원에는 국고보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중 예산을 조정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 동 이월사례는 이월이 확실시되는 예산을 편성요청하며 사업별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혼란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한 후에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예산현액의 25.0%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74.7%가 결국 이월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소관 **위례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에서 북정역, 8호선 추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36억 2,500만원중 36.3%, 521억

7,400만원이 이월된 것임

- 서울시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트램)을 '25년도까지 준공·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19~'20회계연도)는 물론 공사기간('21~'24회계연도)까지 각 공정마다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4-67〉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43,625	91,347	52,174	19,124	33,050	-	103
시 설 비	139,044	87,604	51,405	18,955	32,450	-	34
감 리 비	4,481	3,711	769	169	600	-	-
시설부대비	100	31	-	-	-	-	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총무부-5980 ('25. 3.31)

- 사업부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약이 지연되거나 공사중 민원발생 및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지장물의 발견 등을 사유로 일정이 지체되어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 사업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월이 발생한 것은 정밀한 계획이나 실제 추진가능한 공정보다 재원을 과다하게 확보한 결과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특히, 지난 4월 1일 통보된 회의결과에 따르면 '위례선 노면전차(트램)' 건설 관계기관별 회의에서 서울경찰청은 동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안전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사업부서는 동 사안에 대한 관계 법령 적용 검토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로 확인됨

- 서울시가 당초 '25년 하반기 시운전하고자 한 계획은 불확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5년 3월, 발생한 강동구 싱크홀이 주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공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68〉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24~'1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보조금반납금 비율)	불용액 (불용률)
			계 (이월률)	명시이월 (명시이월률)	사고이월 (사고이월률)		
2024	143,625	91,347 (63.6)	52,174 (36.3)	33,050 (23.0)	19,124 (13.3)	- (0.0)	103 (0.07)
2023	79,733	56,253 (70.5)	23,030 (28.8)	14,091 (17.6)	8,938 (11.2)	- (0.0)	449 (0.5)
2022	21,910	9,226 (42.1)	12,603 (57.5)	- (0.0)	12,603 (57.5)	- (0.0)	79 (0.3)
2021	21,460	9,802 (45.6)	11,595 (54.0)	5,383 (25.0)	6,211 (28.9)	- (0.0)	62 (0.2)
2020	2,819	845 (29.9)	1,966 (69.7)	1,966 (69.7)	- (0.0)	- (0.0)	7 (0.2)
2019	1,000	- (0.0)	819 (81.9)	- (0.0)	819 (81.9)	- (0.0)	180 (18.0)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문화본부 박물관과 소관 **서서울미술관 건립**은 서남권에 시립미술관 분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2억 6,600만원중 22.5%, 39억원이 이월된 것임

- 당초 '24년도 본예산에 131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사유로 '24년 5월, 추경예산을 통해 4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추경을 통해 확보된 규모(41억 2,500만원)에 상당하는 39억원이 이월된 것은 실제 추진가능한 공정보다 재원이 과잉 확보된 결과로 사료됨
- 사업부서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염두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 총괄부서는 추경예산의 경우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69〉 서서울미술관 건립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 2 4 년 도 본 예 산	' 2 4 년 도 1 추 주 1)	예산현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소 계	13,141	4,125	17,266	3,900	-	26
시 설 비	11,499	4,125	15,624	3,393	-	17
감 리 비	1,523	-	1,523	507	-	0 ^{주2)}
시 설 부 대 비	14	-	14	-	-	8
자산및물품취득비	105	-	105	-	-	0.4 ^{주3)}

주1)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감액

주2) 감리비는 11,000원 불용됨

주3)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93,710원 불용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도림천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는 하천 토구에 CSOs 간이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강우시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고 방지하는 것이나, 예산현액 35억원중 회계연도내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당초 '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준공됨에 따라 '24년도 부터는 소관 자치구(영등포구, 관악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공사비 35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 사업대상지가 하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방대책기간중에는 공사 추진

에 제약이 있으며 조달청과의 수의계약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지체되어 실제 공사를 회계연도내 준공할 수 없어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가 동 사업을 기존 공법이 아닌 새로운 공법으로 시범 도입하고자 신기술 특허가 있는 기업과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이나, 조달청 1차 검토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 이후 조달청과 2차 협의과정에서 사업의 특수성 등이 강조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결정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전액 이월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조달청을 통한 용역계약 의뢰시, 평상시의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새로운 특허권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면 관련 특허권에 대한 인정 여부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전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공정기간을 계획하는 것은 물론 회계연도내 추진가능한, 공정별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요청될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으로 사료됨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소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자연 경관회복 및 곤돌라를 도입하여 남산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122억 6,100만원)의 22.4%, 27억 5,4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곤돌라 설치에 따른 용역비 등을 포함한 26억 5,4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표 4-70〉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12,261	11,823	2,754	2,654	100	-	338
사무관리비	891	429	264	264	-	-	197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34	134	-	-	-	-	-
시 설 비	10,811	8,403	2,268	2,168	100	-	138
감 리 비	414	191	220	220	-	-	1
시설부대비	10	10	-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정책과-3785 ('25. 4. 8)

-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이월내역중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 19억 4,400만원(예산현액의 15.8%)은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5년도에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럼에도, 사업부서는 '25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며 동 사업의 공사용역 잔여분(391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시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집행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를 존중하여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동 사업은 장애로 인

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필요시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에 '25년도 편성 재원을 집행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71A〉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2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 연장) 건설 차량기지	159,834	124,292	35,514	22.2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사업특별회계)	143,625	91,347	19,124	13.3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41,551	28,317	13,233	31.8
교통실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1,283	13	11,269	99.8
정원도시국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41,578	28,140	10,287	24.7
교통실	저상버스 도입	83,018	69,630	10,276	12.3
물순환안전국	서지운로 일대 저지교수로 정비	28,584	18,345	10,238	35.8
정원도시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79,266	67,478	9,994	12.6
정원도시국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33,073	21,259	8,988	27.1
정원도시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52,599	42,894	8,769	16.6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198,914	131,520	8,612	4.3
물순환안전국	강남역 일대 강물배수시설 설치	42,040	6,355	8,499	20.2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73,047	58,438	8,295	11.3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일대 도림배수시설 설치	62,124	6,045	8,130	13.0
문화본부	권역별 조성·리듬·도서관영	29,510	16,600	8,126	27.5
관광체육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0,520	12,639	7,876	38.3
재난안전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	8,000	795	7,187	89.8
재난안전실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17,639	10,638	7,001	39.6
재난안전실	신림~봉천터널 건설	25,832	19,424	6,407	24.8
재난안전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15,031	8,639	6,392	42.5

〈표 4-71B〉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2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광화문수시설 설치	30,884	3,983	5,957	19.2
정원도시국	근교산등산로 정비	25,424	19,483	5,664	22.2
재난안전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개정)	13,517	8,1552	5,365	39.6
경제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13,287	8,013	5,273	39.6
문화본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25,867	18,713	5,257	20.3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10,796	4,631	5,193	48.1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3,846	27,201	4,700	13.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77,672	66,806	4,243	5.4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보수공사	12,640	8,438	4,100	32.4
물순환안전국	가락-3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595	1,671	3,915	69.9
문화본부	서서울미술관 건립	17,266	13,339	3,900	22.5
미래한강본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선 착상 조성	20,800	17,059	3,736	17.9
재난안전실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 지하화	12,186	8,428	3,694	30.3
복지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889	252	3,637	93.5
물순환안전국	센터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11,983	7,481	3,623	30.2
물순환안전국	시흥고지-2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060	2,279	3,614	59.6
물순환안전국	도림2-6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648	60	3,588	98.3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13,091	8,331	3,567	27.2
물순환안전국	일원-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809	5,242	3,567	40.4
정원도시국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9,988	3,812	3,557	35.6

〈표 4-71C〉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2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신하수관로 1-4정비구사업	5,600	2,045	3,554	63.4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C S O S 간이처리시설	3,500	-	3,500	100.0
물순환안전국	구하수관로 1-1정비구사업	5,791	2,337	3,453	59.6
민생노동국	양곡도매시장 이전	7,294	3,925	3,347	45.8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11,231	7,471	3,336	29.7
정원도시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9,673	15,984	3,325	16.9
정원도시국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3,838	189	3,307	86.1
재난안전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15,770	12,591	3,178	20.1
물순환안전국	신하수관로 1-정비구사업	6,259	3,122	3,132	50.0
재난안전실	가공배전선 지중화	25,712	15,767	3,083	11.9
재난안전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23,053	19,213	3,080	13.3
재난안전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2,615	8,841	3,071	24.3
물순환안전국	상하수관로 1-3정비구사업	4,541	1,505	3,035	66.8
물순환안전국	용산-22정비구사업	4,541	1,763	2,774	61.0
균형발전본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12,261	9,168	2,654	21.6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보급	18,477	11,261	2,600	14.0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블록 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7,394	19,781	2,593	9.4

(2)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례 검토

- '24회계연도의 경우, 민생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4년 6월,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바,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세부사업중 문화본부 박물관과 소관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은 예산현액 3억 7,900만원 중 25.8%, 9,700만원이 사고이월 된 바,

〈표 4-72〉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379	245	97	97	-	-	36
사무관리비	110	9	97	97	-	-	3
연구용역비	89	89	-	-	-	-	-
시 설 비	180	147	-	-	-	-	33

※ 자료근거 : ① 2024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4688 ('25. 3.31)

- 동 사업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총사업비를 458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검토되어 법령에 따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이행이 필요하여
- 서울시는 지난 '24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LIMAC) 수수료 1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사업설

명회 등을 개최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시설비**로 편성된 타당성조사 수수료(1억 4,700만원)는 지출되었으나,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편성요청된 1억 1,000만원중 900만원만 지출되고 9,790만원은 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추경예산의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 학술포럼을 10월에 진행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이 의결된 후 '24년 10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 및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에는 “2025년 4월, 이순신 서울 탄신 480주년 기념일에 ‘충무공 이순신과 서울’을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대회” 추진을 위한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4-73〉 2024년도 추진일정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90	
기본계획	'24.05~'24.05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24.07~'25.02	180	행정안전부(LIMAC) 타당성조사 진행
학술포럼	'24.10~'24.10	110	기념관건립 관련 학술포럼 개최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4. 5), p.693

- 동 사업은 당초부터 이월이 일부 전제되어 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음에도 회계연도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산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부 소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는 추경예산을 통해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예산현액 2억원중 89.0%, 1억 7,8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100만원은 불용한 것임

〈표 4-74〉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200	-	178	178	-	-	21
연구용역비	200	-	178	178	-	-	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3258 ('25. 3.31)

- 우리 위원회는 추경예산 심사시 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역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소요예산은 이월될 것이 확실시됨을 지적한 바 있음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한대로 동 사업은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연구용역비 전액(1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은 물론 용역 준공도 '25년 9월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의 기준도 학술용역 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용역기간 설정 및 소요경비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 향후에는 동 사례와 같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추진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연도별 차수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거나,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부터 사업이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원도시국 조경과 소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추경을 통해 10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1억원이 감액조정된 9억 1,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임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조직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나, 행사운영비 9억원은 전액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75〉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910	10	900	900	-	-	-
사무관리비	10	10	-	-	-	-	-
행사운영비	900	-	900	90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5284 ('25. 4. 7)

- 관련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동 용역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24억 8,000만원으로 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4년 11월, 사업부서가 동 사업의 재원을 이월하기 위해 수립한 방침에도 당초 '24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1년 가까이 연장하여 준공일을 '25년 12월 10일로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 이월된 '24회계연도 소요예산(9억원)과 '25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 재원(15억 8,000만원)을 향후 동 행사 용역 준공시 함께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동 이월 사례의 경우, 재원확보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월이 확실시되는 재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례로 사료되어 해당 회계연도내 지출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20억원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중 10억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은 사고이월된 것으로

- 서울시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43억 5,6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4년도에 추진가능한 용역 규모를 20억원으로 산정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이 '25년 5월로 회계연도중 준공하지 못하여 기 지출한 선금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표 4-76〉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계	2,000	1,000	1,000	1,000	-	-	-
시 설 비	2,000	1,000	1,000	1,00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그러나 사업부서가 동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1차분 공사에 대하여 '24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5개월(약 150일)간 시행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표 4-77〉 2024년도 추진일정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00	
용역발주	'24.06~'24.07	0	용역발주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용역시행	'24.08~'24.12	110	정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차분)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 실제 1차분 공사를 체결한 계약서에는 1차년도 완수기한을 “착수일부터 금차 242일”로 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월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의회의 예산심사시 이월이 전제된 사업이라는 지적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실제 소요되는 용역기간보다 축소하여 기재한 것으로 사료됨

○ '24년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 추진일정을 연도내에 추진완료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 추진기간이 한 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공사, 연구용역 등은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규모의 재원만을 소요하는 차수계약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법령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예외로 인정되는 이월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더욱 한정적이며 추가적인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을 경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바,

-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계획 수립시보다 추진일정, 집행가능액 등을 더욱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회계연도 내로 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내역에 한정하여 재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 중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제출하고, 결산 시점에는 사전절차 이행기간,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과정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진부한 이유는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78〉 추경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현황 (2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통실	9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11,283	13	11,269	99.8
재난안전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15,770	12,591	3,178	20.1
교통실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8,274	7,273	1,000	12.0
물순환안전국	노후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00	1,000	1,000	50.0
정원도시국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910	10	900	98.9
재난안전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교통관리계정)	987	187	800	81.0
정원도시국	경희궁 지공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1,000	220	779	77.9
재난안전실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1,700	998	701	41.2
정원도시국	서태마반려동물 스테파크 조성	1,100	535	236	21.4
물순환안전국	일원로 3길 87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1,000	359	546	54.6
재난안전실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657	224	421	64.0
물순환안전국	재방산책로 (동대문구) 환경정비	290	53	236	81.3
미래공간기획관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400	200	200	50.0

(3) 이월액 확정 이후 사고이월액을 임의변경한 사례 검토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이월액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즉 1월 10일까지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규칙에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확정기한(1월 10일)이 경과한 이후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변경한 사례가 3건(통계목 기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9〉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정정한 사례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1월 10일자로 확정된 사고이월액 (가)	변경된 사고이월액 (‘24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교 통 실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시 설 비	246 ^{주1)}	246 ^{주2)}	10원
도시기반시설 본 부	도 시 철 도 9 호 선 4 단 계 건 설	시 설 비	4,399	4,243	△156
미 래 공 간 기 획 관	기 부 채 납 공공건축 사업 관리	시 설 비	97	70	△26

주1) 2억 4,661만 2,310원 (246,612,310원)

주2) 2억 4,661만 2,300원 (246,612,300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700 ('25. 4.16)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소관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은 '25년 1월 10일, 시설비 예산현액(43억 100만원)중 2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사업부서는 사고이월액 확정 이후 지출액 등을 착오하였음을 사유로 지난 1월 20일,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2억 4,661만 2,310원)중 △10원을

감액한 2억 4,661만 2,300원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훈령으로 정한 기한이 이미 경과된 1월 20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소관 **기부채납 공공건축 사업 관리**는 '25년 1월 10일, **시설비** 예산현액(2억 6,000만원)중 9,700만원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이월액중 이미 지출된 금액이 있음을 사고이월 확정기한('25년 1월 10일)이후 인지하고, 확정된 사고이월액에 대해 정정요청하여, 예산부서가 지난 2월 5일, 요청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은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745억 7,000만원)중 43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지난 2월 3일, 국고보조금의 일부가 부족교부되어 이미 지출한 예산을 국비가 아닌 시비로 정정함에 따라, 시비 사고이월액을 '25년 1월 10일 이월확정 당시 사고이월액(43억 9,9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 감액된 42억 4,300만원으로 정정요청하자 예산부서가 2월 4일,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사고이월액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훈령은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보조금의 집행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에서도 배정예산의 집행 제한 사례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이 내시액보다 부족하게 교부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훈령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집행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기집행한 국고보조금의 부족교부액을 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월확정부서 또한 이를 승인한 것은 회계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행태로 사료됨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로서는 실제 지출된 예산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 산정된 이월예산액을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오기 정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서울시의 규칙에서 회계연도 이월규모 확정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 이후 최대 10일까지 유예기간이 두고 있는 것은 지출액, 이월가능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월규모를 확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씌
- 이월예산을 법정일자 이후 변경하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인 것은 물론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경시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어 정정액의 과소를 떠나 회계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행태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함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1조 4,870억 2,2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바, 직전회계연도(1조 6,459억 9,100만원)보다 △9.7%, △1,589억 6,9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4-80〉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회 계 연 도	2023 회 계 연 도	2022 회 계 연 도
합 계		1,487,022	1,645,991	4,137,946
	일 반 회 계	929,028	932,676	3,254,857
	특별회계 ^{주1)}	557,994	713,314	883,089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9,326억 7,600만원)보다 △0.4%, △36억 4,800만원 감소한 9,290억 2,8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7,133억 1,400만원)보다 △21.8%, △1,553억 2,000만원 감소한 5,579억 9,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와 유류세 인하 정책 및 '23회계연도 귀속 법인 실적 저조 등으로 지방소득세(△2,404억 4,300만원), 자동차세(△1,917억 8,300만원), 담배소비세(△180억 2,500만원) 등은 부족수납되었으나,

-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소비심리의 일부 회복 등의 사유로 취득세(9,512억 5,600만원), 재산세(326억 2,100만원), 지방소비세(110억 8,000만원), 지방교육세(696억 8,800만원)는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34조 5,025억 8,500만원)보다 0.8%, 2,789억 3,200만원 증가한 34조 7,815억 1,7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8조 3,174억원)의 99.1%, 7조 9,593억 1,400만원 지출하였으나, 환경분야는 예산현액(9,512억 2,700만원)의 79.6%, 7,573억 1,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8조 1,830억 400만원)의 93.9%, 7조 6,831억 9,000만원 등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34조 5,025억 8,500만원의 97.3%, 33조 5,653억 9,4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제출된 바,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1조 2,867억 9,600만원)보다 △5.5%, △706억 7,300만원 감소한 1조 2,161억 2,300만원이 발생되어
- 다음연도 이월액(1,893억 7,0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977억 2,300만원)을 차감한 **일반회계 세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9,326억 7,600만원)보다 △0.3%, △36억 4,800만원 감소한 9,290억 2,8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81〉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4~'2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최 종 예 산 ①		34,246,379	36,232,230	38,050,516
전 년 도 이 월 액 ②		256,205	275,161	269,125
예 산 현 액 ③=①+②		34,502,585	36,507,392	38,319,642
세 입 결 산 액 (수 납 액) ④		34,781,517	36,215,268	40,714,143
세 출 결 산 액 (지 출 액) ⑤		33,565,393	34,928,472	37,116,773
결 산 상 잉 여 금 ⑥=④-⑤		1,216,123	1,286,796	3,597,370
채 무 상 환 ⑦		-	-	-
명 시 이 월 액 ⑧		44,231	42,345	81,713
사 고 이 월 액 ⑨		145,139	213,859	193,448
계 속 비 이 월 액 ⑩		-	-	-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⑪		97,723	97,913	67,351
물 납 등 ⑫		-	-	-
세 계 잉 여 금 ⑬=⑥-(⑦+⑧+⑨+⑩+⑪+⑫)		929,028	932,676	3,254,85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24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290억 2,800만원 중 관련 법에 따라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2,103억 5,2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1,479억 4,200만원) 등 이른바 “법정정산분”(3,582억 9,4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5,707억 3,400만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4-82〉 '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법 정 정 산 분			여 유 재 원
	소 계	자 치 구 교 부 ①	교 육 청 전 출 ②	
929,028	358,294	210,352	147,942	570,73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9,290억 2,800만원)의 경우, 법정정산분(3,582억 9,400만원)을 제외한 5,707억 3,4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2,853억 6,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25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매년 직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에 대해 서울시는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선(先) 편성하고 있음

- '25년도 세입예산에는 12개 특별회계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해 전년도 11월 제출하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결산 이후에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
- 서울시로서는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한정되어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편성일 수 있으나,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였음에도 '24회계연도 결산이후 발생 규모가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2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표 4-83〉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의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 계 액 A)	2025년도 세입 편성액 (순세계잉여금B)	잉여금 잔액 (A - B)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54,867	54,867	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38,348	238,348	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1,366	31,366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350	17,35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96	596	0
	소 방 특 별 회 계	26,276	26,276	0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7,530	107,530	0

○ 결과적으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는 잉여금 발생규모가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액보다 감소된 바,

- ①**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92억 3,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548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156억 2,8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며

- ②**주택사업특별회계**는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40억 9,600만원 부족한 상황으로
 - 동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을 2,383억 4,800만원으로 예측하여 '25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전망치 전액(2,383억 4,800만원)을 선(先)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2억 5,1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 부족액 △2,340억 9,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③**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또한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억 9,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예산에 5억 9,600만원을 미리 편성한 결과 △1억 9,700만원의 '25년도 본예산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며
- ④**소방특별회계**의 경우,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5,100만원임에도 '25년도 본예산에 262억 7,600만원을 미리 편성함에 따라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액 △172억 2,4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25회계연도중 기편성된 세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조정 하여야 하며 감액하지 않는다면 '26년 6월, 결산시 세입결손은 물론 세출에는 재원없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선(先)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반복적으로 경정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84〉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 2 4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①	' 2 5 년 도 본 예산 기 편 성 액 ②	실 잔 액 ① - ②
합 계		1,487,022	480,462	1,006,560
일	반 회 계	929,028	-	929,02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760	-	17,76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39,239	54,867	△15,628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2,814	-	2,814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4,251	238,348	△234,096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8,174	31,366	46,808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5,317	-	15,317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788	-	9,788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0,511	17,350	3,16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99	596	△197
소 방 특 별 회 계		9,051	26,276	△17,224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98,483	111,655	86,828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62,201	-	162,20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6632 ('25. 3.31)

9.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관련 검토

(1) 개 요

- 서울시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법령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별도로 제출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음

(2)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 관련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산결과, 예산현액 1조 204억 3,100만원의 9.6%, 978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65억 2,700만원의 7.8%, 844억 8,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85〉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 산 액	예 산 성립 증감액	예 산 현액 (가)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주1)}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금 액 (나)	비 율 (나)/(가)
계	1,821,823	183,113	2,096,959	1,769,015	145,533	45	182,365	8.7
수도사업	970,000	50,431	1,020,431	893,778	28,728	45	97,879	9.6
공 기 업 하수도사업	851,823	132,682	1,076,527	875,236	116,805	-	84,485	7.8

주1)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됨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과는 달리 사업별 불용사유를 ①보조금 정산잔액, ②예산절감액,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낙찰차액, ⑤지출잔액, ⑥예비비로 유형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별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준처럼 사업별 불용사유가 유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의 경우에도 사유별로 불용액이 관리되도록 개선요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현행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제한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불용액 발생사유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준하여 제출받은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4사업연도에 발생한 불용액 978억 7,900만원중 지출잔액이 전체의 63.3%, 619억 1,200만원 발생되었고, **낙찰차액**은 16.9%, 164억 9,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86〉 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7,879	6,400	1,127	2,240	16,497	61,912	9,700
	(100.0)	(6.5)	(1.2)	(2.3)	(16.9)	(63.3)	(9.9)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742억 8,000만원이며 이 중 59.6%, 583억 1,200만원이 2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4-87〉 사업비^{주1)} 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정수센터 시설 정비	50,588	41,611	2,016	6,915	13.7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73,047	58,438	8,295	6,313	8.6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7,394	19,781	2,593	5,019	18.3
급수공사	28,298	23,579	-	4,718	16.7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31,073	27,049	-	4,023	12.9
수도계량기 교체	21,650	17,901	-	3,749	17.3
장기사용 배급수관 (350mm 이하) 정비	72,370	68,033	684	3,653	5.0
아리수 생산재료비 (약품비)	13,575	10,538	-	3,037	22.4
아리수 생산재료비 (슬러지케익처리비)	7,280	4,805	-	2,474	34.0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유지보수	8,696	5,467	900	2,328	26.8
배수지 내부 방식	15,853	12,508	1,062	2,282	14.4
노후 밸브 정비	29,341	27,141	-	2,199	7.5
상수도관 누수복구	58,979	56,964	-	2,014	3.4
아리수 생산재료비 (동력비)	83,000	81,279	-	1,720	2.1
아리수 생산재료비 (원수구입비)	54,980	53,292	-	1,687	3.1
녹물걱정없는 클린닥터 서비스	9,724	8,278	-	1,445	14.9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노후기전시설 개량	11,099	9,821	-	1,278	11.5
반환금 등	14,828	13,612	-	1,215	8.2
소블록 배수관 세척	6,549	5,335	-	1,214	18.5
대형 상수도관 세척	8,171	7,150	-	1,020	12.5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958 ('25. 4. 1)

○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의 경우, 예산현액 730억 4,700만원 중 584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1,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 중 65.9%, 41억 5,800만원이 **낙찰차액 및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으로 검토되는 바,

- 지난 '23회계연도에도 동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 중 73.3%, 114억 6,800만원이 **낙찰차액 및 공사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집행 여건과 소요 재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불용액 규모가 더욱 축소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8〉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예산감액 예절	낙찰차액	지출잔액
2024	73,047	58,438	8,295	6,313	-	2,155	4,158
2023	71,033	35,611	19,779	15,642	1,088	3,085	11,468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958 ('25. 4. 1)

○ 아울러 10억원 미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중 **공공기관 내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의 경우에는 예산현액(22억 5,000만원)의 57.2%, 1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 해당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참여예산이 시민의 제안에 기초하여 산출내역이 구성된다 할 지라도 사업부서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실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89〉 공공기관 내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차 찰액
지원사업성시설비	2,250	1,288	-	961	716	245

※ 자료근거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958 ('25. 4. 1)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이 해당 회계로 재순환되는 구조로 인하여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타 회계로 전입·전출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어 향후에는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4사업연도에 844억 8,500만원이 불용된 바, 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63.8%, 538억 9,700만원으로 다른 불용액 발생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초 지출계획이 실제보다 과다 편성된 결과일 수 있기에 지출잔액을 원인으로 한 불용액은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9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 산 잔 액	예 절 감 산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 차 액	지 출 잔 액	예 비 비
공 기 업 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84,485	-	-	15,919	14,186	53,897	482
	(100.0)	-	-	(18.8)	(16.8)	(63.8)	(0.6)

※ 자료근거 : '24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94.1%, 794억 8,6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 또한 사업비 불용액의 65.8%, 555억 6,3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91〉 사업비^{주1)} 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215,347	190,909	-	24,437	11.3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40,145	29,318	2,135	8,691	21.7
난지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3,940	-	-	3,940	100.0
장위 - 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662	2,831	-	3,831	57.5
중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24,092	21,139	-	2,952	12.3
신촌 - 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596	1,021	-	2,575	71.6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3,126	16	745	2,364	75.6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	8,288	6,481	-	1,807	21.8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11,187	9,625	-	1,561	14.0
차집관로 성능개선	13,091	8,331	3,567	1,192	9.1
탄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9,091	7,971	-	1,119	12.3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62,367	61,277	-	1,089	1.7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신촌-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현액(35억 9,600만원)의 71.5% 25억 7,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3회계연도로부터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인하여 '24년도 본예산 편성 없이 사고이월된 35억 9,600만원을 활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4회계연도에는 25억 7,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92〉 신촌-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계획변경등 계집행사유 미발생
계	3,596	1,021	-	2,575	2,575
시설비	3,461	886	-	2,575	2,575
감리비	135	135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의 경우, 예산현액(82억 8,800만원)의 21.8% 18억 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지난 '23회계연도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49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고, '24회계연도에는 공사기간 부족 및 후속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18억 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향후에는 예산집행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사사례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93〉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 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계획변경등 계집행사유 미발생	낙차 차액	지잔 출액
2024	시설비	8,288	6,481	-	1,807	1,241	272	293
2023	시설비	12,935	7,287	4,998	649	-	-	64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4791 ('25. 4. 3)

V.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바, 법령 등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와 현금흐름표,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24회계연도 자산은 155조 2,109억 500만원, 부채는 18조 6,281억 5,8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6조 5,827억 4,700만원임
- 2024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비용**은 39조 5,160억 5,000만원이고, **수익**은 38조 6,927억 5,300만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8,232억 9,700만원 적자임

〈표 5-1〉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24	155,210,905	18,628,158	136,582,747	38,692,753	39,516,050	△823,297
2023	152,514,807	18,089,181	134,425,626	37,330,106	37,231,834	98,272
증감액	2,696,098	538,977	2,157,121	1,362,647	2,248,216	△921,569
(증감률)	1.8	3.0	1.6	3.7	6.1	△937.8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4회계연도말 **자산**은 155조 1,210억 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자산(152조 5,148억 700만원)보다 1.8%, 2조 6,960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 '24회계연도의 **부채**는 18조 6,281억 5,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부채(18조 891억 8,100만원)보다 3.0%, 5,389억 7,700만원 증가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36조 5,827억 4,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순자산(134조 4,256억 2,600만원)보다 1.6%, 2조 1,571억 2,100만원 증가하였음

(1)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2024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자산은 155조 1,862억 8,900만원으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87조 5,741억 5,600만원(56.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32조 5,966억 3,700만원(21.0%),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18조 5,788억 7,500만원(11.9%), 현금 및 현금성자산인 **유동자산** 6조 2,494억 3,700만원(4.0%) 등의 순으로 구성된 자산현황을 제출함

〈표 5-2〉 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증감액	증감률
자 산 총 계	155,210,905	100.0	152,514,807	100.0	2,696,098	1.8
유 동 자 산 ^{주1)}	6,249,437	4.0	8,084,693	5.3	△1,835,256	△22.7
투 자 자 산 ^{주2)}	18,578,875	11.9	18,566,194	12.1	12,681	0.1
일 반 유 형 자 산 ^{주3)}	8,971,168	5.7	8,804,694	5.9	166,473	1.9
주 민 편 의 시 설 ^{주4)}	32,596,637	21.0	31,394,377	20.6	1,203,260	3.8
사 회 기 반 시 설 ^{주5)}	87,574,156	56.4	84,518,839	55.4	3,055,317	3.6
기타비유동자산 ^{주6)}	1,240,632	0.7	1,146,009	0.7	94,622	8.3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임목 등을 말한다.

주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주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주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2조 6,960억 9,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1조 8,352억 5,600만원)은 감소하였으나, **투자자산**(126억 8,100만원)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기반시설**(3조 553억 1,700만원 증가), **주민편의시설**(1조 2,022억 6,000만원 증가), **일반유형자산**(1,664억 7,300만원 증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자산이 증가한 바,

- **유동자산**의 경우, 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54억 9,000만원 감소하고, 단기금융상품도 이자율 감소 등에 따라 △5,653억 2,800만원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직전회계연도보다 △22.7%, △1조 8,352억 5,7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5-3〉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6,249,436	8,084,693	△1,835,257	△22.7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3,360,994	4,366,484	△1,005,490	△23.0
단기금융상품 ^{주1)}	1,148,293	1,713,621	△565,328	△33.0
미수세금 ^{주2)}	815,647	717,492	98,155	13.7
미수세외수입금 ^{주3)}	252,096	326,850	△74,755	△22.9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58,592	187,687	△29,095	△15.5
단기대여금 ^{주4)}	220,044	312,736	△92,692	△29.6
재고자산 ^{주5)}	31,072	37,829	△6,757	△17.9
기타유동자산	262,696	421,991	△159,295	△37.7

주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과 기금이 연도말까지 예치한 자금

주2)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으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주3)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으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주4)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당해연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주5)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 **투자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0.1%, 126억 8,100만원 증가한 바, 지방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주식투자 등인 **장기투자증권**이 취득원가보다 장 부가액이 낮아져 △704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나, 민간 및 서울시 산 하 공사·공단 융자금 등의 **장기대여금**이 722억 5,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4〉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8,578,875	18,566,194	12,681	0.1
장 기 금 융 상 품	10,000	-	10,000	-
장 기 대 여 금 ^{주1)}	1,108,310	1,036,059	72,251	7.0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509	△6,756	247	△3.7
장 기 투 자 증 권 ^{주2)}	17,447,984	17,518,423	△70,439	△0.4
기 타 투 자 자 산	19,089	18,468	621	3.4

주1)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

주2) 민간이나 지방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9%, 1,664억 7,300만원 증가된 바,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분할합병 등 자산유형변경, 토지 매각,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분할합병 등의 자산유형변경 등의 사유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193억 2,200만원 증가하였고, **건물**은 취득과 매각 등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208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집기비품**의 경우, 감가상각비 700억원이 포함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110억 5,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5〉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971,167	8,804,694	166,473	1.9
토	지	7,477,179	7,357,856	119,322	1.6
입	목	3,011	3,011	0	0.0
건	물 ^{주1)}	932,596	911,709	20,886	2.3
구	축 물 ^{주1)}	11,168	14,537	△3,368	△23.2
기	계 장 치 ^{주1)}	3,612	4,737	△1,124	△23.7
차	량 운 반 구 ^{주1)}	104,335	106,609	△2,274	△2.1
집	기 비 품 ^{주1)}	218,348	229,401	△11,053	△4.8
임	차 개 량 자 산 ^{주1)}	-	298	△298	△100.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20,916	176,531	44,385	25.1

주1)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한 금액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3.8%, 1조 2,022억 6,000만원 증가된 바,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주차장,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이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하고, 공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은 토지가액 상승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5-6〉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2,596,637	31,394,377	1,202,260	3.8
도	서 관 주 ¹⁾	100,314	98,610	1,703	1.7
주	차 장 주 ¹⁾	1,481,011	1,510,702	△29,691	△2.0
공	원 주 ¹⁾	12,495,241	12,039,121	456,120	3.8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주 ¹⁾	579,379	445,179	134,200	30.1
동 물 원	주 ¹⁾	1,517천원	2,056천원	△539천원	△26.2
수 목 원 및 휴 양 림	주 ¹⁾	353,667	355,415	△1,747	△0.5
문 화 및 관 광 시 설	주 ¹⁾	4,237,222	4,120,273	116,948	2.8
체 육 시 설	주 ¹⁾	1,880,025	1,884,291	△4,266	△0.2
사 회 복 지 시 설	주 ¹⁾	1,530,822	1,382,654	148,168	10.7
의 료 시 설	주 ¹⁾	651,684	667,945	△16,261	△2.4
교 육 시 설	주 ¹⁾	1,003,129	1,005,341	△2,211	△0.2
기 타 주 민 편 의 시 설	주 ¹⁾	6,324,516	5,936,084	388,431	6.5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959,619	1,948,753	10,866	0.6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3.6%, 3조 553억 1,600만원 증가한 바,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수질정화시설, 재활용시설 등이 직전회계연도보다 감소하고, 상수도시설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5-7〉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7,574,155	84,518,839	3,055,316	3.6
도	로 ^{주1)}	61,321,901	60,739,281	582,619	1.0
도	시 철 도 ^{주1)}	4,597,483	4,331,113	266,369	6.2
상	수 도 시 설 ^{주2)}	6,581,574	4,907,412	1,674,161	34.1
수	질 정 화 시 설 ^{주2)}	6,389,690	6,543,400	△153,710	△2.3
하	천 부 속 시 설	3,653,811	3,627,414	26,396	0.7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2)}	101,181	101,567	△385	△0.4
재	활 용 시 설 ^{주2)}	134,760	140,004	△5,243	△3.7
농	수 산 기 반 시 설 ^{주2)}	300,665	301,129	△464	△0.2
기	타 사 회 기 반 시 설 ^{주2)}	22,119	23,267	△1,148	△4.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470,967	3,804,246	666,721	17.5

주1) 사용수익권 차감

주2)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기타비유동자산**은 청사·관사의 임차보증금, 지적재산권, 콘도 회원권 등의 용익물권,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등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8.3%, 946억 2,200만원 증가된 바,
- 기타보증금중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121건, 1,994억원 증가)이 증가하여 ①**보증금**이 직전회계연도보다 1,796억 8,600만원 증가하였고, ②**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전산소프트웨어, 건설중인무형자산은 감소하였으나, 콘도회원권을 포함한 용익물권이 증가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67억 3,8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③**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안심주택보증금을 포함한 위탁대행사업비 등이 감소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918억 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8〉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240,631	1,146,009	94,622	8.3
보	증 금	533,051	353,364	179,686	50.9
	임 차 보 증 금	61,315	53,126	8,189	15.4
	전 신 전 화 가 입 권	7,366천원	8,512천원	△1,146천원	△13.5
	기 타 보 증 금	471,728	300,229	171,499	57.1
무	형 자 산	178,781	172,043	6,738	3.9
	지 적 재 산 권	5,000	4,761	239	5.0
	전 산 소 프 트 웨 어	55,097	55,592	△494	△0.9
	용 익 물 권	114,628	105,274	9,354	8.9
	건 설 중 인 무 형 자 산	4,054	6,415	△2,361	△36.8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28,799	620,601	△91,802	△14.8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91,820	40,099	51,721	129.0
	유 산 자 산	64,103	62,136	1,966	3.2
	생 물 자 산	1,156	942	214	22.8
	장 기 일 반 미 수 금 ^{주1)}	286,425	447,622	△161,196	△36.0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5,292	69,801	15,491	22.2

주1) 대손충당금 차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2) 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됨

○ 2024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총부채**는 18조 6,281억 5,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8조 891억 8,100만원)보다 3.0%, 5,38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5-9〉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부채총계			18,628,158	18,089,181	538,977	3.0
	유동부채	주1)	3,845,840	3,423,926	421,914	12.3
	장기차입부채	주2)	9,375,455	9,721,702	△346,248	△3.6
	기타비유동부채	주3)	5,406,863	4,943,552	463,311	9.4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권,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증권 등의 **유동부채**가 총부채의 20.6%, 3조 8,458억 4,000만원이며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의 **장기차입부채**가 총부채의 50.3%,

9조 3,754억 5,500만원 그리고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시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29.0%, 5조 4,068억 6,3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 직전회계연도 대비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 유동부채의 경우, 유동성지방채증권중 모집공채가 증가하고, 공공자금관리, 주택도시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정부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보다 4,219억 1,300만원이 증가한 바,

〈표 5-10〉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423,926	4,879,527	△1,455,601	△29.8
유 동 부 채	단 기 차 입 금	-	-	-	-
	유 동 성 장 기 차 입 부 채	1,720,794	2,137,095	△416,300	△19.5
	유 동 성 장 기 차 입 금	-	-	-	-
	유 동 성 지 방 채 증 권	1,660,314	2,080,753	△420,439	△20.2
	유 동 성 장 기 정 부 차 입 금	60,480	56,341	4,138	7.3
	기 타 유 동 부 채	1,703,131	2,742,432	△1,039,300	△37.9
	일 반 미 지 급 금	1,052,983	2,234,941	△1,181,958	△52.9
	선 수 금	154,445	25,161	129,284	513.8
	선 수 수 익	34,964	35,058	△93	△0.3
	단 기 예 수 보 관 금	282,853	332,915	△50,062	△15.0
기 타 유 동 부 채	일 반 미 지 급 비 용	113,691	112,354	1,337	1.2
	유 동 성 장 기 미 지 급 금	2,000	2,000	-	-
	기 타 유 동 부 채	62,192	-	62,192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장기차입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3,462억 4,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①**장기차입금**의 경우, 단기차입금의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유동성대체액’을 차감하면 직전회계연도보다 3,795억 1,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24년 10월, 지하철부채 상환(2,200억원)과 재개발임대주택매입(1,800억원)을 차환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②**지방채증권**의 경우, 단기차입금의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동성대체액’을 차감하면 직전회계연도보다 △6,615억 200만원 감소한 바, 도시철도공채와 일반공모채 등의 만기도래 상환이 증가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지방채증권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1〉 장기차입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A=B+E)		9,375,454	9,721,702	△346,247	△3.6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B=C-D)	1,088,300	773,046	315,254	40.8
	소계 (C)	1,213,046	833,526	379,519	45.5
	금융기관차입금	0	0		
	주택도시기금 ^{주1)}	615,552	667,858	△52,305	△7.8
	지역상생발전기금	82,693	114,800	31,825	62.6
	공공자금관리기금	514,800		400,000	348.4
	장기예수금	0	50,868		
	차감(유동성대체액) (D)	124,745	60,480	64,265	106.3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E=F-G)	8,287,154	8,948,656	△661,502	△7.4
	소계 (F)	10,124,493	10,608,970	△484,477	△4.6
	도시철도공채	5,275,193	5,467,670	△192,477	△3.5
	일반공모채(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3,641,300	5,141,300	△545,000	△13.0
	일반공모채(도시철도건설)	1,208,000		253,000	26.5
	차감(유동성대체액) (G)	1,837,339	1,660,314	177,025	10.7

주1) 국토부 공공임대주택매입 사업 관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4,633억 1,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①퇴직급여충당부채가 직전회계연도보다 130억 4,500만원 증가하고, ②기타비유동부채는 서울주택공사 임대보증금 수납액 증가 등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4,502억 6,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2〉 기타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5,406,863	4,943,552	463,311	9.5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89,470	76,425	13,045	17.0
	기 타 비 유 동 부 채	5,317,393	4,867,127	450,266	9.3
	장 기 예 수 보 증 금	91,820	40,099	51,721	129.0
	장 기 미 지 급 금	7,874	5,830	2,044	35.1
	임 대 보 증 금	4,857,927	4,430,404	427,523	9.6
	장 기 미 지 급 이 자	169,880	165,493	4,387	2.7
	우 발 부 채	189,890	225,299	△35,409	△16.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 2024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부채가 3.0%, 5,389억 7,700만원 증가하여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증가한 바,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된 상황에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증가된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세출구조가 경직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는 대규모 재정수요에 자금의 유동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발생될 수 있어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13〉 재정상태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자 산 (a)	155,210,905	152,514,807	152,170,872
부 채 (b)	18,628,158	18,089,181	19,360,205
순 자 산 (a-b)	136,582,747	134,425,626	132,810,666
자 산 대 부 채 비 율 (b/a)	12.0%	11.8%	12.7%

- 다만,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하여 지표상으로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고, 재무안정성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유동자산이 직전회계연도보다 △22.7% 감소되었고, 부채의 절대규모도 여전히 커 유동비율 증가가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14〉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유 동 자 산 (a)	6,249,437	8,084,693	10,505,677
유 동 부 채 (b)	3,845,840	3,423,926	4,879,528
유 동 비 율 (b/a) (Current Ratio)	61.5	42.3	46.4

(3)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34조 4,256억 2,600만원)보다 1.6%, 2조 1,571억 2,000만원 증가한 136조 5,827억 4,600만원임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되며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6.4%, 117조 9,733억 2,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3조 4,396억 2,600만원)보다 4.0%, 4조 5,337억 100만원 증가하였고,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4.1%, 5조 6,535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조 4,464억 7,300만원)보다 △12.3%, △7,929억 2,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 전체 순자산의 9.5%, 12조 9,558억 6,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5,395억 2,700만원)보다 △10.9%, △1조 5,836억 6,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5〉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구성비)	2023회계연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순 자 산 총 계		136,582,746 (100.0)	134,425,626 (100.0)	2,157,120	1.6
	고정순자산	117,973,327 (86.4)	113,439,626 (84.4)	4,533,701	4.0
	특정순자산	5,653,553 (4.1)	6,446,473 (4.8)	△792,920	△12.3
	일반순자산	12,955,866 (9.5)	14,539,527 (10.8)	△1,583,660	△10.9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항목의 분류 방식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기능별 재정운영표로 작성됨
-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39조 5,160억 5,000만원이고, **총수익**은 38조 6,927억 5,3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232억 9,700만원 적자로 검토됨

〈표 5-16〉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률
재 정 운 영 결 과 (A-B)		823,297	△98,272	△921,569	△937.8
비	용 (A)	39,516,050	37,231,834	2,284,216	6.1
수	익 (B)	38,692,753	37,330,106	1,362,647	3.7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1) 성질별 재정운영표

-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른 2024회계연도 **총비용**은 39조 5,160억 5,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7조 2,318억 3,400만원)대비 6.1%, 2조 2,842억 1,6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38조 6,927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7조 3,301억 600만원) 대비 3.7%, 1조 3,626억 4,700만원 증가하였음

〈표 5-17〉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률
	금	액	금	액 구성비		
재정운영결과(A-B)	(823,297)		(98,272)		△921,569	△937.8
비 용 (A)	39,516,050	100.0	37,231,834	100.0	2,284,216	6.1
인건비 ^{주1)}	2,310,445	5.9	2,204,969	5.9	105,476	4.8
운영비 ^{주2)}	8,274,405	20.9	7,921,455	21.3	352,950	4.0
정부간이전비용 ^{주3)}	16,662,312	42.2	20,266,324	54.4	△3,604,012	△17.8
민간등이전비용 ^{주4)}	9,996,504	25.3	4,649,803	12.5	5,346,701	115.0
기타비용 ^{주5)}	2,272,381	5.8	2,189,281	5.9	83,100	3.8
수 익 (B)	38,692,753	100.0	37,330,106	100.0	1,362,647	3.7
자체조달수익 ^{주6)}	29,029,301	75.1	28,024,666	75.1	1,004,635	3.6
정부간이전수익 ^{주7)}	9,168,060	23.7	8,746,024	23.4	422,036	4.8
기타수익 ^{주8)}	495,391	1.2	559,415	1.5	△64,024	△11.0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주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주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주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주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주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주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세세외수익 등

주7)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주8)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정부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42.2%(16조 6,623억 1,2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5.3%(9조 9,965억 4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20.9%(8조 2,744억 500만원), **인건비**가 5.9%(2조 3,104억 4,500만원), **기타비용**이 전체의 5.8%(2조 2,723억 8,100만원)으로 확인됨

- 비용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민간 등 이전비용**의 경우,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이전비로 편성(5조 48억 7,500만원)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지방공공기관 전출금(3,029억 3,800만원)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5조 3,467억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운영비**의 경우, 지방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위탁대행사업비 2,157억 8,100만원 증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유지비 789억 7,000만원 증가), 지방채 등 이자비용(이자비용 123억 5,300만원 증가) 등이 증가하여 3,529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급여인상(509억 5,700만원), 기여금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432억 7,800만원), 공무원 등 퇴직급여 지급액(89억 1,300만원) 등의 증가로 1,054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나,
- **정부간이전비용**의 경우,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이전비로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3조 6,040억 1,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8A〉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액
비용총계	39,516,049	37,231,834	2,284,215
인건비	2,310,445	2,204,969	105,476
1. 급여	1,535,280	1,484,322	50,958
2. 복리후생비	493,725	450,447	43,278
3. 기타인건비	253,974	251,648	2,326
4. 퇴직급여	27,464	18,550	8,914
운영비	8,274,405	7,921,455	352,950
1. 도서구입 및 인쇄비	14,031	14,456	△425
2. 소모품비	113,164	122,076	△8,912
3. 홍보 및 광고비	22,486	45,549	△23,063
4. 지급수수료	419,360	383,896	35,464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4,133	53,827	306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59,357	365,652	△6,295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561,319	1,482,348	78,971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101,113	93,750	7,363
9. 교육훈련비	31,016	28,115	2,901
10. 제세공과금	77,810	76,804	1,006
11. 보험료및공제료	18,390	17,591	798
12. 임차료	74,819	74,693	126
13. 출장비	13,098	12,245	853
14. 연구개발비	24,714	23,276	1,437
15. 이자비용	198,447	186,094	12,353
16. 업무추진비	11,512	11,368	144
17. 행사비	95,417	85,122	10,295
18. 의회비	11,342	10,564	777
19. 위탁대행사업비	4,121,881	3,906,100	215,781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3,144	2,882	261
21. 징수교부금	620,670	594,922	25,748
22. 연료비	143,004	139,471	3,532
23. 원·정수구입비	53,082	54,146	△1,064
24. 공립대학운영비	62,280	63,782	△1,502
25. 기타운영비	68,804	72,713	△3,908

〈표 5-18B〉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액
정부간이전비용	16,662,312	20,266,324	△3,604,011
1. 시도비보조금	6,328,463	10,350,010	△4,021,546
2. 자치구조정교부금	6,051,211	5,853,842	197,369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40,912	39,282	1,629
4. 국가에대한부담금	267	97	169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963,936	3,756,030	207,906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277,521	267,060	10,461
민간 등 이전비용	9,996,504	4,649,803	5,346,701
1. 민간보조금	7,908,950	2,904,074	5,004,875
2. 민간장학금	219	235	△16
3. 이차보전금	166,918	198,402	△31,484
4. 출연금	906,492	878,498	27,993
5. 전출금비용	822,934	519,995	302,938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79,100	28,526	50,573
7 기타이전비용	111,889	120,068	△8,179
기타비용	2,272,381	2,189,281	83,099
1. 자산처분손실	3,104	3,416	△311
2. 자산손상차손	794,314	704,023	90,290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94,339	196,366	△2,026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429,561	319,199	110,362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49,230	639,854	9,376
6. 무형자산상각비	32,390	24,266	8,124
7. 대손상각비	163,952	292,749	△128,797
8. 기타비용	5,487	9,405	△3,918

○ **수익**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 지방세, 경상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수익총계의 75.1%, 29조 293억 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23.7%, 9조 1,680억 6,000만원, 교육청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이 1.2%, 4,953억 6,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수익의 주요 증감사유는 취득세(1조 1,340억원), 지방교육세(1,559억원), 재산세(987억원) 증가 등으로 **자체조달수익**이 1조 46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고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4,244억원) 증가 등의 사유로 **정부간이전수익**도 4,220억 3,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9〉 재정운영표(성질별) 수익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액
수익총계	38,692,753	37,330,106	1,336,646
자체조달수익	29,029,301	28,024,666	1,004,635
1. 지방세수익	25,048,280	24,186,209	862,071
2. 경상세외수익	2,795,019	2,740,294	54,725
3. 임시세외수익	1,186,001	1,098,163	87,838
정부간이전수익	9,168,060	8,746,024	422,036
1. 지방교부세수익	152,072	202,010	△49,938
2. 국고보조금수익	8,672,573	8,248,149	424,424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301,011	227,859	73,152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42,402	68,004	△25,602
기타수익	495,391	559,415	△64,024
1. 전입금수익	446,677	462,502	△15,825
2. 기부금수익	5,587	5,746	△159
3. 대손충당금환입	9,819	3,131	6,688
4. 자산손상차손환입	26,222	-	26,222
5. 기타수익	7,083	88,035	△80,95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2) 기능별 재정운영표

- 원가개념이 반영된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관련 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바,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에는 982억 7,200만원 흑자였으나, 20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8,232억 9,700만원 적자로 제출됨

〈표 5-20〉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 감 액
재 정 운 영 결 과 (A-B)		△823,297	△98,272	△921,569
재 정 운 영 순 원 가 (① + ② + ③ - ④) (A)		27,165,673	25,105,156	2,060,517
	사 업 순 원 가 ①	24,279,009	22,635,776	1,643,233
	관 리 운 영 비 ②	2,467,406	2,202,987	264,419
	비 배 분 비 용 ③	1,593,047	1,521,926	71,121
	비 배 분 수 익 ④	1,173,788	1,255,533	△81,745
일 반 수 익 (B)		26,342,376	25,203,428	1,138,948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 **재정운영순원가**는 직전회계연도(25조 1,051억 5,600만원)보다 2조 605억 1,700만원 증가한 27조 1,656억 7,300만원으로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2조 6,357억 7,600만원)보다 1조 6,432억 3,300만원 증가한 24조 2,790억원 900만원이며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2,029억 8,700만원)보다 2,644억 1,900만원 증가한 2조 4,674억 600만원이고,
 - **비배분비용**은 직전회계연도(1조 5,219억 2,600만원)보다 711억 2,100만원 증가한 1조 5,930억 4,600만원이고
 - **비배분수익**은 1조 1,737억 8,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2,555억 3,300만원)보다 △817억 4,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수익**은 직전회계연도(25조 2,034억 2,800만원)보다 1조 1,389억 4,800만원 증가한 26조 3,423억 7,600만원으로 제출됨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2024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는 3조 4,453억 2,800만원이고, 순자산의 감소는 △4,649억 1,100만원으로 순증액은 2조 9,804억 1,700만원으로 검토됨
 -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 재산이관에 따른 증가액 2,246억 9,500만원, ②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증가액 등 9,184억 1,500만원, ③기타 순자산의 증가액 2조 3,022억 1,700만원임
 -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④재산이관·관리전환에 따른 자산 감소액 △2,246억 9,500만원, ⑤주택재개발 등의 시유재산 무산양여 감소로 인한 자산 감소액 △215억 1,600만원, ⑥토지분할 감소 및 합병말소 등의 기타 순자산의 감소액 △2,186억 9,9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2024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34조 4,256억 2,600만원에서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인 8,138억 1,100만원을 차감하고 순자산의 순증액 2조 9,804억 1,700만원을 더한 **136조 5,827억 4,600만원**으로 지난 '23회계연도(134조 4,256억 2,600만원)보다 1.6%, 2조 1,571억 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5-21〉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순자산 변동 사유
		금 액	구성비	
기 초 순 자 산 (A)		134,425,626		
재 정 운 영 결 과 (B)		823,296		
순 자 산 의 증 가 (C)		3,445,328	100.0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①	224,695	6.5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 긴 자 산 증 가 ②	918,415	26.7	· 도시개발 관련 및 민간투자시설 귀속분 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 ③	2,302,217	66.8	· 토지 재평가,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증가 등
순 자 산 의 감 소 (D)		△464,911	100.0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④	△224,695	48.3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 긴 자 산 감 소 ⑤	△21,516	4.6	· 주택재개발 사업 등 시유재산 무상양여 감소
	기타 순자산의 감소 ⑥	△218,699	47.0	· 토지 분할감소 및 합병말소 등
기 말 순 자 산 (A + B + C - D)		136,582,746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20303 ('25. 4.21)

4. 재무제표 관련 기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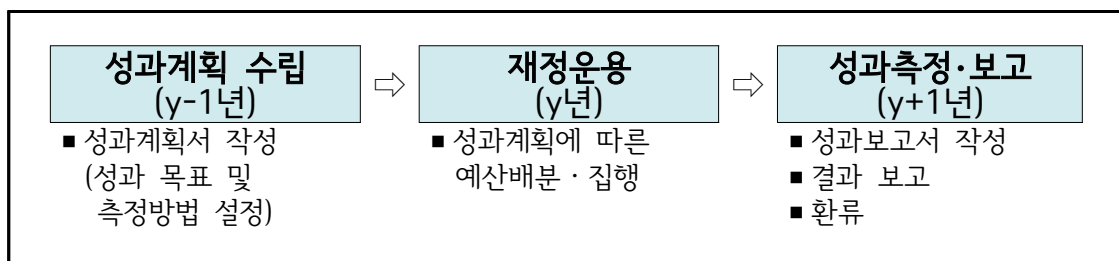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얻고, 지난 5월30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된 결산검사의 견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한 바,
- 결산검사중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지적 및 자체수정 등의 사유로 당초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한 재무제표중 ①자산, ②부채, ③수익 및 자산, ④비용, ⑤재정운영표(기능별)에 대해 적게는 △16억원 감소, 많게는 3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공인회계사의 당초 검토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견으로 사료되지 않음
- 따라서 결산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결산검사나 자체 발견에 따른 재무제표의 오류수정이 있었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신뢰되도록 수정된 내역이 포함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VI.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보고서 검토

-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6-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4.12), p.76

- 서울시는 '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수, 228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3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 '24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39개 실·본부·국에 대한 39개 전략목표수와 241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5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함

〈표 6-2〉 회계연도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 개)

회계연도	성 과 계 획 서			성 과 보 고 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2024	39	228	436	39	241	455
2023	39	225	430	39	227	433
2022	41	222	420	38	248	439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별 결산서

○ 서울시는 '24년도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체계가 대규모 개편되어 법령에 의한 예산의 이체가 총 749건, 2조 4,919억 9,300만원 발생한 바,

- '25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변경된 조직 및 '24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초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과 일치시키도록 개선 요구한 사례가 있음
- '24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5조 7,405억 1,700만원)과 최종예산(47조 4,143억 9,300만원)이 3.7%, 1조 6,738억 7,600만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개편도 있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성과계획서 변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 서울시는 각 실·국에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 각 부서에 서는 통일된 지침없이 '24회계연도가 종료된 '25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이 되어서야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부서의 판단하에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타 관련 법령에도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 동일하게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사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성과계획서의 수정시기·방법 및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의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재차 개선요청함으로써

- 당초 예산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성과계획서가 결산에 임박하여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사후적으로 임의 수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55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중 ①75개 지표(16.5%)는 **초과달성**, ②297개 지표(65.3%)는 **달성**, ③83개 지표(18.2%)는 **미달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6-3〉 '24회계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

실·본부·국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9	241	455 (100.0)	75 (16.5)	297 (65.3)	83 (18.2)
대 변 인	1	1	2	0	2	0
홍 보 기 획 관	1	5	10	3	5	2
여 성 가 족 실	1	8	14	3	10	1
글로벌도시정책관	1	4	7	0	7	0
비 상 기 획 관	1	1	2	0	2	0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	3	3	0	2	1
기 획 조 정 실	1	10	19	3	15	1
소 방 재 난 본 부	1	10	24	6	9	9
경 제 실	1	10	20	2	18	0
복 지 실	1	10	16	2	10	4
교 통 실	1	10	18	1	10	7
기 후 환 경 본 부	1	9	14	3	8	3
문 화 본 부	1	10	13	1	9	3
관 광 체 육 국	1	5	9	2	5	2
평 생 교 육 국	1	6	10	2	7	1
시 민 건 강 국	1	14	31	6	18	7
민 생 노 동 국	1	8	13	1	10	2
디 지 털 도 시 국	1	8	17	3	14	0
행 정 국	1	8	12	2	7	3
재 무 국	1	6	12	5	5	2
민 생 사 법 경 찰 국	1	1	3	0	3	0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	4	11	1	4	6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2	3	0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4	7	2	5	0
재 난 안 전 실	1	11	17	2	14	1
주 택 실	1	12	22	4	12	6
도 시 공 간 본 부	1	8	9	1	8	0
균 형 발 전 본 부	1	10	15	1	14	0
정 원 도 시 국	1	13	18	5	11	2
물 순 환 안 전 국	1	3	4	1	0	3
인 재 개 발 원	1	1	3	0	3	0
도 시기반시설본부	1	5	11	0	3	8
미 래 한 강 본 부	1	3	7	1	5	1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	2	4	1	3	0
시 립 미 술 관	1	1	6	2	4	0
의 회 사 무 처	1	3	27	3	18	6
감 사 위 원 회	1	6	10	2	8	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	4	1	3	0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1	3	2

- 성과지표별로 검토하면, 여성가족실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원**은 교통비 바우처 신청후 카드사 포인트를 지급받은 임산부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24 회계연도에 37,670건을 목표로 하여 124.3%, 46,820건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6-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원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원(명)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원 산정	목표	37,670	37,730
		실적	46,820	40,167
		달성률	124.3	106.4

- 그러나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목표(37,730명)대비 실적(40,167)을 달성(106.4%)하였음에도 '24회계연도 목표를 전년도 목표수준 및 기 달성한 실적치보다 △60명 감축하여 설정(37,670명)한 바, '24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124.3%, 46,820명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함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 동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치보다 목표치를 낮춘 것은 물론 전년도 목표치보다도 성과지표 수준을 낮춰 자연발생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지표를 설정한 것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료되지 않아 향후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책사업 목표인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측정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로 하여 '24회계연도 목표 지원

건수(14,000건) 대비 216.5%, 30,316건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6-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 성과지표 관련

(단위 : 건,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수(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 수	목표	14,000	7,000
		실적	30,316	18,946
		달성률	216.5	270.6

- 동 성과지표는 직전 회계연도에 성과목표 7,000건 대비 270.6%, 18,946건을 달성하였으나, '24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한 실적치가 있음에도 목표치를 하회하여 설정한 사례로 사료되어 향후 적정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지표의 경우,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로 사료되어 동 지표만으로는 정책사업 목표인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단순 산출지표는 측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기준에는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되, 산출지표로 설정하더라도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자 지원 건수 이외에 지표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여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방재난본부의 **공직기강 확립 사전예방 점검건수**는 '24회계연도에 청렴한 공직문화 및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1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

은 목표 대비 15.4%, 234건으로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6-6〉 공직기강 확립 사전예방 점검건수 성과지표 관련

(단위 : (건),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공직기강 확립 사전예방 점검 건수(건)	목표건수 대비 점검 및 기강감찰 점검 건수	목표	1,510	1,480
		실적	234	1,530
		달성률	15.4	103.3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성과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하도록 한 바,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 조직 인원 개편에 따라 조사팀 기강 감찰 인원이 감축되고, 적발 위주 활동보다 제도 위주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목표량 대비 실적치가 저조하여 성과 미달성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소방재난본부의 동 지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조직 인원 등이 개편되었음에도 적정한 성과 목표치로 수정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어 추가경정예산 및 조직 개편 등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액이 변동되는 경우, 성과계획서의 수정시기·방법 및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의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실제 예산이나 조직 변경 등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수정함으로써 성과보고서의 결과값이 왜곡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성과지표(24개)중 9개(37.5%)의 성과지표가 미달성되어 전체 실·국중 미달성 지표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성과지표 목표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점검하고,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제실의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수**는 과학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목

표로 오프라인 매표 관람객수를 측정한 지표로써 '24회계연도에 68,202명을 목표로 하여 248.7%, 169,619명을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6-7〉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수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수 (오프라인 매표 관람객수, 온라인 제외)(명)	오프라인 매표 관람객수 (온라인 제외)	목표	68,202	53,293
		실적	169,619	99,871
		달성률	248.7	187.3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경우와 130% 초과 달성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성과 초과달성의 원인으로 '24년 8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른 관람 인원 증가로 목표치 대비 실적을 초과(248.7%)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성과목표치는 '23회계연도에 이미 달성한 성과실적치 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46.3%, △69,748명)한 것으로 관련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로 사료됨
- 특히, '24년 8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개관함에 따라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 수 증가가 예측됨에도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바, 성과 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목표치 설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례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

을 측정할 수 있게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과학관 방문객 및 이용자수’는 산출의 질이 아닌 산출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관 운영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수**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하려는 지표로, ’24년도에는 8,8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74.9%, 6,595명을 지원한 것으로 제출됨

〈표 6-8〉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수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수(명)	자치구 결산 시 연간 누계 활용	목표	8,800	8,300
		실적	6,595	7,516
		달성률	74.9	90.5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는 성과미달성 원인을 기재하고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사항도 일체 작성하지 않은 바,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서부선 건설(민자)**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교통취약 지역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서부선 민간투자 건설의 공정률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4회계연도의 경우, 공정률 15.0%를 목표로 하여 실제 4.3% 진행함에 따라 달성률은 28.8%로 제출한 것임

〈표 6-9〉 서부선 건설(민자) 성과지표 관련

(단위 :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서부선 건설(민자)	공정률	목표	15.0	4.8
		실적	4.3	4.3
		달성률	28.8	90.0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성과미달성 원인으로 건설출자자 일부가 컨소시엄을 탈퇴하였고, 재모집 되지 않아 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후속 절차인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사항에는 '2025년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이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성인지결산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다른 법령은 성인지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제출한 '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개수는 270개로, 예산안 제출 시(271개) 보다 △1개 감소하였고, 성인지 대상 사업은 예산현액(4조 1,676억 9,800만 원)의 97.4%, 4조 582억 4,6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6-10〉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0	4,167,698	4,058,246	97.4
기	일 반 회 계	246	3,884,775	3,780,585	97.3
	기타특별회계	21	282,209	276,959	98.1
	기 금	3	713	701	98.3

- 성인지성과목표의 경우 총 380개 성인지 성과목표 중 246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64.7%를 달성한 것으로 지난 '23회계연도(61.9%)와 '22회계연도(62.4%)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표 6-11〉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22~'24)

(단위 : 개, %)

구분	2024	2023	2022
성과목표수	380	388	431
달성 수	246	240	269
달성률	64.7	61.9	62.4

- 다만, '24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5조 7,405억 1,700만원) 대비 최종예산(47조 4,143억 9,300만원)은 3.7%, 1조 6,738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24년 7월, 대규모 조직개편이 시행되어 성인지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 현행 법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4년 6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조직 신설 등 조직 개편으로 인한 성인지 사업 변동 및 추가경정예산 증감 조정으로 성인지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액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성인지예산서 수정방법, 수정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을 건의하거나 조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정합성을 높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기후결산 관련 검토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예산안)**의 경우, 관련 법령에는 산안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도 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는 기후예산제에 대한 시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예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조례를 시행하며 매 사업연도의 기후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24년 12월에는 관련 조례중 기후결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한 바 있고, 지난 5월 30일, '24회계연도 기후결산서를 제출하였음
 - 다만,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기후결산서에 대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부칙을 통해 “기후예산서·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바, 현재 제출된 기후결산서로는 관련 세부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환류시키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4년도의 경우, 256개 사업을 기후예산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 예산현액(4조 180억 4,700만원)중 84.0%, 3조 3,739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당초 36만 9,000tCO₂대비 73.6%, 27만 2,000tCO₂를 감축한 것으로 제출됨

〈표 6-12〉 기후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 tCO₂)

구분	사업수	집행액				성과목표				온실가스감축효과	
		당초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달성 (A)	미달성 (B)	비대상	달성률 (A/A+B)	감축목표	감축량
총계	256	32,836	40,180	33,739	84.0	143	53	60	73.0	369,428.0	271,818.8
감축	99	17,587	21,471	18,500	86.2	65	25	9	72.2	324,101.5	255,674.1
배출	113	10,358	13,318	10,670	80.1	60	17	36	77.9	30,824.3	10,40.4
혼합	44	4,890	5,390	4,568	84.7	18	11	15	62.1	14,502.2	15,104.3

4.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9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24년도의 경우, 본예산(45조 7,405억 1,700만원)을 확정된 이후 최종예산(47조 4,143억 9,300만원)까지 3.7%, 1조 6,738억 7,600만원 차이가 있고, '24년도 본예산 및 '24년 6월,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모두 수정의결된 바 있어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예산의 수정내역과 연동하여 수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표 6-13〉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4년도 예산안) (A)	' 2 4 년 도 본 예 산 (의 회 의 결)	' 2 4 년 도 제 1 회 추 경 (의 회 의 결)	' 2 4 년 도 최 종 예 산 (간 주 처 리 포 함) (B)	증 감 (B - A)
총 계		45,723,035	45,740,517	47,303,251	47,414,393	1,691,358
	일 반 회 계	33,055,427	33,049,200	34,193,239	34,246,379	1,190,952
	특 별 회 계	12,667,607	12,691,316	13,110,011	13,168,013	500,406

※ 자료근거 : 「2024~2028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3.11, p.16

- 특히, '24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향후 5년간 재정전망중 2024년도에 목표한 재정규모 (45조 7,230억원)를 초과한 금액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표 6-14〉 '24~28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3 (최종)	계획기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계	503,272	457,230	470,349	482,868	496,687	512,350
일 반 회 계	361,880	330,554	339,098	351,213	364,339	379,966
특 별 회 계	141,391	126,676	131,251	131,656	132,349	132,384

- 다만, 현행 법령 등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

되어 서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가 되고, 법령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변동이 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재차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5. 결산서 첨부서류 추가 포함 건의 필요

- ①**성과계획서**, ②**중기지방재정계획**, ③**성인지 예산서**는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④**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⑤**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기후예산안)**는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별책으로 제출하고 있음
- 결산의 경우에도 ①**성과보고서**는 법령에 따라 제출하고, ③**성인지결산서**도 법령에 따른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⑤**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30일 '24회계연도 기후결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②**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과 ④**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예산안의 첨부서류 등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결산의 경우에는 법령 등에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없어 당초 계획대비 추진결과를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결산이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동안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였는지 계수로 표시된 재정운영성과를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법정절차로서 제도적 완결성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②**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에 대한 결산 보고**, ④**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